
회의자료

11기 2년 정기대의원대회

일시 : 2021. 03. 08(월)

장소 : 각 지정 장소



전국금속노동조합 울산지부

회의자료 순서

대의원대회 진행순서	3
대회사	4
격려사	6
상징마크	8
선 언	9
강 령	10
금속노조가	11
금속노조 울산지부 대의원 명단	12

안건자료

안건1호. 11기 1년차 사업평가 및 결산보고 승인 건	27
안건2호. 11기 2년차 사업계획 및 2021년 투쟁방침(안) 승인 건	81
안건3호. 11기 2년차 사업예산(안) 승인 건	129
안건4호. 투쟁기금 사용 승인의 건	139
안건5호. 11기 2년차 중앙위원 선출 승인 건	143
안건6호. 민주노총 파견 중앙위원 및 대의원 선출 승인 건	147
안건7호. 결의문 채택 건	155
안건8호. 기타안건	157

대의원대회 진행순서

1부 기념식

감사영상	사회자
민중의례	사회자
대회사	지부장
격려사	노조임원
축 사	내외빈
모범조직, 모범조합원 시상	사회자
금속노조가 제창	전체

2부 본회의

영상상영	전체
개회선언 및 성원보고	의장
서기 및 감표위원, 사찰 지명	의장
회순통과	의장
안건토론	의장
결의문 낭독	전체
폐회선언	의장

대 회 사

6천 조합원과 함께 승리하는 역사를 만들어 갑시다.

존경하는 대의원 동지 여러분, 조합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새해가 어제 같은데, 벌써 3월이고 봄소식이 우리의 가슴을 설
레게 합니다. 새봄을 기다리는 설레임으로 2021년 투쟁을 결심
합시다.



대의원 동지 여러분!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세계 민중의 일상을 바꿔놓고 있습니다.

더욱 공고해지는 독점 재벌체제로 원하청 불공정거래, 다단계 하청 구조로 착취는 더욱 거세
지고, 사회 양극화는 극단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기후위기 시기를 빌미로, 정부는 노동은 배제한 채 자동차 산업을 넘어 철
강, 조선, 전기전자 등 전산업에 걸친 재편을 하면서 재벌과 위험천만 질주를 벌이고 있습니
다. 작년부터 시작된, 대우버스, 한국계이츠, 한국산연의 구조조정 사태는 정부-자본의 주도
하에 이루어지는 산업재편은 구조조정 확산으로 이어지고 있음을 명확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한 세계정세에도 급격한 변화가 오고 있습니다.

미제국주의의 쇠락과 동시에 중국의 부상은 미·중 경제 및 군사적 긴장을 높이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문재인정부는 국민들의 반대에도 사드 배치를 강행하며 한반도를 경제위기 전
쟁위기 국면으로 몰아넣고, 한미동맹이란 이름으로 전쟁연습, 한미군사훈련을 강행해 남북관
계를 파탄내고 군사적 긴장을 고조 시키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대미 굴종 외교로 한반
도의 평화는 더욱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180석의 국회 권력을 쥐고도 적폐를 청산하고 사회 대개혁의 길로 나아가라는 촛불 민중의
열망을 철저히 짓밟고, 비정규직 정규직화 약속 파기, 최저임금 개악 등 노동 파괴 정책
을 밀어붙이고 세월호 진상규명에 눈감고 역주행까지 감행하는 이 정권에 희망이란 단어를
기대할 수 없음을 확인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내년 대통령 선거를 앞둔 권력 재편기가 우리 앞에 성큼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 같이 우리에게서 객관 정세 전망이 어렵고, 난관으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객관 정세가 우리의 운명을 결정하지 않습니다.
결국 우리의 운명을 결정하는 것은 우리의 결심과 의지 그리고 단결투쟁에 달려있습니다.

대의원 동지 여러분

작년, 2020년은 정말 치열하게 잘 싸웠다고 자부할 수 있습니다.
기세 있게 구조조정을 막아내고 재벌이 그어놓은 선을 넘기 위해 치열하게 싸웠고
5천의 벽을 허물고 1만 조합원 시대로 전진하는 토대와 전망을 열었습니다.
정말 이 자리를 빌려 조합원 동지들과 대의원 동지들께 고맙다는 마음을 전합니다.
“진심으로 고맙습니다.”

존경하는 대의원 동지 여러분!

수많은 난관을 뚫고, 역경을 순경으로, 화를 복으로 만들며 전진하는 민주노조 운동의 역사
와 위대한 노동자의 자주성과 창조적인 힘을 믿읍시다.

우리 금속노조 울산지부는 무적불패의 전통이 있습니다.
무엇보다 든든한 6,000의 강철의 대오가 있습니다.
무엇이 두렵겠습니까? 어떤 난관도 우리의 앞길을 막을 수는 없을 것입니다.

모든 것은 변화발전 한다는 진리를 믿고 거침없이 노동자의 투혼으로 2021년을 정면돌파로
전진합시다. 다시 2021년을 준비하며 힘과 지혜를 모아냅시다.

그 맨 앞에 지부장이 서겠습니다.
자신감을 가지고 2021년에도 승리하는 역사를 6,000 조합원과 함께 써나갑시다.

마지막으로
대의원 동지들과 조합원 동지들의 건강과 건승을 기원드립니다.
사랑합니다. 고맙습니다.

2021년 3월 8일
전국금속노동조합 울산지부 지부장 윤장혁

격려사

현장의 파수꾼, 금속노조의 선봉인 대의원 동지 여러분, 겨울에서 봄으로 넘어가는 길목, 정월대보름 둥근 달 만큼 가득 찬 희망을 쟁취하겠다는 의지를 담아 위원장 김호규 투쟁으로 인사드립니다. 투쟁!

금속노조는 3월 2일 전국 15개소를 온라인으로 연결하여 제54차 정기대의원대회를 개최하고 2021년도 금속노조 사업계획, 임단협 방침과 예산안을 확정했습니다. 금속노조는 ▲ 산업전환기 미래발전 계획을 노사가 공동결정하고 노동이 주체로 참여하는 정의로운 산업전환 ▲ 산별노조의 활동을 뒷받침하는 법제도제정 ▲ 해고의 폐해를 막고 취약노동자를 포함하는 모든 노동자가 사회안전망의 혜택을 실질적으로 누리는 사회를 만들기 위한 투쟁을 2021년 핵심투쟁기조로 결정했습니다.

우리는 이제 3개의 고개를 넘어야 합니다. 첫 번째 고개는 언제가 될지 기약은 없으나 분명 종착점이 있을 이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가 남길 상처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는 우리 사회 고용의 구조를 심각하게 파괴하고 자영업자의 생존을 벼랑으로 몰았습니다. 이 과정에서 우리는 한국사회의 고질적인 사회안전망 부족, 취약한 공공의료, 자본편향 정부대책을 절감했습니다. 안 그래도 벌어진 양극화가 더 벌어졌습니다. 그리고 자본은 코로나 이후에도 죽은 바이러스 핑계를 대며 구조조정을 시도할 것입니다. 이 상처를 어떻게 현명하게 넘어설지 산별노조다운 고민이 필요합니다.

두 번째 고개는 지구적인 산업재편입니다. 기술의 발전과 기후위기, 자본주의의 구조 결함으로 인한 장기 저성장이 한꺼번에 몰리면서 세계 시장은 한 치 앞을 예측할 수 없는 변화를 겪고 있습니다. 이 속에서 고용을 지키고 노동의 미래를 지키기 위해서는 우리 스스로의 결단이 필요합니다. 자본가 역시 가보지 않은 길에 대한 두려움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노동조합도 지금과는 다른 투쟁에 발을 내딛는 것을 두려워해서는 안 됩니다.

마지막 고개는 권력 재편입니다. 한국 사회는 여름이 오기 전부터 내년 봄의 대통령 선거를 시작할 것입니다. 이번 대선은 4년 전 시작한 한국 사회 재편의 연장선입니다. 이 과정에서 우리 노동자는 존재감을 드러내고 사회 변화의 의제를 내놓고 또 주도해야 합니다. 노동자는 정치투쟁에 나서야 한다는 백기완 선생님의 가르침을 우리 모두 가슴 깊이 새기고 기억합니다.

넘어야 할 산이 많아 보이지만 돌이켜보면 금속노조의 건설도, 아니 민주노조 운동의 출발도 산봉우리 정도가 아니라 절벽 앞에서 시작한 운동이었습니다. 우리는 그 절벽을 올라 여기까지 왔습니다. 우리에게는 그 정도의 힘이 있습니다. 우리가 연대하고 단결한다면 노동조합이 넘지 못할 선은 없습니다. 그래서 노동조합의 대의원대회는 투쟁을 만드는 마당이자 그 자체가 민주주의를 강화하는 투쟁입니다. 오늘 지부정기대의원대회를 힘차게 사수하고 우리 앞에 놓인 고개를 손 맞잡고 함께 뛰어넘읍시다. 세상을 바꾸는 노동운동, 모든 노동자가 하나 되는 노동조합을 향해 다시 전진합시다. 마지막으로 조합원 여러분과 가족 모두의 건강을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투쟁!

2021년 3월 8일

전국금속노동조합 위원장 김호규

상징마크



깃발을 움켜쥔 주먹을 기어로 받치고 있는 모습은 금속노동자의 노동과 삶에 뿌리 박고 선 산별노조를 만들고 노동자가 사람답게 사는 세상을 이루기 위해 힘차게 달려 나가는 기백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흰색은 민주노조운동이 담고 있는 순수한 뜻과 열정을 뜻하며, 청색은 질푸른 우리나라 하늘과 동해바다와 같이 넓고 깊은 사랑으로 동지들을 끌어안는 통 큰 단결정신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선 언

노동자는 역사의 주인이자 역사발전의 원동력이다.

우리 금속노동자는 생산의 주역으로서 금속산업 발전과 사회발전에 이바지해 왔으며, 또한 자본주의 착취와 억압 구조, 외세에 맞서 한국 노동운동의 선봉에 서서 투쟁해왔다.

우리는 선배 노동자들의 단결의 정신과 불굴의 투쟁의지를 이어 받아 민주노조운동의 새로운 도약을 위해 금속노조를 힘차게 세운다.

우리 금속노동자는 인간의 존엄성과 평등한 삶을 지키기 위해 예속과 차별, 빈곤의 확산을 가져오는 신자유주의 자본의 세계화에 맞서 전 세계 노동자와 연대해 투쟁할 것이며, 이 땅의 민중, 진보세력과 굳건히 연대하여 노동자민중이 주인 되는 사회, 억압과 차별이 철폐된 평등사회, 남북이 하나 된 통일조국 건설에 앞장설 것이다.

강 령

【조직】 우리는 임시비정규여성이주노동자 등 미조직 노동자의 조직화를 위해 노력하며 차별철폐 투쟁을 통해 금속노조의 강화확대를 위해 투쟁한다.

【노동조건】 우리는 노동시간 단축과 생활임금확보, 고용안정, 다치지 않고 일할 권리 확보 등 노동조건을 개선하기 위해 투쟁한다.

【협약】 우리는 동일노동동일임금의 원칙을 바탕으로 금속노동자의 권리보호와 권익향상을 위한 산별협약을 쟁취하고 노동의 소유통제권을 확보하기 위해 투쟁한다.

【평등사회】 우리는 초국적 자본과 독점자본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고, 다수의 빈곤을 기반으로 소수의 부를 보장하는 정치, 경제, 사회구조를 개혁하고 평등사회건설을 위해 투쟁한다.

【여성】 우리는 운동과 사회 전반에 퍼져있는 각종 성차별제도의 철폐와 모성보호, 여성노동자의 조직화와 양성평등의 실현을 위해 투쟁한다.

【문화】 우리는 노동과정에서 발전해온 문화전통을 이어받아 민중적이고 민족적인 문화의 확산과 이를 통한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투쟁한다.

【환경】 우리는 환경이 소수의 전유물이 아닌 전 계급 계층이 향유하고 보호해야 할 가치를 지닌 것으로 인정하며, 자본에 의한 환경파괴를 방지하고 더 나아가 환경친화적 사회발전을 위해 투쟁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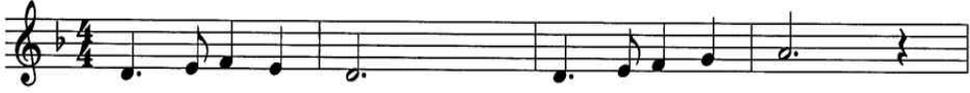
【국제연대】 우리는 전세계 노동자와 연대하여 국가간 예속과 불평등, 그 어떤 명분의 전쟁에도 반대하며, 신자유주의 타파를 위해 투쟁한다.

【정치세력화】 우리는 노동자 중심의 정치세력화가 중요함을 인식하고, 노동자민중의 정당 강화를 통해 노동자민중 정권 창출을 위해 투쟁한다.

【통일】 우리는 우리의 국토를 강점한 미군을 조속히 철수시키며, 자주평화민족대단결의 원칙에 기초해 통일조국을 건설하기 위해 투쟁한다.

금속노조가

김호철 글,곡



노 동 자 의 길 해 방 의 길 에
깃 누 를 수 복 더 욱 강 하 게



당 당한 역사의 합성이 되어 우 리 는 간 다



피로써 뭉쳐진 강철의 대오 아 금속노조여



나 가 자 성 벽을 깨고 죽 음의 사 선을 넘 어
말 하 라 의 처를 러라 민 중의 선 봉에 서



노 동 자 - 해 방의 나라 기 필 요 쟁 취하 리 라
너 나 없 이 평 등한 나라 기 필 요 쟁 취하 리 라

울산지부 대의원 명단

순번	소속	이름
1	지부장	윤장혁
2	고강알루미늄지회	서병준
3	고강알루미늄지회	김용득
4	고강알루미늄지회	이상원
5	고강알루미늄지회	정근식
6	덕양산업지회	김병훈
7	덕양산업지회	최용석
8	덕양산업지회	김정수
9	덕양산업지회	권혁준
10	덕양산업지회	엄재학
11	덕양산업지회	황상진
12	덕양산업지회	이봉인
13	덕양산업지회	남경우
14	덕양산업지회	양창석
15	덕양산업지회	정우철
16	덕양산업지회	장태철
17	덕양산업지회	김회근
18	덕양산업지회	박영걸
19	덕양산업지회	이장학
20	덕양산업지회	권영환
21	덕양산업지회	류양인
22	덕양산업지회	박현찬
23	덕양산업지회	강우중
24	덕양산업지회	김대열
25	덕양산업지회	박천원

순번	소속	이름
26	덕양산업지회	이홍우
27	덕양산업지회	
28	덕양산업지회	
29	덕양산업지회	
30	덕양산업지회	
31	덕양산업지회	
32	대륙금속지회	정진희
33	대륙금속지회	김정구
34	대륙금속지회	이전석
35	대륙금속지회	조영희
36	대륙금속지회	류호걸
37	대흥공업지회	황양규
38	대흥공업지회	허대영
39	대흥공업지회	이동재
40	대흥공업지회	김명수
41	말레동현필터시스템지회	김민기
42	말레동현필터시스템지회	백도연
43	말레동현필터시스템지회	이광태
44	말레동현필터시스템지회	김현국
45	말레동현필터시스템지회	김문수
46	말레동현필터시스템지회	박규태
47	말레동현필터시스템지회	이종하
48	말레동현필터시스템지회	차성민
49	삼성전자서비스울산지회	최명우
50	삼성전자서비스울산지회	임성원

순번	소속	이름
51	삼성전자서비스울산지회	이병훈
52	삼성전자서비스울산지회	송준일
53	삼성전자서비스울산지회	임정원
54	삼성전자서비스울산지회	김광곤
55	삼성전자서비스울산지회	
56	서연이화지회	강수열
57	서연이화지회	홍태엽
58	서연이화지회	박경숙
59	서연이화지회	임미숙
60	서연이화지회	김민욱
61	서연이화지회	박동준
62	서연이화지회	신두준
63	서연이화지회	이재원
64	서연이화지회	정다은
65	서연이화지회	권냉진
66	서연이화지회	김동민
67	서연이화지회	배승옥
68	서연이화지회	노영호
69	서연이화지회	남만희
70	서연이화지회	손광호
71	서연이화지회	강찬엽
72	서연이화지회	김명곤
73	서연이화지회	오영국
74	서연이화지회	강효석
75	서연이화지회	강복식

순번	소속	이름
76	서연이화지회	김고삼
77	서연이화지회	정다슬
78	서연이화지회	김민국
79	서연이화지회	김효진
80	서연씨엔에프지회	윤성만
81	서연씨엔에프지회	손인상
82	서연씨엔에프지회	김한일
83	서연씨엔에프지회	조성건
84	서연씨엔에프지회	석진호
85	서연씨엔에프지회	복문일
86	서연씨엔에프지회	김동은
87	서연씨엔에프지회	황민호
88	서연씨엔에프지회	
89	서진산업사내하청울산지회	손한락
90	서진산업사내하청울산지회	정선우
91	서진산업사내하청울산지회	윤진철
92	서진산업사내하청지회	변성수
93	서진산업사내하청지회	이의종
94	서진산업사내하청지회	김진포
95	서진산업사내하청지회	김진영
96	서진산업사내하청지회	이지혁
97	서진산업사내하청지회	강범수
98	서진산업사내하청지회	편세훈
99	서진산업사내하청지회	정상민
100	서진산업사내하청지회	이종문

순번	소속	이름
101	신한중공업지회	황덕기
102	신한중공업지회	서진보
103	신한중공업지회	김한중
104	신한중공업지회	권정식
105	세종공업지회	박영태
106	세종공업지회	김운동
107	세종공업지회	차귀재
108	세종공업지회	오유훈
109	세종공업지회	박월영
110	세종공업지회	최병필
111	세종공업지회	정용찬
112	세종공업지회	심문보
113	세종공업지회	김영창
114	세종공업지회	강성태
115	세종공업지회	전병헌
116	세종공업지회	박희승
117	세종공업지회	김능원
118	세종공업지회	박인철
119	세종공업지회	박병일
120	세종공업지회	권오혁
121	세종공업지회	임성효
122	세종공업지회	유정훈
123	세종공업지회	차영철
124	세종공업지회	임권식
125	세종공업지회	

순번	소속	이름
126	세종공업지회	
127	세종공업지회	
128	세종공업지회	
129	울산현대모비스지회	박유종
130	울산현대모비스지회	이기준
131	울산현대모비스지회	이재준
132	울산현대모비스지회	이명성
133	울산현대모비스지회	김동연
134	울산현대모비스지회	김세광
135	울산현대모비스지회	백순범
136	울산현대모비스지회	신은호
137	울산현대모비스지회	강동석
138	울산현대모비스지회	천재현
139	울산현대모비스지회	이강령
140	울산현대모비스지회	임균엽
141	울산현대모비스지회	우의정
142	울산현대모비스지회	정귀동
143	울산현대모비스지회	엄준호
144	울산현대모비스지회	최 혁
145	울산현대모비스지회	이승준
146	울산현대모비스지회	정대훈
147	울산현대모비스지회	정동혁
148	울산현대모비스지회	정혜영
149	울산현대모비스지회	유태규
150	울산현대모비스지회	강성현

순번	소속	이름
151	울산현대모비스지회	김주현
152	울산현대모비스지회	지승환
153	울산현대모비스지회	박용원
154	울산현대모비스지회	한준희
155	울산현대모비스지회	손희수
156	울산현대모비스지회	신상옥
157	울산현대모비스지회	
158	SHB사내하청지회	김태훈
159	SHB사내하청지회	윤정길
160	SHB사내하청지회	한동기
161	SHB사내하청지회	신동림
162	SHB사내하청지회	우승협
163	SHB사내하청지회	
164	에스아이씨지회	이상길
165	정명지회	박춘성
166	정명지회	허우진
167	정명지회	최석민
168	한국ITW울산지회	허세현
169	한국ITW울산지회	김원석
170	한국ITW울산지회	진용호
171	한국ITW울산지회	이성환
172	한국ITW울산지회	엄병철
173	한국ITW울산지회	배복한
174	한국ITW울산지회	
175	한국프랜지지회	엄태응

순번	소속	이름
176	한국프랜지지회	최병일
177	한국프랜지지회	최성우
178	한국프랜지지회	김용권
179	한국프랜지지회	김진엽
180	한국프랜지지회	박인규
181	한국프랜지지회	김정종
182	한국프랜지지회	구봉수
183	한국프랜지지회	안지운
184	한국프랜지지회	김국남
185	한국프랜지지회	동방춘
186	한국프랜지지회	박태경
187	한국프랜지지회	이달희
188	한국프랜지지회	송등용
189	한국프랜지지회	홍연호
190	한국프랜지지회	박지훈
191	한온시스템사내하청지회	전승한
192	한온시스템사내하청지회	이창용
193	한온시스템사내하청지회	김태준
194	한온시스템사내하청지회	김정원
195	한온시스템사내하청지회	김원석
196	한온시스템사내하청지회	김성택
197	한온시스템사내하청지회	정명식
198	한온시스템사내하청지회	정영훈
199	한온시스템사내하청지회	손성락
200	한온시스템사내하청지회	

순번	소속	이름
201	한주금속지회	임종환
202	한주금속지회	박현열
203	한주금속지회	김재훈
204	한주금속지회	정정훈
205	한주금속지회	현지호
206	한주금속지회	김경식
207	한주금속지회	고을석
208	현대그린푸드울산지회	양승열
209	현대그린푸드울산지회	이성숙
210	현대그린푸드울산지회	남점복
211	현대그린푸드울산지회	김미옥
212	현대그린푸드울산지회	김혜련
213	현대그린푸드울산지회	노정숙
214	현대그린푸드울산지회	
215	현대그린푸드울산지회	
216	현대그린푸드울산지회	
217	현대그린푸드울산지회	
218	현대그린푸드울산지회	
219	현대그린푸드울산지회	
220	현대그린푸드울산지회	
221	현대글로벌스울산지회	임송라
222	현대글로벌스울산지회	이상진
223	현대글로벌스울산지회	태금창
224	현대글로벌스울산지회	김문철
225	현대글로벌스울산지회	최경렬

순번	소속	이름
226	현대글로벌스울산지회	황중현
227	현대글로벌스울산지회	박기근
228	현대글로벌스울산지회	정도영
229	현대글로벌스울산지회	김성수
230	현대글로벌스울산지회	박부건
231	현대글로벌스울산지회	김태균
232	현대글로벌스울산지회	이진욱
233	현대글로벌스울산지회	권영울
234	현대글로벌스울산지회	박소영
235	현대글로벌스울산지회	박건민
236	현대글로벌스울산지회	선원빈
237	현대글로벌스울산지회	박성진
238	현대글로벌스울산지회	정종만
239	현대글로벌스울산지회	김용진
240	현대글로벌스울산지회	박승규
241	현대글로벌스울산지회	이용혁
242	현대글로벌스울산지회	손양익
243	현대글로벌스울산지회	임태환
244	현대글로벌스울산지회	김영훈
245	현대글로벌스울산지회	강홍주
246	현대글로벌스울산지회	김돈현
247	현대모비스물류지회	안상호
248	현대모비스물류지회	최신길
249	현대모비스물류지회	조동민
250	현대모비스물류지회	이강희

순번	소속	이름
251	현대모비스물류지회	강대성
252	현대모비스물류지회	안규홍
253	현대모비스물류지회	김경민
254	현대모비스울산지회	함형길
255	현대모비스울산지회	이정환
256	현대모비스울산지회	임춘원
257	현대모비스울산지회	최규용
258	현대모비스울산지회	하효동
259	현대모비스울산지회	이한우
260	현대모비스울산지회	정주석
261	현대모비스울산지회	한상원
262	현대모비스울산지회	임유신
263	현대모비스울산지회	최승모
264	현대모비스울산지회	최병현
265	현대모비스울산지회	윤종현
266	현대모비스울산지회	김수웅
267	현대모비스울산지회	차상욱
268	현대모비스울산지회	김정민
269	현대모비스울산지회	황인환
270	현대모비스울산지회	
271	현대모비스울산지회	
272	현대모비스울산지회	
273	현대모비스울산지회	
274	현대제철울산지회	김성현
275	현대제철울산지회	고경태

순번	소속	이름
276	현대제철울산지회	김기현
277	현대제철울산지회	김명관
278	현대제철울산지회	김명규
279	현대제철울산지회	김성원
280	현대제철울산지회	김성훈
281	현대제철울산지회	김세윤
282	현대제철울산지회	김재목
283	현대제철울산지회	김재철
284	현대제철울산지회	김정훈
285	현대제철울산지회	김종현
286	현대제철울산지회	김형욱
287	현대제철울산지회	나승현
288	현대제철울산지회	박성진
289	현대제철울산지회	이상훈
290	현대제철울산지회	심지훈
291	현대제철울산지회	안재수
292	현대제철울산지회	이호중
293	현대제철울산지회	조동일

전국금속노동조합 울산지부 11기 2년차 정기대의원대회

상 정 안 건

의결주문

- ① 제출된 '11기 1년차 사업평가(안)'을 심의하여 승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 ② 제출된 '11기1년차 결산감사' 보고를 승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11기 1년차 울산지부 사업 평가(안)

I. 총괄평가

1. 11기 1년차 사업 및 투쟁 계획 수립 개요

- 예상치 못했던 전대미문의 코로나19 대유행으로 노조의 정기대의원대회가 연기되고, 울산지부 역시 당초 일정보다 뒤늦은 4월20일에 11기 1년차 정기대의원대회를 통해 아래와 같이 △2020년 사업방향과 목표, △2020년 임단협 교섭 및 투쟁방침, △부서 및 위원회 사업계획을 최종 확정하였다.

1) 2020년 사업 방향과 목표

1. 5,000 시대를 넘어 1만 시대로 전진
2. 노동적폐 청산, 구조조정 분쇄, 노동법 개정 투쟁
3. 조합원을 주인으로 직접 민주주의 구현
4. 자주통일-정치세력화 강화
5. 교육체계 혁신 및 구축
6. 1만 시대 지도 집행체계 강화
7. 안전하게 일할 권리! 노동법·생명안전법 개정 투쟁

2) 2020년 임단협 교섭 및 투쟁 방침 기초

첫째, 조합의 방침에 복무하고 2020년 투쟁 승리와 금속노조 강화에 적극 나선다.

둘째, 구조조정을 분쇄하고 임금동결 복지축소와 임금체계 개악을 저지하고 생활
임금 쟁취 투쟁으로 울산지부 조직력을 강화한다.

셋째, 중앙교섭 집단교섭 미 참여 사업장에 대한 적극 대응으로 공동투쟁의 토대를
마련한다.

넷째, 지부 전체의 일치성을 강화하기 위해 투쟁 시기를 최대한 맞춘다.

2. 11기 1년차 사업 및 투쟁 총괄평가

1) 총괄평가

- 2019년 약 4천6백 명인 조합원에서 대범하게 5천명 조합원 시대를 넘어 1만 시대
의 전망을 열겠다는 당찬 목표를 세우고 신규 조직 10개 지·분회 건설하며 약 1
천2백여 명 조합원을 확대하며 미조직 조직화 사업에 획기적 진전을 이루었다.
- 자동차 산업 재편기, 코로나19 경제위기에 예상 구조조정 광풍에 맞서 정면으로
돌파하겠다는 결심으로 태세를 구축하고 투쟁을 진행하였다. 결과 고강알루미늄 법
정관리 정리하고 구조조정을 막아내는 성과를 이루어 냈다.
- 현대자동차 재벌의 임금동결 가이드라인, 재벌동맹 문재인 정권의 노동개악 쓰나
미, 고강알루미늄 정리하고 구조조정에 맞서 현대자동차 양재동 본사 앞에서 2020
년 울산지부 투쟁 선포식을 진행하며 현대차 재벌을 대상으로 완강한 투쟁과 문재
인 정권에 맞서 노동개악 저지 투쟁을 힘차게 벌였다.
- 금속노조 1차 총파업에 일부 직서열 사업장을 포함하여 적극적으로 결합하여 전국
적 모범적인 투쟁을 펼쳤다.
- 복수노조로 탄압한 정명과 현대모비스물류, 현대제철, 현대글로벌비스 등 현대차 재
벌의 노조탄압에 맞서 민주노조 사수 투쟁을 힘차게 벌여 내며 민주노조를 지켜냈
다.

- 노동개약 저지 투쟁에 울산지역에서 모범적으로 투쟁하였으며, 전태일 3법 입법 청원 투쟁에서 서명 3,000명 목표를 달성하는 등 헌신적으로 노동개약 저지 투쟁에 나섰다.
- 지부는 코로나19 국면에도 불구하고 정면 돌파의 기세로 수차례에 걸친 울산지부 결의대회를 개최하며 공세적인 투쟁을 진행하였다. 또한 전태일 열사 정신계승 전국노동자 대회가 개최된 1988년 이래, 처음 겪는 코로나 상황으로 지역별 전국노동자대회를 진행하는 상황 속에서도 1,300여명 조합원을 참가 조직하며 공세적으로 투쟁을 전개하였다.
- 민주노총과 함께 더 거세지는 코로나 국면을 뚫고 ‘한미워킹그룹 해체’, ‘방위비 인상 반대’, ‘대북전단 살포금지’ 등을 온·오프라인을 통한 반미 반전 평화 투쟁을 전개하였고, 이 결과 ‘대북전단지 금지법’이 국회에 통과되는데 기여할 수 있었다. 1박2일 지역통일선봉대 활동에 주도적으로 참여하며, 반전평화 반제국주의 평화통일 투쟁을 완강하게 전개하였다.
-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위험의 외주화 투쟁을 적극적으로 펼쳤으며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입법 청원운동에 3000여명을 조직해냈다. 이런 노력으로 전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해 낼 수 있었다. 비록 누더기로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 통과되었지만 전 사회적 쟁점화를 통해 법 제정에 이르는 성과를 이루었다.

2) 과제

- 2020년 총선 투쟁에서 적폐정당 자유한국당의 숨통을 끊어내고 더불어민주당을 심판, 진보정당의 승리를 목표로 하였다. 객관적인 한계 속에서도, 전략 지역인 울산 동구에 울산지부 조합원인 김종훈 후보의 당선을 위해 노력했다. 그러나 아쉽게 패배하며 국회 진출이 좌절되었고 울산지역에서 적폐정당의 부활을 막지 못했다. 이후 조합원들의 정치세력화에 대한 관심과 참여, 정치의식을 높여야 하는 과제로 남았다.
- 미조직 조직화 사업에서 비약적인 조직 확대의 성과를 이루어냈다. 다만, 애초의

계획대로 지부 간부를 넘어 지부-지회 조직화 사업체계의 구축, 전조직적인 조직화 투쟁으로 이어지지 못했고 신규조직 건설 투쟁에 급급했고, 신규 지회의 간부 및 조합원 교육을 강화하며 조직의 안정화를 이루지 못했다. 이는 미래 세대인 청년 조직 사업을 전개하지 못한 한계와 과제로 남았다.

- 20년 지부집단교섭 참가 사업장 확대를 통한 지부 중심의 공동투쟁을 강화하는 전망을 열지 못한 한계와 과제를 남겼다.
- 조합원들의 참여를 보장하고 직접 민주주의를 구현하여 조합원을 주인으로 세우는 체질을 개선하는 정책 제안운동, 소통체계 구축 등의 사업을 계획하였으나 당면한 미조직 사업과 투쟁 현안에 밀려 추진하지 못한 한계와 과제를 남겼다.
- 교육체계 혁신 및 구축으로 조합원들의 정치의식을 높이고 현장 조직력을 강화하려 했다. 코로나 등의 객관적인 어려움이 있었다 하더라도 주요 사업이었던 교육사업이 신규지회 간부교육과 정세·투쟁방침 교육 정도에 그쳐 교육사업 전면화에 대한 과제를 남겼다.
- 각 부서 위원회 사업은 전체 담당자를 선임하지 못하며 적극적 사업이행에 한계가 있었다. 이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을 수립해야 하는 과제를 남겼다.

II. 2020년 임단협 교섭 및 투쟁 방침 평가

- 조합의 방침에 복무하기 위해 노력하였다. 금속노조 1차 총파업에 적극 복무하였고, 통일요구(노조파괴 대응 노동3권 보장, 감염병으로부터의 보호)를 성과적으로 쟁취하는 성과를 이루었다.
- 2020년 사업장별 임단협에서 대부분 지회가 현대자동차 협력사 내지는 유관한 사업장에 대한 현대자동차재벌의 기본금 동결, 임금가이드라인으로 어려움을 겪었다. 이로 인한 한계도 있었다. 그러나 현대차재벌을 대표하는 속칭 양재동 가이드라인을 넘기 위해 울산지부 투쟁선포식을 양재동에서 진행하며 ‘선을 넘어 정면돌파’ 구호를 들고 현대자동차 재벌을 맞선 완강한 집중투쟁을 전개하였다. 이를 통해 일정하게 쟁점화를 시켜낸 지점이 있다. 그러나 여전히 부품사 지회들의 단결과 공동투쟁을 강화해야 극복해야 할 과제로 남아있다.
- 시기집중 공동투쟁이 코로나 국면 등으로 진행하지 못한 면이 있으나, 현대자동차 앞 집중투쟁 및 단협을 성과 있게 쟁취하기 위한 투쟁을 전개하였다.
- 중앙교섭 및 집단교섭 미 참여 사업장에 대한 참가 확대를 공동투쟁의 토대를 마련하려고 했다. 구체적인 투쟁방침이 부재, 집중 노력이 부족했던 것이 과제로 남아있다.

Ⅲ. 주요사업 평가

1. 5,000시대를 넘어 1만 시대로 전진

- ‘미조직 노동자 조직화 사업을 전면화, 공단 조직화 사업을 강화 1만시대로 전진’을 계획하였다. 이에 따라 2020년 2월 정명지회, 삼정지회, 영실지회 창립, 4월 현대제철울산지회 창립, 7월 신한중공업지회 창립, 8월 서연씨엔에프지회 사내하청분회 창립, 10월 한주금속지회 창립하였다. 이어 11월 동진·삼정·영실지회가 현대글로벌비스사내하청지회로 통합하고 바로 이어 진우분회, 진우JIS지회, 베스틱분회를 창립하여 서열업체 조직화에 나섰다.
- 지부-지회 조직화 사업체계 구축과 지부 간부를 넘어서는 전조직적인 미조직 조직화 사업에는 일정한 한계가 있었으나, 지부 간부들의 헌신적인 조직화 사업 그리고 서열업체 조직화 사업의 노력으로 서열 업체에 5개의 신규조직을 건설하는 성과를 만들고 이후 지속적인 조직 확장의 토대를 마련하였다. 이에 2020년 1월 4,600여명이던 조합원 수가 12월 기준 5,800여명을 넘어서며 5000시대를 넘어 1만시대를 열어가겠다는 사업목표를 달성하였다.
- ‘신규노조 간부 및 조합원 교육 강화’, ‘청년노동자 조직사업 전개’를 목표하였다. 기존 확대간부 교육에 한정된 구조를 바꾸고 신규노조 간부 교육 사업의 체계를 잡고자 하였다. 그러나 신규노조 간부 교육 사업이 민주노조 정착화 되는 기간에 진행되다 보니 당면과제 중심으로 진행된 아쉬움이 있다. 청년노동자 조직 확대 사업이 주되게 펼쳐지고, 신규노조 설립이 증가되고 있는 상황을 고려하여 이후 신규노조 간부 및 조합원 교육, 청년노동자 조직사업이 안정된 체계로 자리 잡도록 계획 실행해야 하는 과제가 남았다.
- 5,000 시대를 넘어 1만 시대로 전진이라는 사업계획은 단순히 명수 확대만을 목표로 한 것이 아니다. 조직 확대를 맞게 ‘지부- 지부지회 조직화 사업체계 구축’, ‘조합주의, 경제주의를 극복하고 민중주권, 민족자주 시대에 맞는 민주노조 운동전개’를 통해 질적 양적 발전을 이루는 것에 목표를 두었다. 코로나19 악재 속에서도 목표를 분명히 하고 사업을 집행, 성과를 만들어 냈다.

2. 노동적폐 청산, 구조조정 분쇄, 노동법 개정 투쟁

- 주요 투쟁 내용으로 ‘구조조정 분쇄 및 2020년 임단투 승리’, ‘노동법 개악 저지, 노동법 전면 재개정 투쟁’, ‘재벌개혁-오조할 권리 쟁취 투쟁’을 두었다.
- 자동차 산업 재편, 코로나 경제위기로 구조조정이 예상되는 조건에서 구조조정예 대한 전조직적인 대응 태세를 구축하고 현대차재벌에 대한 대응과 고강알루미늄에 정리해고를 막아내고 구조조정을 분쇄하는 성과를 이루었다.
- 코로나 국면에도 11월 전태일열사 50주기 노동자대회로 그 결의를 모아내어 1500여명 조합원들이 참석하는 결의대회를 만들어 냈다. 또한 하반기 민주노총 지도부 일부의 심각한 정세인식을 바로잡고 비상대책위원회 중심으로 ‘전태일 3법 입법 쟁취 투쟁’ ‘중대재해기업 처벌법 입법 투쟁’에 총 집중 매진하였으며 울산지부 3000명 입법청원을 돌파해내고 10만 입법 투쟁에 적극적으로 함께 하였다.
- 또한 ‘지부집단교섭 확대로 공동투쟁 강화’를 목표로 하고 서진산업사내하청울산지회, 서진산업사내하청지회, 서연씨엔에프지회, 대륙금속지회가 지부집단교섭에 참여하며 11개 사업장으로 확대되었다. 지부집단교섭 사업장과 대각선 교섭 사업장 전체가 고강알루미늄지회 구조조정 분쇄, 현대모비스물류지회 임단투 투쟁, 신규노조 민주노조 안착화 투쟁에 지부가 중심으로 공동투쟁으로 규합해 나갔다.

3. 조합원을 주인으로 직접 민주주의 구현

- ‘민주적 참여, 소통체계 구축’, ‘조합원 정책제안 운동 전개’를 주요 내용으로 하였다. 이에 맞게 다양한 콘텐츠를 개발하여 sns 소통 체계를 구축하려고, 조합원 주소록 취합 등을 진행하였으나 소통체계에 다양성을 고민하지 못한 한계가 존재, 총선시기 및 지부 사업에 조합원들의 다양한 정책이 담길 수 있도록 하는 노력이 부족하였다.
- 이는 이후 1만 시대로 나아가는 울산지부 정책실현에 무엇보다 중요한 과제로 제출되었다.

4. 자주통일- 정치세력화 사업 확대

- ‘민족자주 투쟁 및 교류사업’, ‘반미반일 제국주의 반대투쟁’, ‘역사바로세우기 투쟁 및 역사기행’, ‘2020년 총선대응 투쟁, 일상 정치활동’, ‘적폐정당 자유한국당 해체, 더불어민주당 심판 투쟁’을 주요하게 계획하였다.
- 2020년 총선 대응으로 적폐정당 자유한국당의 숨통을 끊어내고, 더불어민주당을 심판하고 진보정당의 승리와 민주노총 지지 후보인 김종훈, 김진영, 이향희 후보의 승리를 위해 선대본에 적극 참여하는 등 계급투표 조직을 위해 노력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2020년 총선 대응에서 객관적인 한계를 극복하지 못했고 일상적인 정치 활동을 전개하지 못했다.
- 한미워킹그룹 해체 방위비 인상 저지 투쟁을 민주노총과 함께 완강하게 전개하였으며 온-오프라인 인증샷 활동 및 입법 청원운동 등을 전개하였으며, 대북전단 살포 금지법 제정에 서명운동 및 입법청원 운동으로 영향을 주며 반전평화 투쟁을 진행하였다.
- 7-8월 자주통일 사업은 코로나19의 속에서도 민주노총 지역통일선봉대 활동은 다양한 활동이 진행되었다. 그러나 역사기행 등 실천되지 못하고 세력화 사업과 마찬가지로 시기별, 일부 사업으로 진행되는 아쉬움이 있었다. 이에 일상적으로 조합원과 함께 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과 일상적으로 작은 실천부터 다양한 사업진행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5. 교육 체계 혁신 및 구축

- 주요하게 ‘교육위원회 정비 및 강화’, ‘맞춤형 교육시스템 도입’을 계획했다. 5000시대를 넘어 1만시대로 가는 지부 사업에서 교육 사업은 무엇보다도 중요한 사업이다. 기간 교육내용에 안주하는 것이 아니라 세대변화, 조직력 강화에 맞춘 교육 체계 혁신에 중점을 뒀다 한다.

6. 1만 시대 지도 집행체계 강화

- ‘간부육성사업을 통한 역량강화’, ‘지부집행체계 안정화를 통해 지도집행력 강화’, ‘1만 시대에 맞는 지부규정, 규칙정비’, ‘각 부서 및 위원회 사업장 담당 임원제를 통한 집행력 강화’를 주요 목표로하였다.
- 기간 지부 집행체계는 지속적인 정비를 통해 안정화의 바탕을 마련하였고 집행력 강화로 점검회의 등을 진행하고 있으나 이를 더 철저하게 계획논의, 점검, 총화회의를 거쳐 집행에 차질이 없도록 해야 하는 과제를 남겼다.
- 부서 및 사업장 담당 임원제에서 임원들의 역량 강화 필요성이 무엇보다 절실하다는 것이 다시 한 번 확인이 되었다.
- 근본적으로 임원 확대, 집행간부 보강 등에 대한 대책을 수립해야 하는 과제를 남겼다.

7. 안전하게 일할 권리! 노동법·생명안전법 개정투쟁

- ‘노조 수임사업 이행’, ‘4월 건강권쟁취 투쟁 진행’, ‘위험의 외주화 금지법’,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문재인정권의 생명안전제도 개악 분쇄 투쟁’이 주된 목표였다.
- 지속적인 산재사망에도 책임지지 않는 정부와 기업에 대한 투쟁과 더불어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을 위한 민주노총 10만 청원운동을 진행하였고 3000여명 입법청원을 조직하였다. 또한 교육 및 선전전 등을 통해 이를 확산하는 계기를 마련하였으며, 전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였다. 비록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 국회에서 누더기 되었으나 전사회적으로 쟁점화를 시켜내는 성과를 이뤘다.
- 일상적인 노동안전사업을 전개하였으며 사업장 위험성 평가 및 작업환경측정 진행 추진 점검 투쟁과 하반기 산재처리지연 대책 마련과 산재보험 제도 개혁 투쟁을 힘차게 전개하였다.

- 지부지회 담당 임원 및 간부에 대한 역량사업이 주기적으로 필요하다는 과제와, 지부 지회간 소통이 명확하게 되어야 집행에 차질이 없음을 확인하고 이를 해소해야 하는 과제가 남았다.

8. 총선투쟁 승리

- ‘자유한국당 괴멸, 더불어민주당 심판, 진보정당 승리’, ‘울산지부 조합원 김종훈 당선 및 민주노총지지후보 당선’, ‘민주노총 전략지역 집중지원’, ‘계급투표 조직’, ‘총선 승리를 위한 교육 선전’을 주요 목표로 하였다.
- 4.15 총선에서 적폐정당 자유한국당의 숨통을 끊어내고, 더불어민주당을 심판하고 진보정당 승리와 전략지역 민주노총 지지후보 김종훈 후보의 당선을 위해 적극적인 계급투표 조직 및 선대본 결합 등을 전개하였다.
- 울산지역에 적폐정당 후보들이 부활하고, 전략지역에서 민주노총 지지후보인 김종훈 후보의 석패로 아쉬움을 남겼다.
- 4월 총선투쟁에 확대간부 및 조합원 동지들이 투표조직 등 함께 나섰으나 여러 정세 상황으로 아쉽게 패배를 하였다. 그러나 이는 내 지적이 되어왔던 선거 시기 집중이 아니라 일상적인 진보정치활동이 활성화 되어야 한다는 점을 명확히 드러냈다.

IV. 부서 및 위원회 사업평가

【 조직부 】

1. 사업목표 및 방향

- 1) 조직쟁의담당자회의 안정화
- 2) 지부조직강화사업
- 3) 현장조직력 강화 및 확대사업
- 4) 투쟁사업장 지원 및 신생지회 설립 연대 지원
- 5) 지부 문화사업 지원

2. 주요사업평가

1) 조직쟁의담당자회의 안정화

- 매월 정기적인 조직부장단회의 개최를 통해 회의의 안정화가 이루어짐
- 지부와 지회의 원활한 소통으로 울산지부 집행력을 보강하는 역할을 수행하였음
- 지부 조직부차장 제도를 실시함으로써 집행력을 보강하게 되었음

2) 지부조직강화사업

- 2020년 울산지부의 정면돌파의 슬로건을 앞장에서 구현하는 정면돌파 선봉대로서의 역할 수행을 위한 지부 조직력강화에 복무함
- 주 슬로건은 “정면돌파” 구호는 ‘가는 길 험난해도 웃으면서 투쟁하자’ 대표투쟁가 ‘연대투쟁가’로 설정하여 일관되게 진행함
- 정기적인 회의를 고강알루미늄 파업, 현대모비스물류파업, 울산시청농성장 등 투쟁사업장과 연계하여 진행하면서 실천형 노동 간부 육성에 복무하였음
- 지부의 지도집행력 강화를 위해 수련회를 통한 조직부장들의 선동교육과 분기별 회의시 소양교육을 통해 실천과 학습을 병행함
- 파업지침에 따른 각 지회별 파업결의대회 및 집회, 선전전에서 지회 조직담당자들이 직접 선동과 사회를 집행할 수 있도록 지원함

3) 현장조직력 강화 및 확대사업

- 신생지회의 설립을 지원하고 조직 강화를 위한 조합원 기초소양교육과 초급간부의 기초교육을 실시함
- 지부의 미조직사업 주체가 생기면서 역할을 나누게 됨
- 설립 2~4년차 지회의 투쟁과 간부교육 등 안정적 지회 운영에 복무함
- 지부와 지회의 소통을 위한 네트워크 구성하여 활발하게 소통함

4) 투쟁사업장 지원 및 신생지회 설립 투쟁

- CCTV관제요원투쟁, 요양간호사투쟁 등 지역 투쟁에 연대하였다.
- 금오산업해고자 복직투쟁, 현대글로벌비스 투쟁 등에 조직부 자체 지원투쟁 하였다.
- 지부 총파업 투쟁 및 울산지부 결의대회, 투쟁사업장 결의대회에서 정면돌파 실천 단으로 대회 진행 및 문화선봉대 역할을 수행하였다.
- 신생지회 설립에 따른 출투 등, 교섭 진입 시까지 투쟁을 지도 지원하였다.

5) 지부 문화사업 지원

- 지부 문화체육부 회의는 조직부장단 연석회의로 1회 개최에 그침
- 문화부장 및 문화패 설립 지원은 계획은 있었으나 실제로 수행할 여력이 부족하여 진행하지 못함

3. 총괄평가

2020년은 선을 넘어 정면돌파 하자는 지부의 주력 방침에 따라 조직쟁의부의 담당자를 비롯한 지부의 주요투쟁과 조직사업에 정면돌파의 단결력과 전투력을 기반으로 집행력을 보장하기 위한 사업에 주력하였다.

코로나의 위협 속에서도 총파업을 위시한 임단투 및 지회 투쟁사업장 문제해결을 위한 결의대회를 결의 높게 진행하였다. 또한 유래 없는 전노대 지역별 개최 방침 상황에서도 1,400명에 달하는 금속노조 울산지부 조합원의 참가를 통해 조직력을 과시하기도 하였다.

5,000을 돌파하여 6,000명의 대오를 넘어서게 될 2021년은 울산지부의 집행력을 담보할 수 있는 체계적인 실행계획이 요구된다. 또한 여전히 계속될 코로나 위기 상황 속에서 정권말기 문재인정권의 노동탄압을 뚫고 나갈 지부의 단결력과 투쟁력을 더욱 비상하게 높여내야 하는 과제가 요구된다 할 것이다.

【교육선전부】

1. 사업목표

- 조합원 및 간부 교육프로그램 안착화
- 교육선전부 역량강화
- 다양한 선전사업 진행
- 청년노동자 사업진행

2. 주요사업평가

1) 조합원 및 간부 교육프로그램 안착화

- 하반기 울산지부 법률학교를 개최하여 120여명의 간부들을 상대로 노동 조건, 현장투쟁 등 노동법 기본주제를 학습하고, 개정된 산업안전보건법등 내용을 숙지하여 현장 조합원들에게 전파했다.
- 2년간 진행된 울산지부 법률학교는 간부들의 만족도가 높고 개정된 노동법 등 산업안전보건법에 대해 이해를 도왔다. 지속적인 법률학교 개최가 필요하다.
- 확대간부 및 조합원을 상대로 한 전체 지회 교육으로 2020투쟁의 성격을 설명하고, 투쟁준비 했다.

2) 교육선전부 안정화와 전문성 강화

- 각 지회 교육선전부장들을 대상으로 글쓰기, 망고보드, 지역본부 2020선전학교 참가로 교육선전부장들의 역량을 강화했다.
- 울산지부 자체적으로 망고보드 1년 사용권을 구매하여 각 지회와 함께 사용함으로써 편리하고 쉽게 각 지회 자체적으로 유인물 및 선전물을 제작할 수 있었다.

3) 다양한 선전사업 진행

- 시기에 맞게 카드뉴스 및 웹자보 발행을 하였지만 조금 더 횟수를 늘리고, 정기적인 발행을 할 필요가 있다.
- 유튜브를 활용한 조합원과의 소통을 준비하였으나 준비과정의 미흡으로 진행하지 못했다. 2년차에는 핵심 사업으로 진행해야 한다.

4) 청년노동자 사업진행

- 지역본부 2020청년노동자학교에 울산지부는 연인원 60여명이 참여를 하였고, 2회 이상 참여한 조합원이 있을 정도로 이제 정착화 되었다. 후속으로 새로운 간부 발굴을 위한 사업을 진행해야 한다.

3. 총괄평가

- 법률학교, 확대간부 및 조합원 교육을 통하여 2020투쟁 정세를 해설하고 투쟁을 조직하였다. 이후 노동법개정 등에 대응하여 법률학교를 준비해야 하고, 다양한 방식의 간부 및 조합원 교육을 준비해야 한다.
- 카드뉴스 및 웹자보의 활용을 늘리고, 다양한 방식의 선전방식을 개발해야 함. 유튜브 방송 등을 이용한 조합원과의 소통을 확대해야 한다.

【 미조직비정규직조직위원회 】

1. 사업목표

- 1) 금속울산지부 5,000 조합원 초과달성
- 2) 미비위원회 월1회 이상 실천투쟁
- 3) 미비위원 - 미비활동가로 역량강화
- 4) 주요공단지역 기초자료 데이터베이스 구축
- 5) 신규지회 안정화

2. 사업평가

1) 실천투쟁 중심의 미비위원회 운영 및 공단조직화 선전전

○ 실천투쟁 선 배치하여 미비위원회를 운영하였음.

- 3월 달천공단 노조가입캠페인
- 6월 고강알루미늄지회 구조조정분쇄투쟁, 삼성SDI지회 민주노조사수투쟁
- 7월 매곡공단/모듈화산업단지 노조가입 캠페인
- 9월 금오산업해고자 복직투쟁 연대투쟁,
- 10월 LG케어솔루션지회(현 하이엠솔루텍지회) 조합원 가입선전전 등

시기집중 투쟁으로 현안투쟁을 진행하고 있는 지회에 미비위원회 동지들의 연대투쟁을 전개하였음. 공단지역 데이터구축을 계획하였으나, 울산시의 미온적 태도로 공단데이터를 확보하지 못함. 2년차 사업에서는 공단지역 데이터를 확보해서 지부 미조직사업을 보다 체계적, 과학적, 집중적인 공단조직화 사업을 준비해야 함.

○ 미비위원회 회의를 매일 정례화하지 못하였음. 이는 미비위원회 사업의 계속성, 지속성으로 이어지지 못한 결과를 초래, 2년차 사업에서는 매일 회의 사수가 반드시 관철되어야 함.

2) 미비위원회 역량강화사업

○ 미비위원회 역량강화를 위해 분기별 역량강화를 계획하였음

- 6월 미비위원회 수련회에서 노조상담 관련 교육을 1차례 진행하였음.
- 7월에 진행된 지부 법률학교에 참가하였음

- 최초 민주노총, 노조 교육수련회와 연동해서 미비위원 참가조직으로 역량강화를 계획하였으나 코로나 19로 인해 거의 모든 교육수련회가 중단 됨. 2년차에서는 지부미비위원회 주도의 역량강화 교육사업을 배치해야 함.

3) 미조직 조직사업 및 조직 확대

○ 금속노조울산지부 조합원 규모가 5,000을 넘어 1만 울산지부 시대의 전망을 열어 놓은 단계로 진입하였음.

2020년 7월 31일 기준, 울산지부 조합원수는 5,510명임. 이후, 1개 지회, 4개 분회가 창립 함. 따라서 현재 울산지부 조합원수는 5,800여명. 최초 목표로 세운 5,000조합원은 상반기에 목표 달성 됨. 지난해 특이할 점은 서연씨엔에프지회의 사내하청분회 조직, 현대글로벌비스울산지회의 모듈화단지 3분회 조직은 그동안 지부중심의 노조상담, 노조창립 사업에서 저변을 넓히는 계기가 되었고, 조합원 확대에 큰 의미가 있음. 이후 울산지부와 각지회가 유기적인 미조직사업장 조직확대 사업을 위하여 미비위원회가 교량자 역할을 자임하여 소통을 강화해야 함.

<2020년 신규지(분)회>

- ① 정명지회 창립(2020.2.18.)
 업종분류: 자동차부품(DAS 하청업체)
 전체조합원수 34명 / 지회장 박춘성
- ② 삼정지회 창립(2020.2.23.)
 업종분류:자동차부품(현대글로벌비스 서열업체)
 11월 현대글로벌비스울산지회로 통합
 전체조합원수 60명 / 지회장 김태균
- ③ 영실지회 창립(2020.2.23.)
 업종분류: 자동차부품(현대글로벌비스 서열업체)
 11월 현대글로벌비스울산지회로 통합 - 전체조합원수 85명 / 지회장 박소영
- ④ 현대제철울산지회 창립(2020.4.19.)
 업종분류: 강관제작 및 수출, 자동차 차체 생산
 전체조합원수 591명 / 지회장 김성현

- ⑤ 신한중공업지회 창립(2020.7.7.)
업종분류: 데크하우스, 거주구생산, 대우조선해양에 납품
(대우조선해양 자회사)
전체조합원수 54명 / 지회장 황덕기

- ⑥ 서연씨엔에프지회 사내하청분회 창립(2020.8.9.)
전체조합원수 26명 / 분회장 이영진

- ⑦ 한주금속지회 설립(2020.10.04.)
업종분류: 엔진의 메니폴드, 너클 샷시, 조향장치
전체조합원수 110명 / 지회장 임종환

- 현대글로벌비스울산지회 3분회 설립(2020.11.22.) 업종분류: 자동차부품 서열
- ⑧ 진우제이아이에스분회 - 전체조합원수 62 / 분회장 임태환
- ⑨ 베스틱분회 - 전체조합원수 82명 / 분회장 박기근
- ⑩ 진우분회 - 전체조합원수 105 / 분회장 정종만

3) 미조직 기획 조직사업

○ 코로나 19정세를 고려해서 창조적인 미조직사업을 전개해야 함. 11-1년차 사업에서 기획 사업으로 준비하였던, 공단노동자 기획조직사업이 늦춰 12월 사업으로 제출되었지만 결국은 집행되지 못했음. 2년차 미조직을 위한 공단 기획 사업은 상반기 중에 실사를 진행하여 보다 창조적인 방법으로 진행해야 함. 더불어서 최근 조직되는 신규노조 구성원들의 연령이 낮고, 계약직 노동자가 많은 점 등 청년노동자들의 처지, 감수성 등을 고려한 다양한 방식의 기획 사업을 전개해야 함.

3. 총괄평가

- 면대 면으로 진행하는 미조직사업인 것만큼 코로나 19에 따른 집합제한 등 많은 제약이 따르는 한 하였지만, 금속노조울산지부의 정면 돌파 투쟁기풍이 2020년 한 해도 미조직 조직사업 성과를 이어가는 한 하였음.

- 10개 신규 지(분회), 1천 1백여 명의 금속노조 조합원이 조직되어 5,000을 넘어

1만 금속노조울산지부 시대의 전망을 열어놓는 성과가 분명 함.

- 전체 지회의 미비위원회 주체가 구성되지 못한 한계 속에서도 지부미비위원회에서 결의한 실천투쟁 중심의 미비위원회 운영에 모든 지부미비위원 동지들이 한 걸 같이 나서주어 투쟁도 조직도 실천도 우선하는 11-1년차 울산지부 미비위원회 활동이었음.
- 1년차 사업에서 미비위원회 회의가 매월 정기적으로 진행하지 못한 것은 미비위원회 사업을 전략적 높이에서 고민하지 못한 오류임. 이를 2년차에서는 반드시 극복해야 함. 뿐만 아니라, 전략사업 높이에서 전 지회 미비위원회 주체가 구성되어야 함.
- 창립한 신규 지(분)회가 안정되게 노조운영을 할 수 있도록 지부차원에서 체계적, 조직적으로 지도가 이루어져야 함.
- 지(분)회 창립이 울산지부강화 -> 전국금속노동조합 강화에 복무할 수 있도록 교육 및 운영체계가 확립되어야 함.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비고
미비위 회의			■	■		■				■		■	□	
공단선전전				■		□	■	■	□	■	■	□	□	
교육 및 조직사업	미비위원 역량강화교육			□			■	■		□			□	
	공단조직화 지역거점조직화			■		□	■	■	□	■	■	□	□	
	공단노동자 미생학교													
	“노조있으세요”													
	노조상담 및 신규노조 안정화	■	■	■	■	■	■	■	■	■	■	■	■	■

【 노동안전보건위원회 】

1. 사업 목표

- 노동안전보건 제도개선과 전체 노동자 건강권 쟁취를 위한 조직 및 투쟁 전개
- 근원적 재해예방체계 구축 및 노동재해 예방활동 강화
- 부당한 산재불승인 대응 및 제대로 치료받을 권리 쟁취
- 노동안전보건활동 집행강화 및 지회 활동체계 구축
- 노동안전보건활동 교육 강화

2. 주요 사업평가

1) 노동안전보건 제도개선과 전체 노동자 건강권 쟁취를 위한 조직 및 투쟁 전개

금속노조의 조직방침으로 위험의 외주화 금지,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등을 중심으로 사업을 진행하였다. 울산지부 산하 운영위원 및 노안담당자와 상집간부들의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선언을 필두로 전 조직적인 법 제정 투쟁을 진행하였다.

울산지역도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울산운동본부’를 중심으로 대시민선전전과 기자회견을 통해 대 시민 여론형성을 조직했으며, 국민 60%가 법 제정에 찬성하는 “이윤보다 생명” 중시하는 사회적 성과를 만들어냈다.

2) 근원적 재해예방체계 구축 및 노동재해 예방활동 강화

2020년 노안사업의 핵심은 노동안전보건법 상 1년에 한번 하는 사업장 위험성 평가 및 작업환경측정을 중점에 두고 사업을 진행하였다.

지부 산하 27개 사업장 중 신규노조를 제외한 12개 사업장이 위험성평가를 완료하였으며, 작업환경측정은 역시 12개 사업장이 완료하고 보고서를 제출하였다.

위험성평가는 사업장의 각 라인별 위험요인을 조사하고, 현장의 조합원이 함께 참여하여 위험성 요인분석과 개선대책을 수립하여 실행하는 아래로부터의 안전한 일터 구현을 실현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그러나 위험성평가에 대한 인식의 부재와 조직적인 준비성 부족 등의 한계를 보여 온 것 역시 사실이다.

지회를 무시하고 위험성평가를 미실시하는 사업장이 있는 반면, 지회가 회사를 견인하여 위험성평가를 현장 조합원의 참여하에 토론을 통해 의견을 수렴하여 개선대책을 수립하여 실행하는 모범적인 전형을 구현한 지회의 모범사례를 지부 산하 사업장에 확대시켜 나가야 할 것이다.

3) 부당한 산재불승인 대응 및 제대로 치료받을 권리 쟁취

조합원들이 “병들지 않고, 다치지 않고, 제대로 치료받을 수 있는” 권리를 확보하기 위한 사업에 중점을 두었다. 질병 산재 요양신청 단계부터 조합원의 직무력 및 병력을 파악하고 직무 분석을 통해 산재요양신청을 지부를 심의를 거쳐 신청하고 근로복지공단의 현장조사 및 심의과정에 지부가 대응하는 체계를 확립하는데 그 중점을 두고 산재신청 투쟁을 진행하였다.

근골격계 산재신청이 95%인 현실을 고려하면 지회에서 초안 작성→지부담당심의(직무력, 병력, 작업환경조사)→산재신청→신청 이후 공단대응의 체계를 확립하여야 전 조직적인 산재요양 투쟁을 진행할 수 있다.

현재 질병 산재지연 투쟁을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11월 17일 선언하고 전개해나가고 있다. 그 과정에서 산재지연처리 단축과 근로복지공단의 협소한 산재인정 범위를 확대시켜 나가고 근골격계 추정 의 원칙을 자동차 부품사 노동자들에게 확대 적용시켜 나가는 투쟁을 전개해 나가야 할 것이다.

4) 노동안전보건활동 집행강화 및 지회 활동체계 구축

지부 노안위원회 및 노안담당자회의는 9차 회의를 진행하였으며, 노안사업의 집행체계와 집행력을 담보해 나가야 할 과정에 있다.

조합원의 안전한 일터를 구현하기 위해 노안담당자들의 활동시간 확보가 타임오프로 인해 한계를 보이고 있으며, 지회별 산업안전보건위(100인 이상 의무) 활성화되지 않는 것 또한 현실이다.

따라서 지회 노안담당자들이 정기적인 현장 안전점검과 산보위 의제 발굴 및 준비, 위험성평가, 작업환경측정, 산재신청, 현장사고 대응 등의 원활한 대응을 위한 활동시간 확보를 별도로 고민하여야 할 것이다.

노동안전보건법 제도상에 있는 안전보건 활동이라도 제대로 현장에서 집행할 수 있도록 인식전환과 함께 지회별 노안사업 전문역량 인자를 전략적으로 양성해해나가는 것이 필요하다.

5) 노동안전보건활동 교육 강화

위험성평가 지침에 근거하여 현장 위험성 요인 체크리스트를 바탕으로 현장의 위험 작업 요인을 발견하고 조합원과 함께 개선대책을 수립, 실행하는 교육사업과 함께 산재신청의 다수를 차지하는 근골격계 산재신청 작성 교육을 수련회와 회의를 통해 실시하였다. 이를 통해 지회의 노안담당자들이 산재경위서 작성 초안을 작성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추었으며, 이를 통해 산재요양 투쟁을 지휘, 지부가 일원화하여 대응하는 집행체계를 확립해 나가는 과정이다.

3. 총괄 평가 및 과제

전 조직적으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및 위험의 외주화금지 투쟁을 전개하였으며, 국민적 여론의 지지를 이끌어냈다. “다수의 삶을 위해 소수의 희생은 불가피하다”라는 대한민국 사회를 지배해온 이데올로기를 “이윤보다. 사람이 먼저”라는 근본적인 인식전환을 가져왔다.

생명경시와 죽음의 차별을 인정하는 민주당으로 인해 비록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 국민발의안에 못 미치는 누더기로 통과되었지만, 국민적 여론과 조합원들의 안전한 일터에 대한 염원은 재개정 투쟁의 동력을 형성하였다.

또한 위험성 평가와 작업환경측정에 대한 노조의 참여와 과정 속에서 안전한 일터를 구현하는데 일정 한계를 가져왔지만, 위험성 평가에 대한 인식제고와 작업환경 개선에 대한 조합원들의 바람을 모아 현장 개선투쟁으로 조직해 나가야 할 것이다.

지부의 노안담당자 회의체계의 복원과 노안사업 집행력을 확보한 것은 성과라고 할 수 있으나, 노안담당자들의 활동시간에 대한 과제를 남겨 두었다.

산재지연처리 투쟁은 조합원들의 치료받을 권리와 건강하게 일터로 복귀를 위한 조직적인 투쟁을 지속적으로 전개해 나가야 할 것이다.

【 통일위원회 】

1. 사업 목표 및 방향

- 1) 통일위원회 회의 안정화
- 2) 자주교류사업 및 통일기행사업
- 3) 반미반일투쟁 및 자주통일운동 진행
- 4) 상급단체 수입사업 및 통일단체 협력교류사업 전개

2. 주요사업 평가

1) 통일위원회 회의 안정화

- 년 4회 회의를 진행하였고, 담당자 미선임된 지회가 많았고 담당자 회의시간 미확보 등으로 인해 회의 참여도가 저조했다.
- 위원회 사업에 대한 의식 전환과 각 지회별 빠짐없이 사업 주체를 세우는 방안이 필요하다.

2) 자주교류사업 및 기행사업

- 코로나19로 인해 4.3항쟁 역사기행 8.15대회 및 중앙통일선봉대 참가조직을 원래 계획대로 진행하지 못함.
- 지역본부 및 유관단체와 함께 진행한 지역 통일학교 및 지역 통일선봉대 참여는 통일위 역량 강화에 일조하였다. 이후 후속사업에 대한 지속적인 연결 사업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
- 직간접적인 재일동포와의 자주교류 및 지원 사업은 작은 성과로 남는다.
남북, 해외를 하나의 민족. 통일의 대상으로 하는 민족자주의식고취를 위한 교육사업 필요성을 확인하는 사업이었다.

3) 반미반일투쟁 및 자주통일운동 진행

- 친일적폐청산을 위한 사업으로 친일파 없는 국회 만들기 투쟁, 친일파 성향의 후보 낙선운동을 통한 4.15 총선투쟁에 복무한 사업은 조합원들의 정치의식과 민족자주성을 강화하는 사업으로 실천적 행동으로 의미 있는 사업이었다.

- 친일 적폐청산을 위한 지속적인 대중사업이 필요하다.
- 방위비 분담금 폐기 및 한미워킹그룹 해체 투쟁은 통일위원회의 주요성과로 남으며 한반도 평화와 번영을 위한 대중적인 과제를 통한 반미자주 투쟁의 과제를 대중화, 일상화, 지속적으로 진행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코로나 사태임에도 불구하고 온. 오프라인 투쟁방식으로 진행한 대북전단지 금지법 제정운동은 실천 활동을 기본으로 한 조합원들의 서명운동 및 대중적인 국회 청원운동으로 대북전단지 금지법 국회통과를 가능하게 한 성과로 남는다.

4) 상급단체 수임사업 및 통일단체 협력교류사업 전개

- 상급단체 및 지역통일 단체와의 협력 사업으로 진행된 노동자 통일학교, 지역통일 선봉대 사업 등은 금속노조 울산지부의 역할을 다해 진행하였고, 이후 과제로는 지부 자체사업으로 연결해서 후속사업을 준비하는 고민이 남았다.

3. 총괄 평가

- 현장 통일 사업의 활성화의 기본인 주체강화를 위한 지부 통일위원회 회의 안정화, 각 지회별 담당자 선정, 자체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과 실천이 필요하다.
- 코로나19로 인해 대중사업이 많이 축소되거나 진행하지 못한 점은 시대의 흐름에 맞게 앞으로 연구, 고민해야 하는 과제로 남는다.
- 주객관적인 상황으로 인해 8.15대회, 중앙통일선봉대 참가 등 중앙 집중의 사업에 참여하지 못한 것은 아쉬운 부분이지만, 지역 내에서의 실천 활동인 자주통일 사업 통일학교 및 지역통선대 활동에 울산지부의 역할을 다하였다, 후속사업과 관련한 연구와 고민은 지속되어야 할 것이다.

【 정치위원회 】

1. 사업 목표 및 방향

- 1) 노동개약 세력 심판, 적폐청산, 진보정치 성장을 위한 4.15 총선 투쟁 승리
- 2) 총선 승리 후 노동정치 복원을 위한 방향 논의 적극화
- 3) 정치위원회 활성화, 현장 노동자 직접정치 역량 강화를 통한 노동정치 기반 확대
- 4) 조합원 정치의식을 높이기 위한 현장 정치교육 강화

2. 주요사업 평가

1) 노동개약 세력 심판, 적폐청산, 진보정치 성장을 위한 4.15 총선 투쟁 승리

- 금속울산 투쟁실천단(정치실천단)을 구성하여 주2회 지역실천(화, 목)과 주1회 현장실천(현장중식선전)활동을 하였다.
- 정치실천단 활동은 상반기 4.15총선을 계기로 반노동, 친재벌 적폐청산의 내용으로 진행하였으나 하반기 노동법개약 관련하여 선전 및 실천 활동에서 역할이 부재하였다.

2) 총선 승리 후 노동정치 복원을 위한 방향 논의 적극화

- 금속노조 울산지부는 투쟁실천단을 구성하여 현장과 지역에서 노동자 정치세력화를 위해 힘을 기울였으나 전국적인 민주당세력의 싹쓸이 선거결과로 귀결
- 금속노조 지지후보를 선정하여 조직역량을 투여 노동자후보 당선을 위한 실천 활동을 완강하게 진행하였으나 분패

3) 정치위원회 활성화, 현장 노동자 직접정치 역량 강화를 통한 노동정치 기반 확대

- 4.15총선까지 지부 정치위원회를 정례화 하여 진행하였으나 총선이후 민주노총, 금속노조, 울산지부 전반적인 정치위원회 활동이 약화되었다.
- 지회 정치위원 선임이 10개 지회에 불과하여 정치방침에 따른 세부 집행에 어려움이 조성되었다.
- 금속노조 지지후보를 선정하여 선전활동 및 실천 활동을 완강하게 벌여냈고 근소한 차이로 패배하였으나 정치실천 투쟁의 승리 가능성을 확인했다.

4) 조합원 정치의식을 높이기 위한 현장 정치교육 강화

- 민주노총 울산본부 정치위원회 주관으로 조합원 정치의식 설문조사 실시
- 민주노총 울산노동자 직접정치 조합원대회 “국회를 뒤집어라! 노동자가 주인이다”를 의욕적으로 준비하였으나 코로나로 폐기
- 지회별 소규모 정치 간담회를 진행하였으나 전체 지회를 아우르지 못하고 각종 투쟁현안에 매몰되어 정치위원회 지회별, 지역별 간담회는 지속적으로 진행되지 못했다.

3.총평

2020년 4.15총선은 전국적인 집권세력의 득세로 민주당이 국회의석 2/3 180석 확보, 진보정치세력의 후퇴라는 침울한 결과를 낳았다.

하지만 국민의힘 등 반노동, 친재벌 적폐세력 심판이라는 국민적인 공감대를 확장시킨 결과라고 평가되어야 할 것이다.

금속노조 울산지부는 정치실천단을 ‘2020 투쟁실천단’ 이름으로 적폐세력과의 투쟁, 진보정치 승리 목표를 가지고 선전과 실천 활동을 적극적으로 벌였다. 또한 금속노조 울산지부 지지후보를 선정하여 노동자 진보정치의 승리를 위해 조직사업과 실천 사업을 벌였다. 그러나 아쉽게도 울산지부 후보는 패했고, 울산지역 석패라는 결과가 나왔다.

또한, 코로나 위기와 장기투쟁사업장의 긴 투쟁과 신규지회의 설립 그리고 하반기 노동법개악 여파 속에서 조합원 정치의식을 높이기 위한 현장 정치교육은 전체 지회를 실시하지 못하고 일부 지회의 간담회로 그치고 말았다.

이는 투쟁실천단 활동을 선거 시기에 맞춰 집중하는 것만으로는 노동자 집권정치의 미래는 열릴 수 없다는 것과 일상적인 정치활동은 노동자 정치의식을 높이는데 매우 중요한 것임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다. 이에 이후 사업은 이 명백한 교훈을 바탕으로 일상적 정치활동이 노동조합 활동 속에서 이뤄질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울산지부 11기 1년차 4/4분기 감사결과 보고서

1. 감사일자 : 2021. 01. 13(수) 2. 감사장소 : 울산지부 회의실
3. 수검자 : 지부장 윤 장 혁
사무국장 고 은 아

울산지부
회의실
인

2021년 1월 13일(수)

지부 감사위원

이 상 순



조합 감사위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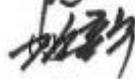
김 주 환



최 순 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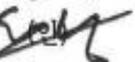
김 홍 규



문 윤 환



전 성 중



김 규 진



■ 11기 1년차 1/4분기 업무부문 감사결과 ■

부서		지적사항	집행부 답변
1		-	-
2		-	

■ 11기 1년차 1/4분기 재정부문 감사결과 ■

순	전표NO	지적사항	집행부 답변	조치요구		
				환입	시정	주의
1		- 출장비 5건 (1/15, 2/5, 2/13, 2/19, 3/24) 42,000원 초과지출 되었습니다. 환입바랍니다.	- 예	●		
2		-	-			

■ 11기 1년차 2/4분기 업무부문 감사결과 ■

부서		지적사항	집행부 답변
1		-	-
2		-	

■ 11기 1년차 2/4분기 재정부문 감사결과 ■

순	전표NO	지적사항	집행부 답변	조치요구		
				환입	시정	주의
1		-				
2		-	-			

■ 11기 1년차 3/4분기 업무부문 감사결과 ■

부서		지적사항	집행부 답변
1		-	-
2		-	

■ 11기 1년차 3/4분기 재정부문 감사결과 ■

순	전표NO	지적사항	집행부 답변	조치요구		
				환입	시정	주의
1		-				
2		-	-			

■ 11기 1년차 4/4분기 업무부문 감사결과 ■

부서		지적사항	집행부 답변
1		-	-
2		-	

■ 11기 1년차 4/4분기 재정부문 감사결과 ■

순	전표NO	지적사항	집행부 답변	조치요구		
				환입	시정	주의
1		-				
2		-	-			

울산지부 11기 1년차 4/4분기 결산 보고서

1. 조합원 현황(조합비 납부현황)

기간: 2020년 1월 1일~ 12월 31일 (단위 명)

지회	월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비 고
1	고강알루미늄지회	78	78	78	78	73	73	73	73	73	52	51	51	
2	덕양산업지회	518	504	504	501	501	501	501	501	501	505	505	505	
3	동진지회	104	104	104	107	107	107	107	106	106	107			20.11.08 동진,영실,삼정 현대글로벌서비스지회로 통합
4	대륙금속지회	84	84	84	84	82	82	83	83	83	81	81	81	
5	대흥공업지회	69	66	66	66	65	65	65	65	65	65	65	65	
6	말레동현필터시스템지회	115	115	115	115	115	115	115	115	115	116	116	116	
7	삼성전자서비스울산지회	116	116	120	121	121	122	122	123	123	125	125	125	
8	삼성SDI울산지회	17	12	12	12	13	13	15	15	15	15	15	15	
9	서연씨엔에프지회	131	131	131	131	131	131	131	131	157	157	157	157	20년 8월 사내하청분회 설립
10	서연이화지회	469	452	453	453	452	450	450	450	450	441	441	441	

전국금속노동조합 울산지부 11기 2년차 정기대의원대회

11	서진산업사내하청지회	152	155	155	155	156	156	157	157	157	157	157	157	
12	서진산업사내하청울산지회	41	41	40	40	40	41	41	41	41	41	41	41	보성테크지회에서 명칭변경
13	세종공업지회	454	445	445	445	445	445	445	445	445	445	445	445	
14	울산현대모비스지회	791	794	794	794	794	794	794	794	794	783	783	783	현대모비스비정규직지회에서 명칭변경
15	에스아이씨지회	13	13	13	13	13	13	13	13	13	11	11	11	
16	정호정빈산업지회	91	92	92	92	93	93	93	95	95	95	95	95	
17	한국ITW울산지회	116	116	116	116	116	116	116	116	116	116	116	116	
18	한국프랜지지회	306	290	290	290	290	290	290	290	290	292	292	292	
19	한온시스템사내하청지회	194	195	195	194	198	198	197	199	199	199	199	199	
20	현대그린푸드울산지회	226	232	232	227	213	213	212	212	212	211	211	211	
21	현대모비스울산지회	347	349	349	376	374	374	374	374	374	384	384	384	
22	현대모비스물류지회	143	143	143	143	143	143	144	144	144	143	143	143	
23	정명지회		50	34	34	34	33	33	33	33	33	33	33	20.02.17 운영위 신규지회 승인

전국금속노동조합 울산지부 11기 2년차 정기대의원대회

24	삼정지회		28	48	49	52	51	60	60	60	59			20.02.17 운영위 신규지회 승인 20.11.08 동진,영실,삼정 현대글로벌비즈니스회로 통합
25	영실지회		86	86	87	87	87	86	86	86	85			20.02.17 운영위 신규지회 승인 20.11.08 동진,영실,삼정 현대글로벌비즈니스회로 통합
26	현대제철울산지회				556	602	575	589	589	589	590	590	590	20.04.27 운영위 신규지회 승인
27	신한중공업지회							142	131	131	59	59	59	20.07.13 운영위 신규지회 승인
28	kum				69	65	66	66	66	66	66	66	66	지회설립 정식 진행 안됨
29	개별조합원	33	24	23	24	24	20	24	19	19	24	24	24	
30	현대글로벌비즈니스울산지회											249	498	20.11.08 동진,영실,삼정 현대글로벌비즈니스회로 통합
31	한주금속지회										124	124	124	20.10.04 운영위 신규지회 승인
합 계		4,608	4,715	4,722	5,372	5,399	5,367	5,538	5,526	5,552	5,581	5,578	5,827	

2. 일반회계 수입 현황

기간: 2020년 1월 1일~ 12월 31일 (단위: 원)

과 목			당초예산	경정, 전용	최종예산	수입액												최종예산 대비잔액	수입률 (%)	
관	항	목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합계
교부금	교부금	교부금	205,371,600		205,371,600	17,303,297	17,086,096	17,106,360	4,000,000	18,271,809	36,564,261	19,901,255		41,164,477	20,964,665	20,327,212	22,828,891	235,518,323	-30,146,723	115
부과금	부과금	부과금																0	0	0
가타수입	가타수입	가타수입													200,000			200,000	-200,000	0
		이자수입					2,779				3,957				9,687		17,715	34,138	-34,138	0
합계			205,371,600	0	205,371,600	17,303,297	17,086,096	17,109,139	4,000,000	18,271,809	36,568,218	19,901,255	0	41,174,164	21,164,665	20,327,212	22,846,606	235,752,461	-30,380,861	115

3. 특별회계 I (투쟁기금) 수입 현황

기간: 2020년 1월 1일~ 12월 31일 (단위: 원)

과 목			당초예산	경정 전용	최종예산	수입액												최종예산 대비잔액	수입률 (%)	
관	항	목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합계
투쟁기금	이월금	일반 이월금	75,412,428		75,412,428	75,412,428	0	0	0	0	0	0	0	0				75,412,428	0	100.0
		투쟁기금 이월금	17,563,343		17,563,343	17,563,343	0	0	0	0	0	0	0	0				17,563,343	0	100.0
	본조 지원금	투쟁사업비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가타 수입	이자수입	0	0	0	0	0	32,328	0	0	17,770	0	0	12,765			8,130	70,993	-70,993	100
		가타수입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합 계			92,975,771		92,975,771	92,975,771	0	32,328	0	0	17,770	0	0	12,765	0	0	8,130	93,046,764	-70,993	100

4. 특별회계 Ⅱ (미조직 기금) 수입 현황

기간: 2020년 1월 1일~ 12월 31일 (단위: 원)

과목			당초예산	경정 전용	최종예산	수입액													최종예산 대비잔액	수입률 (%)	
관	항	목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합계			
미조직 기금	이월금	일반 이월금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미조직 기금	본조 지원금				0	0	3,000,000	0	3,000,000	6,630,000	2,040,000	0	420,000	1,180,000	2,460,000	240,000	18,970,000	-18,970,000	0%	
	기타수입	이자수입				0	0	60	0	0	347	0	0	1,842	0	0	1,679	3,928	-3,928	0%	
		잡수입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합 계			0	0	0	0	0	3,000,060	0	3,000,000	6,630,347	2,040,000	0	421,842	1,180,000	2,460,000	241,679	18,973,928	-18,973,928	0%	

5. 공동회계 수입 현황

기간: 2020년 1월 1일~ 12월 31일 (단위: 원)

과 목			당초 예산	경정 전용	최종 예산	수입액												최종예산 대비잔액	수입 률 (%)	
관	항	목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합계
지역 공동 사업 비	이월금	공동사업 이월금	289,522,779		289,522,779	289,522,779	0	0	0	0	0	0	0	0	0	0	0	289,522,779	0	0
	본 조 지급금	공동 사업비	137,985,336		137,985,336	11,901,140	0	21,359,318	10,755,071	0	21,688,111	10,931,247	0	21,675,956	10,882,377	10,866,248	11,118,622	131,178,090	6,807,246	95%
	가타 수입	가타수입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잡수입	이자수입	0	0	0	0	0	109,281	0	0	68,377	0	0	70,526	0	0	72,215	320,399	-320,399	0%
합계			427,508,115		427,508,115	301,423,919	0	21,468,599	10,755,071	0	21,756,488	10,931,247	0	21,746,482	10,882,377	10,866,248	11,190,837	421,021,268	6,486,847	98%

6. 일반회계 지출 현황

기간: 2020년 1월 1일~ 12월 31일 (단위: 원)

관	과목		예산액			지출액													최종예산 대비잔액	지출율 (%)
	항	목	당초예산	경정 전용	최종 예산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합계		
운 영 비	유 지 비	관리비	5,040,000	2,040,000	7,080,000	415,084	296,096	0	429,744	166,194	249,010	283,550	272,765	273,670	349,122	250,000	1,260,344	4,245,579	2,834,421	60%
		차량유지비	13,200,000		13,200,000	321,500	371,500	3,189,860	320,000	140,000	389,750	280,000	280,000	584,700	1,164,000	285,400	210,000	7,536,710	5,663,290	57%
		신문도서비	840,000		840,000	0	0	0	0	0	0	0	0	0	0	0	0	0	840,000	0%
		소모품비	4,000,000		4,000,000	474,100	156,520	507,110	20,800	518,000	74,600	987,450	18,400	65,200	773,070	313,950	535,980	4,445,180	-445,180	111%
		통신비	3,000,000		3,000,000	112,900	82,820	78,120	8,580	569,670	82,560	89,570	120,410	71,930	73,020	232,260	90,510	1,612,350	1,387,650	54%
		비품비	5,000,000		5,000,000	229,200	0	0	0	0	0	447,310	0	605,660	700,000	150,000	1,004,000	3,136,170	1,863,830	63%
		인쇄비	500,000		500,000	0	19,750	0	0	0	0	0	0	0	0	0	0	19,750	480,250	4%
		기타유지비	1,000,000		1,000,000	36,260	18,400	55,000	2,180	23,600	56,000	93,030	0	0	0	0	0	284,470	715,530	28%
		항의 소계	32,580,000	2,040,000	34,620,000	1,589,044	945,086	3,830,090	781,304	1,417,464	851,920	2,180,910	691,575	1,601,160	3,059,212	1,231,610	3,100,834	21,280,209	13,339,791	61%
	부 리 후 생 비	복리후생비	21,626,000	1,400,000	23,026,000	1,261,800	2,038,000	2,279,320	2,020,100	1,465,900	1,250,100	1,727,000	1,538,620	1,820,600	1,836,360	2,043,700	2,005,900	21,287,400	1,738,600	92%
		항의 소계	21,626,000	1,400,000	23,026,000	1,261,800	2,038,000	2,279,320	2,020,100	1,465,900	1,250,100	1,727,000	1,538,620	1,820,600	1,836,360	2,043,700	2,005,900	21,287,400	1,738,600	92%
	업 무 추 진 비	직무활동비	18,000,000		18,000,000	1,100,500	1,100,500	1,100,000	2,700,000	1,500,000	1,500,000	1,500,000	1,500,000	1,500,000	1,500,000	1,500,000	1,500,000	18,001,000	-1,000	100%
		항의 소계	18,000,000		18,000,000	1,100,500	1,100,500	1,100,000	2,700,000	1,500,000	1,500,000	1,500,000	1,500,000	1,500,000	1,500,000	1,500,000	1,500,000	18,001,000	-1,000	100%
		관의 소계	72,206,000	3,440,000	75,646,000	3,951,344	4,083,586	7,209,410	5,501,404	4,383,364	3,602,020	5,407,910	3,730,195	4,921,760	6,395,572	4,775,310	6,606,734	60,568,609	15,077,391	80%

전국금속노동조합 울산지부 11기 2년차 정기대의원대회

과 목		예산액			지출액													최종예산 대비잔액	지출 율 (%)		
관	항 목	당초예산	경정 전용	최종예산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합계				
사업비	여비	출장비	13,000,000		13,000,000	245,500	744,100	648,400	251,890	214,600	253,768	112,000	68,000	231,000	56,400	531,200	185,672	3,542,530	9,457,470	27%	
		항의 소계	13,000,000		13,000,000	245,500	744,100	648,400	251,890	214,600	253,768	112,000	68,000	231,000	56,400	531,200	185,672	3,542,530	9,457,470	27%	
	회의 비	총회	3,000,000		3,000,000	41,250	1,825,400	0	0	0	0	0	0	0	0	0	2,273,150	4,139,800	-1,139,800	138%	
		대의원 대회	14,000,000		14,000,000	388,500	4,613,040	0	891,000	-206,500	0	0	0	0	0	0	0	0	5,686,040	8,313,960	41%
		운영위 원회	5,000,000		5,000,000	390,500	901,000	573,000	300,000	0	178,000	0	0	0	52,600	336,950	350,000	3,082,050	1,917,950	62%	
		집행위 원회	1,500,000		1,500,00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1,500,000	0%
		기타회 의비	2,000,000		2,000,000	0	0	277,000	0	0	0	0	0	0	0	0	0	272,000	549,000	1,451,000	27%
		항의 소계	25,500,000		25,500,000	820,250	7,339,440	850,000	1,191,000	-206,500	178,000	0	0	0	52,600	336,950	2,895,150	13,456,890	12,043,110	53%	
	수련 회비	교섭 위원 수련회	4,000,000		4,000,00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4,000,000	0%
		항의 소계	4,000,000		4,000,00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4,000,000	0%
	부서 사업	총무사 업비	4,000,000		4,000,000	0	0	0	0	200,000	0	209,000	40,000	0	40,000	0	410,000	899,000	3,101,000	22%	

전국금속노동조합 울산지부 11기 2년차 정기대의원대회

비	조직사 업비	15,000,000		15,000,000	463,800	1,005,990	908,470	191,000	2,057,580	1,154,100	2,220,310	974,510	901,450	1,160,300	535,980	1,356,770	12,930,260	2,069,740	86%
	노안사 업비	5,000,000		5,000,000	42,000	120,000	42,000	1,082,460	0	771,500	589,000	0	107,000	16,000	477,000	137,000	3,383,960	1,616,040	68%
	교육사 업비	7,500,000		7,500,000	0	319,220	983,830	119,000	0	447,880	3,664,730	400,000	0	100,000	0	0	6,034,660	1,465,340	80%
	선전사 업비	10,000,000		10,000,000	290,900	235,000	1,287,840	953,700	0	75,000	746,100	366,300	1,262,900	0	0	384,800	5,602,540	4,397,460	56%
	문체사 업비	6,000,000		6,000,000	0	0	0	0	0	0	0	0	0	0	0	0	0	6,000,000	0%
항의 소계		47,500,000		47,500,000	796,700	1,680,210	3,222,140	2,346,160	2,257,580	2,448,480	7,429,140	1,780,810	2,271,350	1,316,300	1,012,980	2,288,570	28,850,420	18,649,580	61%
연대 사업 비	대외협 력비	4,500,000	700,000	5,200,000	300,500	0	0	0	300,000	1,100,000	1,360,000	250,000	362,000	300,000	550,000	660,000	5,182,500	17,500	100%
	항의 소계	4,500,000	700,000	5,200,000	300,500	0	0	0	300,000	1,100,000	1,360,000	250,000	362,000	300,000	550,000	660,000	5,182,500	17,500	100%
위원 회	통일위 원회	5,000,000		5,000,000	0	384,000	0	0	980,000	1,570,000	0	250,000	0	0	422,100	0	3,606,100	1,393,900	72%
	정치위 원회	5,500,000		5,500,000	195,500	335,300	719,000	953,000	-28,000	0	0	43,000	0	142,000	0	0	2,359,800	3,140,200	43%
	여성위 원회	1,500,000		1,500,000	0	0	133,800	0	0	0	0	0	0	0	0	0	133,800	1,366,200	9%
	미비위 원회	12,000,000		12,000,000	588,200	2,278,910	29,000	319,000	768,420	2,045,380	0	0	374,200	156,600	555,000	214,000	7,328,710	4,671,290	61%

전국금속노동조합 울산지부 11기 2년차 정기대의원대회

	단협위 원회	2,000,000		2,000,000	0	0	230,000	0	30,000	870,000	303,420	0	0	0	0	280,000	1,713,420	286,580	86%
	감사위 원회	1,500,000		1,500,000	208,000	0	0	0	0	0	0	0	0	0	0	600,000	808,000	692,000	54%
	항의 소계	27,500,000		27,500,000	991,700	2,998,210	1,111,800	1,272,000	1,750,420	4,485,380	303,420	293,000	374,200	298,600	977,100	1,094,000	15,949,830	11,550,170	58%
집회 행사 비	집회 행사비	7,000,000		7,000,000	0	634,900	110,000	0	0	107,000	0	0	0	600,000	0	1,391,000	2,842,900	4,157,100	41%
	항의 소계	7,000,000		7,000,000	0	634,900	110,000	0	0	107,000	0	0	0	600,000	0	1,391,000	2,842,900	4,157,100	41%
	관의소계	129,000,000	700,000	129,000,000	3,154,650	13,396,860	5,942,340	5,061,050	4,316,100	8,572,628	9,204,560	2,391,810	3,238,550	2,623,900	3,408,230	8,514,392	69,825,070	59,874,930	54%
예비 비	예비비	4,165,600	-4,140,000	25,600	0	0	0	0	0	0	0	0	0	0	0	0	0	25,600	0%
	항의 소계	4,165,600	-4,140,000	25,600	0	0	0	0	0	0	0	0	0	0	0	0	0	25,600	0%
	관의 소계	4,165,600	-4,140,000	25,600	0	0	0	0	0	0	0	0	0	0	0	0	0	25,600	0%
합 계		205,371,600	0	205,371,600	7,105,994	17,480,446	13,151,750	10,562,454	8,699,464	12,174,648	14,612,470	6,122,005	8,160,310	9,019,472	8,183,540	15,121,126	130,393,679	74,977,921	63%

7. 특별회계 I (투쟁기금) 지출 현황

기간: 2020년 1월 1일~ 12월 31일 (단위: 원)

과 목			당초예산	경정 예산	최종예산	지출액												최종예산 대비잔액	지출율 (%)	
관	항	목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합계
투쟁 기금	투쟁 기금	투쟁 사업비	92,975,771		92,975,771	3,472,000	-218,500	4,175,900	2,218,320	0	5,428,166	23,041,400	2,428,000	1,739,550	8,986,500	12,127,900	940,620	64,339,856	28,635,915	69
합 계			92,975,771	0	92,975,771	3,472,000	-218,500	4,175,900	2,218,320	0	5,428,166	23,041,400	2,428,000	1,739,550	8,986,500	12,127,900	940,620	64,339,856	28,635,915	69

8. 특별회계 II (미조직 기금) 지출 현황

기간: 2020년 1월 1일~ 12월 31일 (단위: 원)

과 목			당초예산	경정 예산	최종예산	지출액												최종예산 대비잔액	지출율 (%)	
관	항	목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합계
미조직 기금	미조직 사업	미조직 사업	0	0	0	0	0	795,500	2,078,400	0	0	2,127,090	845,600	365,300	1,862,800	2,597,550	714,090	11,386,330	-11,386,330	0%
합 계			0	0	0	0	0	795,500	2,078,400	0	0	2,127,090	845,600	365,300	1,862,800	2,597,550	714,090	11,386,330	-11,386,330	0%

9. 공동회계 지출 현황

기간: 2020년 1월 1일~ 12월 31일 (단위: 원)

과 목			당초예산	경정 전용	최종예산	지출액												최종예산 대비잔액	지출 률 (%)	
관	항	목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합계
공동 사업비	공동 사업비	공동 사업비	427,508,115	0	427,508,115	0	0	0	0	0	25,281,010	3,980,920	0	11,377,520	1,150,000	23,900,000	53,210,600	118,900,050	308,608,065	28%
합 계			427,508,115	0	427,508,115	0	0	0	0	0	25,281,010	3,980,920	0	11,377,520	1,150,000	23,900,000	53,210,600	118,900,050	308,608,065	28%

10. 총 수입 및 총 지출 현황

기간: 2020년 1월 1일~ 12월 31일 (단위: 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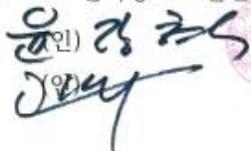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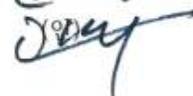
항 목		총 수입액	총 지출액	잔액	지출율(%)	비 고
일반회계		235,752,461	130,393,679	105,358,782	63%	
특별회계 1	투쟁기금	93,046,764	64,339,856	28,706,908	69%	
특별회계 2	미조직기금	18,973,928	11,386,330	7,587,598	60%	
공동회계		421,021,268	118,900,050	302,121,218	28%	
합 계		768,794,421	325,019,915	443,774,506	42%	

11. 총수입, 총지출, 시재 현황

기간: 2020년 1월1일 ~ 12월 31일 (단위: 원)

	구분	총수입	총지출	총잔액	통장번호	통장잔액	통장용도	비 고
일반 회계	일반회계	235,752,461	130,393,679	105,358,782	1002-460-826414	105,358,782	일반회계	교부금 수입 및 일반회계 지출
					현금보유			
	소계	235,752,461	130,393,679	105,358,782	소계	105,358,782		
특별 회계 I	투쟁기금	93,046,764	64,339,856	28,706,908	1002-860-801258	28,706,908	투쟁기금	일반회계, 투쟁기금 이월금 및 지출
					현금보유			
	소계	93,046,764	64,339,856	28,706,908	소계	28,706,908		
특별 회계 II	미조직기금	18,973,928	11,386,330	7,587,598	1002-260-843187	7,587,598	미조직사업	미조직사업 본조지원금 및 지출
					현금보유			
	소계	18,973,928	11,386,330	7,587,598	소계	7,587,598		
공동 회계	공동사업비	421,021,268	118,900,050	302,121,218	1002-760-818272	302,121,218	공동사업비	지역공동사업비 교부금 및 지출
					현금보유			
	소계	421,021,268	118,900,050	302,121,218	소계	302,121,218		
합 계		768,794,421	325,019,915	443,774,506	합 계	443,774,506		

울산지부 11기 1년차 4/4분기 지역공동위 감사결과 보고서

1. 감사일자 : 2021년 1월 13일(수) 2. 감사장소 : 울산지부 회의실
3. 수검자 : 지부장 윤 장 혁 (인) 
 사무국장 고 은 아 (인) 

2021년 1월 13일

울산지부 감사위원

이 상 순

조합 감사위원

최 순 영

김 주 환

김 규 진

현대자동차지부 감사위원

이 상 규

김 홍 규

김 진 목

문 윤 환

이 주 우

전 성 중

현대중공업지부 감사위원

우 석 현

오 명 성

■ 11기 1년차 1/4분기 지역공동위 업무부문 감사결과 ■

부서		지적사항	집행부 답변
1	사무국	- 지역공동위 사업계획이 수립되지 않았습니다. - 조속히 운영위를 개최해서 지역공동위 목적과 취지에 맞게 사업과 예산이 확정될 수 있도록 업무 추진 바랍니다.	- 예 조속히 진행하겠습니다.
2		-	

■ 11기 1년차 1/4분기 지역공동위 재정부문 감사결과 ■

순	전표NO	지적사항	집행부 답변	조치요구		
				환입	시정	주의
1		- 각종 전표에 전표번호를 구체적으로 기재될 수 있도록 시정바랍니다.	- 시정하겠습니다.		●	
2		-	-			

■ 11기 1년차 2/4분기 지역공동위 업무부문 감사결과 ■

부서		지적사항	집행부 답변
1	사무국	탈핵반대 관련 회의록이 누락되었습니다. 이후 정기 감사 시 예산 집행의 근거가 되는 회의록(서명지 포함)은 반드시 작성해서 제출될 수 있도록 업무추진 바랍니다.	차기 감사 시 부터는 회의록이 제출될 수 있도록 업무추진 하겠습니다.
2		운영위 2차 회의까지 진행했지만 탈핵반대 관련 가 예산 사업만 집행 되었습니다. 조속히 운영위를 개최해서 사업계획을 확정할 수 있도록 분발하시기 바랍니다.	7월 17일 예정된 운영위에서 사업계획이 확정 지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11기 1년차 2/4분기 지역공동위 재정부문 감사결과 ■

순	전표NO	지적사항	집행부 답변	조치요구		
				환입	시정	주의
1	지역 05-09	핵폐기장 건설반대 현안 토론회 후 전표에 영수증과 서명지가 사진으로 첨부되었습니다. 이후에는 원본이 첨부될 수 있도록 시정 바랍니다.	시정하겠습니다.		●	

■ 11기 1년차 3/4분기 지역공동위 업무부문 감사결과 ■

부서		지적사항	집행부 답변
1	사무국		

■ 11기 1년차 3/4분기 지역공동위 재정부문 감사결과 ■

순	전표NO	지적사항	집행부 답변	조치요구		
				환입	시정	주의
1		-	-			

■ 11기 1년차 4/4분기 지역공동위 업무부문 감사결과 ■

부서		지적사항	집행부 답변
1	사무국	노동인권 영상 계약 관련 회계규정 제46조(계약 및 계약서 작성), 제47조(사전준비), 제48조(계약방법)를 준수해서 진행했습니다. 이후 계약서의 따라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후속조치에 만전을 기하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11기 2년차 사업계획 및 예산편성 안을 수립해야 합니다. 빠른 시일 내 운영위 회의를 소집해서 지역공동위의 목적과 취지에 맞게 사업이 집행될 수 있도록 업무추진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 11기 1년차 4/4분기 지역공동위 재정부문 감사결과 ■

순	전표NO	지적사항	집행부 답변	조치요구		
				환입	시정	주의
1	10-01 외	투쟁단결사업비 투쟁사업장 물류 관련 결산서 영수증에 지불 책임자가 기재될 수 있도록 시정 바랍니다.	-에 알겠습니다.		●	

1. 공동회계 수입 현황

기간: 2020년 1월 1일~ 12월 31일 (단위: 원)

과 목			당초 예산	경정 전용	최종 예산	수입액												최종예산 대비잔액	수입률 (%)	
관	항	목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합계
지역 공동 사업비	이월금	공동사업 이월금	289,522,779		289,522,779	289,522,779											289,522,779	0	100%	
	본 조 지급금	공동 사업비	137,985,336		137,985,336	11,901,140	0	21,359,318	10,755,071	0	21,688,111	10,931,247	0	21,675,956	10,882,377	10,866,248	11,118,622	131,178,090	6,807,246	95%
	기타 수입	기타수입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잡수입	이자수입	0	0	0	0	0	109,281	0	0	68,377	0	0	70,526	0	0	72,215	320,399	-320,399	0%
합계			427,508,115		427,508,115	301,423,919	0	21,468,599	10,755,071	0	21,756,488	10,931,247	0	21,746,482	10,882,377	10,866,248	11,190,837	421,021,268	6,486,847	98%

2. 공동회계 지출 현황

기간: 2020년 1월 1일~ 12월31일 (단위: 원)

과 목			당초예산	경정 전용	최종예산	지출액												최종예산 대비잔액	지출률 (%)	
관	항	목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합계
공동 사업비	공동 사업비	공동 사업비	427,508,115		427,508,115	0	0	0	0	12,541,010	12,740,000	3,980,920	0	11,377,520	1,150,000	23,900,000	53,210,600	118,900,050	308,608,065	28%
합 계			427,508,115	0	427,508,115	0	0	0	0	12,541,010	12,740,000	3,980,920	0	11,377,520	1,150,000	23,900,000	53,210,600	118,900,050	308,608,065	28%

3. 총 수입 및 총 지출 현황

기간: 2020년 1월 1일~ 12월 31일 (단위: 원)

항 목	총 수입액	총 지출액	잔액	지출 율(%)	비고
공동회계	421,021,268	118,900,050	302,121,218	28%	
합 계	421,021,268	118,900,050	302,121,218	28%	

4. 총수입, 총지출, 시재 현황

기간: 2020년 1월 1일~ 12월 31일 (단위: 원)

	구분	총수입	총지출	총잔액	통장번호	통장잔액	통장용도	비 고
공 동 회 계	공동사업비	421,021,268	118,900,050	302,121,218	1002-760-818272	302,121,218	공동 사업비	지역공동사업비 교부금 및 지출
					현금보유			
	소계	421,021,268	118,900,050	302,121,218	소계	302,121,218		
	합 계	421,021,268	118,900,050	302,121,218	합 계	302,121,218		

안건 2

**11기 2년차 사업계획 및
2021년 투쟁방침(안) 승인 건**

의결주문

제출된 ‘11기 2년차 사업계획 및 2021년 투쟁
방침(안)을 승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11기 2년차 울산지부 사업 계획 (안)

I. 주요 정세 및 과제

1. 국내외 경제 정세

- 지난해 겨울부터 코로나19가 전 세계적인 3차 대유행으로 번지며 세계 경제에도 먹구름을 드리우고 있는 상황. 백신 보급으로 방역이 완화될 경우 올해 하반기부터 일정 정도 경기가 회복될 것으로 보는 전망이 지배적. 하지만 백신 공급이 전 세계적으로 빠르고 충분하게 될 것인지 미지수이며 △백신의 효과도 충분히 검증되지 않았고 △코로나 변이 등의 변수도 있어 불확실성이 큼. 세계은행은 올해 전 세계 경제성장률을 4.0%로 전망했으나 코로나19 방역에 실패할 경우 1.6%가 될 것으로 진단. 국제통화기금에 따르면 2020년 코로나19 탓에 -9.6%로 급감한 전 세계 무역증가율이 올해엔 8.1%로 회복될 전망. 하지만 장기화되고 있는 미중 무역 분쟁이 큰 변수
- 전 세계적 경제 위기 속에서도 작년 한국경제는 -1.0% 내외로, 외한위기 이후 처음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하긴 했으나, 반도체, 전기전자, 자동차 등 제조업 수출 회복으로 그 피해가 둔화 되고 있음. 한국은행과 OECD가 발표한 2021년 한국의 경제성장률 전망치는 각각 3.0%, 2.8%. 2021년에 한국경제가 급격한 위기 상황으로 빠지기보다는 기존의 저성장 기조가 유지될 가능성이 클 것으로 전망. 한편 저금리와 각국 정부의 경기 부양을 위한 지원책은 주식과 부동산 가격이 폭등으로 이어져 거품 붕괴의 위험성을 키우고 있음. 한국도 지난해 부동산 5.36%, 주식시장 30.75% 폭등과 함께 가계부채와 기업부채가 각각 7.0%, 15.5% 증가.
- 요컨대 불확실성이 큰 가운데 올 하반기 경기 회복은 이뤄지겠지만, 이후 부채 위기에 따른 거품 붕괴에 직면해 더블딥(W자형 경제구조)의 위기 국면이 도래할 가능성이 높은 상황.

2. 산업 정세

- 디지털화·자동화·전동화 등 미래산업 변화는 이미 수 년 전부터 진행돼온 과정. 다만 코로나19와 기후 위기를 계기로 정부 정책과 맞물려 한층 더 가속도가 붙는 상황. 문재인 정부는 지난해 7월 코로나19 이후 세계 경제 선도를 위한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을, 12월에는 2050년 탄소 중립 달성을 목표로 한 ‘대한민국 2050 탄소 중립 전략’을 각각 발표. 이 계획과 전략 아래 제조업 전반에 걸친 산업 재편 정부 정책이 급속도로 추진되고 있음.
- 정부는 한국판 뉴딜 계획에서 2020년을 대전환 착수기, 2021~22년을 디딤돌 마련기, 2023~25년을 대전환 착근기로 삼아 새로운 성장경로를 안착시키기 위한 투자계획을 밝힘. 이에 발맞춰 자본 역시 각종 미래산업 관련 투자 확대와 산업 재편을 본격화. 특히 자동차업종의 경우 미래 차 시장 확대 정책과 맞물려 가치사슬(제품 또는 서비스를 생산하기 위해 원재료, 노동력, 자본 등의 자원을 결합하는 과정) 재편이 이미 본격화되고 있으며, 올해가 가치사슬 핵심 영역 구축을 일단락 짓는 단계
- 자동차 외 철강, 조선, 전기·전자업종도 속도와 파급력은 다를 수 있으나 미래 산업으로 변화 중이거나 변화를 도모하는 중. △주요 철강사들의 수소 관련 사업, 배터리 소재 사업 진출 및 투자 확대 △조선 산업에서 친환경 선박 기술 개발 및 해상 풍력 사업체제 구축 △전기·전자 업종의 자동차 전장 부품 및 배터리 사업 확대 등이 대표적.
- 한국 산업이 세계 경제를 선도하고 탄소배출을 줄이는 것에 반대할 이유는 없음. 문제는 산업재편 과정이 노동조합을 배제한 채 자본과 정부 주도 아래 재벌지원을 통한 성장경인정책으로 나아가면서 △재벌 지배체제를 강화하고 △일자리의 질과 노동자의 고용을 위협하며 △노동조합의 영향력을 축소 시키는 방향으로 추진되고 있다는 점. 대표적으로 미래차 중심의 산업전환을 추진하는 완성차 자본은 미래 차 가치사슬의 핵심 부분을 노조의 영향력이 미치지 않는 곳으로 외주화해 간접고용 비정규직의 질 나쁜 일자리 중심으로 육성하는 정책 기조를 분명히 하고 있음. 또한 원청 재벌사를 정점으로 하는 ‘인공지능·빅데이터·네트워크 기반

스마트팩토리' 확산을 통해 가치사슬 전반에 대한 재벌의 지배력 강화까지 도모하고 있는 상황. 지금까지 노조를 배제한 채 산업재편을 진행해왔듯이 2021년 노조의 집중적인 대응이 없으면 이후의 방향도 노조배제적인 산업재편으로 더욱 뚜렷하게 갈 것임.

3. 한반도 정세

- 지난 수년간 미국의 패권은 정치, 군사, 경제 모든 면에서 약화되고 있는 과정. 반면 중국은 미국의 패권을 위협할 국가로 성장. 최근의 미중 무역 분쟁도 이 같은 힘 관계 변화에서 비롯된 측면이 큼. 미중 간 군사력 경쟁도 격화되고 있는 가운데, 중국을 겨냥한 주한미군의 사드(THAAD) 배치가 민중들의 저항에도 불구하고 강행되고 있음.
- 북한은 최근 8차 당 대회를 통해 대북 적대정책 철회 없이는 대화와 협상에 연연하지 않고 자력갱생으로 제재를 돌파하며, 미국에 대해 선대선 강대 강 원칙으로 대응하겠다는 의지를 표명. 3월 예정된 한미합동군사훈련이 재개될 경우 경색된 남북관계는 한 층 더 얼어붙게 될 전망.
- 조 바이든 행정부의 대북 정책 방향은 아직 구체적으로 가시화되진 않았음. 만약 오바마 시절의 '전략적 인내' 방향으로 회귀한다면 북한의 추가적인 군사적 진전과 한반도 정세의 격화를 초래할 것. 이 경우 문재인 정부가 지금까지 보여 온 미국에 대한 종속적 태도가 변하지 않는 이상 남북관계 진전도 쉽지 않을 전망.

4. 정치 정세

- 문재인 정부는 대선 직후 국민들의 압도적인 지지와 지난해 총선에서 180석을 확보했음에도 불구하고 남북관계뿐 아니라 민생문제에 있어도 이렇다 할 성과를 내지 못함. 특히 △최저임금 1만원 약속 폐기, 노동법 개악 등 노동정책의 후퇴 △각종 재벌개혁 약속 폐기 및 후퇴 △친재벌 규제완화 및 정책 추진 등 촛불항쟁의

열망과 정반대 방향을 노골화하고 있음. 아울러 K방역이라고 자화자찬하던 코로나 19 방역 및 재난지원 정책에 대해서도 지난겨울 3차 대유행을 겪으며 비판이 커지는 상황. 한편 문재인 정권의 실정을 기회 삼아 수구보수세력도 재집권을 위한 전열을 가다듬고 있으며, 4월 7일 예정된 서울, 부산시장 보궐선거에 사활을 걸고 있음.

- 작년 말 ILO 핵심협약 비준을 둘러싼 노조법 개악 국면에 이어 올해 상반기 국회에서는 플랫폼 노동을 비롯한 불안정노동에 대한 제도화 등 비정규 관련 법 개정 논의가 이뤄질 전망. 올 하반기에는 내년 대통령선거와 지방선거를 앞두고 각 당의 한국 사회 재편 구상들이 제출되며 여야 대립도 한층 격화될 것. 또한 선거를 앞두고 정치권의 노동에 대한 포섭 노력이 구체화 될 가능성이 있음.

5. 노동 정세와 과제

- 금속노조는 올해 대부분 사업장이 임금교섭만 있고, 연말에는 12기 조합-지부-지회 동시 임원선거를 앞두고 있음. 올해도 여전히 대우버스, 한국계이츠, 한국산연 등 구조조정 사업장들의 투쟁이 이어지고 있으며 장기화되는 코로나19 경제위기와 산업전환 과정에서의 구조조정 위협은 더 확대될 것임. 이에 대한 투쟁전선을 조직적으로 공고히 구축하고 사전 대응체계를 만들어 내야할 과제가 있음.
- 최근 노조 내 주요 지부·지회들이 자본의 노동 배제적 산업전환 대응을 위해 소위 ‘미래협약’을 체결, 미래 먹거리 확보와 고용보장·재교육 등 보호 장치 마련에 나서고 있음. 하지만 △‘미래 협약’을 추진하는 단위가 아직 일부에 불과한데다 △협약 내용이 선언적인 수준에 그치는 경우가 많고 △무엇보다 사업장과 일부 지역지부 차원의 협약으로는 정부와 자본 주도로 본격화되고 있는 산업재편에 효과적 대응이 불가능하다는 것이 큰 문제.
- 따라서 산업재편 과정에서 정부·자본에 일방적으로 끌려 다니지 않으려면 사업장을 뛰어 넘어 산업·업종·지역 차원의 중층적 개입전략을 수립해야 함.
아울러 자동차업종을 중심으로 미래 산업 가치사슬 변화의 속도를 감안했을 때

올해 노조의 전 조직적인 힘을 집중하는 것이 매우 중요.

- 2022년 대통령 선거와 지방선거로 이어질 세력 재편기에 ‘산별노조 할 권리 법제·개정 투쟁 등’ 노동기본권 확대와 산업전환 개입을 위한 정책 및 제도개선을 관철시킬 수 있도록 민주노총과 함께 금속노조의 역할을 다해야 함. 한편 코로나19에 따른 경제 위기가 장기화되면서 취약계층부터 피해가 심각해지고 있으며, 문재인 정부의 코로나19 방역 및 재난지원 정책에 대한 국민들의 불만도 높아지고 있음. 이 불만을 민주노총과 함께 해고 금지, 사회안전망 확충 요구로 모아내야 함. 아울러 이 요구는 올해 사회적 투쟁뿐 아니라 산업전환 개입전략의 핵심 의제의 하나로 제기해야 함.
- 또한 기후 위기의 심각성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확대되고 있는 상황임. 기후 위기의 피해를 줄이고 복구하는 정도의 소극적 대처를 넘어 저탄소 경제와 탄소 중립적 녹색 사회로 가기 위한 ‘정의로운 전환’을 노동조합이 앞장서 추진해야 할 때임.

II. 사업방향과 목표

1. 재벌개혁 투쟁, 구조조정 분쇄 및 민주노조 사수
2. 미조직 조직화 사업 전면화
3. 교육체계 혁신 및 교육사업 전면화
4. 반미 반제 자주화 및 자주통일 투쟁
5. 2022년 대선투쟁 토대 마련 및 정치세력화
6. 안전하게 일할권리 제대로 치료받을 권리 쟁취투쟁
7. 금속노조 창립 20주년 기념사업

Ⅲ. 주요사업 계획

1. 재벌개혁 투쟁, 구조조정 분쇄 및 민주노조 사수

- 구조조정 분쇄 및 민주노조 사수 투쟁으로 고용안정
- 재벌개혁-노조 할 권리 쟁취투쟁
- 집단교섭 확대로 공동투쟁 강화로 구조조정 대응력 제고
- 산업재편에 대한 현대차 재벌에 대한 대응투쟁 전개

2. 미조직 조직화 사업 전면화

- 지부·지회 사업체계 구축으로 전 조직적 미조직사업 전면화
- 지부·지회가 함께하는 공단 조직화 사업 강화
- 신규노조 간부 및 조합원 교육 강화
- 청년노동자 조직화 사업체계 구축

3. 교육체계 혁신 및 교육사업 전면화

- 교육위원회 정비 및 강화
- 맞춤형 교육 시스템 도입
- 간부역량 강화 교육사업
- 신규조직 조합원 및 간부교육 사업

4. 반미반제 자주화 및 자주통일 투쟁

- 한반도 평화를 위한 남북합의서 이행 투쟁
- 한미군사훈련 저지 반전평화 투쟁
- 일상적 자주통일 투쟁: 지역 통일선봉대 활동
- 노동자 통일학교: 자주통일 및 반제 계급 교양 강화

5. 2022년 대선투쟁 토대 마련 및 정치세력화

- 기존 보수정당 심판투쟁으로 2022대선, 지방선거 토대 마련
- 일상적 정치활동 강화, 지역사회 개입 및 사회정치적 투쟁 강화
- 정치위원회 활동 강화 및 진보정당과 연대강화

6. 안전하게 일할 권리 제대로 치료받을 권리 쟁취 투쟁

- 산재처리지연 대책과 산재보험제도 개혁 투쟁 전개
- 중대재해 대응으로 근본적 재해예방을 위한 제도개선 투쟁
- 산재예방 활동 강화

7. 금속노조 창립 20주년 기념사업

- 금속노조 20년, 청년 금속노동자의 노래 대합창
- 금속노조 20주년 기념 대중사업 3지부 공동사업 추진

IV. 부서 및 위원회 사업계획

【 조직부 】

1. 사업목표 및 방향

1) 6천 조합원시대를 선도할 능수능란한 지도부 역량 강화

- 일심단결의 구심으로 지부 관장력 강화

2) 6천 조합원과의 원활한 소통 강화

- 노동조합 간부를 대상으로 한 간부혁신운동
- 면대면 1:1 방식의 조합원 소통

3) 일사불란한 지도체계 확립

- 지부 및 지회 회의체계의 혁신 : 회의 - 교육 - 실천
- 지부의 일상적인 지회간부 대상으로 한 간담회 및 교육 지도체계 강화

4) 조직력강화, 투쟁력강화

- 2021년 지부 슬로건, 주요 구호, 보급투쟁가 선정
- 2,000대오 전국노동자대회 참가 조직으로 지부 조직력, 투쟁력 총화

5) 지부 조직쟁의부 강화

- 전투적 선봉대로서의 조직쟁의부 성격 강화
- 지부 조직부 차장제 안착화

6) 집회문화혁신

- 코로나시대 새로운 집회 방식 실시
- 조합원 참여형 집회문화 개발

2. 주요사업계획

1) 6천 조합원시대를 선도할 능수능란한 지도부 역량 강화

- 지도역량 강화를 위한 임원, 집행부 트레이닝 캠프
- 지도역량 강화를 위한 프로그램 개발 : 소통하는 간부, 투쟁하는 간부, 학습하는 간부
- 지회별 상집회의, 확대간부회의 및 수련회의 간담회 정례화

2) 6천 조합원과의 원활한 소통 강화

- 중식선전전후 쌍방향 소통을 위한 조합원 간담회 정식화
: 지부 교육선전부와 연계하여 쌍방향 소통의 결과 전달의 장으로 활용

3) 일사불란한 지도체계 확립

- 통일적인 지침 및 교육 전달 체계 확립
: 지부운영위원 - 지회의 부서회의 및 확대간부회의 - 조합원
- 지부 운영위원회 지침 및 교육안 연구 : 슬로건, 선동, 정세, 지침

4) 조직력강화, 투쟁력강화

- 2021년 11월 전국노동자대회를 역대 최대의 조직화로 조직력을 총집결
: 목표 2,000 조합원 조직
- 2021년 지부 슬로건, 투쟁구호, 보급투쟁가 선정 보급
: 2021년 공식 슬로건 - 또다시 정면돌파!
: 2021년 보급 투쟁구호 - 거침없는 돌격으로 기필코 승리하자
(민주노조 사수하자)
: 2021년 보급 투쟁가 - 투쟁은 끝나지 않았다
- 간부혁신운동의 시범 실천활동 지정 후 시범실시
: 지부운영위원회 지침 해설 - 지회상집회의(확대간부회의) - 조합원 조직화
: 1/4분기내 서명운동(청원운동)등 시범 실천활동 선정 후 100% 조직화 목표달성

5) 지부 조직쟁의부 강화

- 조직부 차장 선정 및 조직부 차장회의 정례화
- 투쟁 속에서 실천하는 조직쟁의부 활동 정형 정착

- : 회의와 학습, 투쟁의 현장에서 실천하는 정기회의
- 정면돌파 선봉대 구성
 - : 지부 조직쟁의부를 중심으로 집회시마다 필요시 확대 조직 운영
- 조직쟁의부의 정면돌파 선봉대로서 전투적 기풍 확립
 - : 강한 규율 동지애로 결속된 선봉대
 - : 정면돌파 선봉대 상징화 단체 투쟁물품 보급
 - : 실천력 배가 트레이닝 - 기수 열병식, 강력한 선동, 칼 같은 몸짓
- 2021년 지부 슬로건, 투쟁구호, 보급투쟁가 USB 제작 보급

6) 집회문화 혁신

- 코로나시대의 새로운 집회방식 실시
- 조직력을 기반으로 지회별(구별) 분산집회 및 캠페인 방식 실시
- 시간차별 집회방식 제고
- 조합원 참여형의 집회 문화 프로그램 개발

금속노조 울산지부 2021년 문화사업계획(안)

1. 사업목표

- 자주의 시대, 직접정치운동의 시대에 발맞춰 현장주체문예운동의 실천적 활동을 준비할 토대구축
- 대중에 대한 정서적 감동, 감화력으로 문예를 통한 선전선동사업의 새로운 길을 개척
- 금속노조 창립 20주년, 청년 금속노조를 상징하는 '청년 금속노동자의 노래'를 통해 전국노동자대회 조직

2. 2021년 사업계획

1) 문예아카데미(문예학교)

- 금속노조 창립 20주년, 청년 금속노동자의 대합창에 필요한 매체별 특성화 교육
- 노동조합 문화 사업을 지원할 문예 역량 준비, 발굴 및 현장 주체 발굴 사업
- 매체별 강사단 확보 및 장기적인 매체별 인적 시스템 구축

2) 다양한 현장 문화사업

① 현장문화패 조직 지원 사업

- 다양한 매체를 통한 현장 문화패 활성화 사업 지원
- 다양한 기재를 활용한 문화 활동 조직 및 지원 사업

② 문예사업 지원 시스템(자원) 구축

- 다양한 분야의 문예활동이 가능할 수 있도록 지원 시스템 마련
- 몸짓, 연극, 음악, 미술, 기행, 기록(영상, 사진), SNS활용 등

③ 조합원 참여 문화 사업

- 울산 노동운동 역사 기행, 탐방
- 울산 금속노동자의 노래 대합창 : 전국노동자대회 참가 조직

3) 현장 투쟁(임금투쟁, 파업 등)을 노동자의 학교로

- 문예적 방식을 총동원하여 노동조합활동에서 집단주의 의식과 투쟁과 실천의 중심에 조합원들이 있게 함
- 노동계급성을 강화하고 투쟁과 노동, 생활의 공동체 생활에 이바지함

4) 금속노조 20년, 청년 금속노동자의 노래 대합창

- 연간 사업으로 진행하여 전국노동자대회 조직사업으로 총화
- 조합원들과의 새로운 소통방식 / 집단의 힘으로 금속노조 20살, 청년의 기상을 표현함

【 교육선전부 】

1. 사업목표

- 조합원 및 임원·간부 교육프로그램을 통한 역량강화
- 교육선전부 역량강화
- 교육위원회 재가동
- 다양한 선전사업 진행으로 조합원과의 소통강화

2. 주요사업계획

1) 조합원 및 임원·간부 교육프로그램을 통한 역량강화

- 조합원 및 임원·간부 교육을 통일적 기조로 진행
- 교육과 선전내용을 하나의 기조로 진행
- 지부운영위원회 월별교육 진행
- 간부역량강화 프로그램 진행
- 신규지회 간부 및 조합원의 기본교육과정 프로그램 개발

2) 교육선전부 안정화와 전문성 강화

- 교육선전 학교 등, 부서 역량강화 프로그램 진행

3) 교육위원회 재가동

- 교육위원회를 재가동하여 신규교육 프로그램 및 교육역량 강화

4) 다양한 선전사업 진행으로 조합원과의 소통강화

- 카드뉴스 등 웹자보 발행
- 유인물, 대자보 정기적 발행
- 페이스북 페이지 및 유튜브를 활용한 조합원 소통강화
- 확대간부 텔레그램 채널 개설로 소통강화
- 격월 1회, 4페이지 울산지부 신문 발행

【 미조직비정규직조직위원회 】

1. 사업방향과 목표

- 1) 각 지회 미조직비정규직조직사업위원회(이하 미비위) 주체조직 및 미조직활동가로 역량 강화
- 2) 미조직사업에 대한 인식재고 => 조직확대를 넘어 금속노조의 계급대표성 확보 및 금속산업 대표성을 확보하는 사업으로 인식 통일
- 3) 공단지역 데이터 분석을 통한 전략적 공단 조직화 사업 준비
- 4) 노조가입 선전 강화, 일상적인 노조설립 상담, 신규노조 안정화 지원 및 노동조합 운영 메뉴얼 마련
- 5) 2030 청년노동자 조직, 교육 사업

2. 주요사업계획

1) 미비위원회 회의 안정화 및 역량강화

- 월례 회의 사수
- 전체 지(분)회 미비위원회 담당 간부 조직
- 미비위원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수련회
 - 노동법률 교육
 - 상담, 조직사례 교육 등
- 미비회의 진행 시 사전 역량강화 교육 배치
- 실천투쟁 중심 미비위 운영

2) 미비위사업의 전조직적 조직사업화 태세 준비

- 지부운영위원회, 각 지회 확대간부회의 시 미조직사업에 대한 인식재고 교육
- 각 지회 사업계획에 미조직 사업계획 수립 지원

3) 공단조직화 사업

- 공단지역 금속사업장 현황 조사 및 전략 공단 선정

- 연구, 용역 사업으로 공단지역 데이터 확보

○ 공단 선전전

- 정기적 ‘주간실천 공단조직화 선전전’ ‘법률·산재 상담 등 노조 상담부스 운영’
- 일상적 금속노조가입 선전사업 확대, 강화 : 분기별 공단 거점 선전물 게시
- 공단기획조직사업 : ‘공단노동자 호프데이’ / 미비위원 초등주체 조직

4) 노조상담 및 신규노조 안정화 지원

○ ‘원샷 노조설립상담에서 노동조합 운영까지’

- 신규노조 안정화를 위한 노동조합 운영 매뉴얼 준비 및 교육
- 신규노조 간부 역량강화를 위한 학습, 교육-수련회
- 신규노조 조합원 지부의무교육 매뉴얼 준비 및 교육

5) 2030 청년노동자 조직, 교육 사업

○ 신규노조 2030 청년노동자 간부양성학교(수련회):

- 청년노동자 여름캠프(레프팅, 역사기행 등)

○ 지역 거점 ‘노조 할 권리’ 선전전: 롯데백화점, 성남동 소방서 사거리 등

3. 월별사업계획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비고
미비위 회의		<input type="checkbox"/>												
공단선전전(월 실천투쟁)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공단 현황 연구용역		<input type="checkbox"/>												
교육 및 조직 사업	미비위원 역량강화교육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공단기획선전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미조직사업교육			<input type="checkbox"/>										
	노조상담 및 신규노조 안정화	<input type="checkbox"/>												
청년 노동자								<input type="checkbox"/>						

【 정치위원회 】

1. 사업방향 및 목표

- (1) 2021년 남구청장 재선거 승리를 통한 2022년 지방선거 승리의 발판 마련
- (2) 현장정치활동의 주체를 마련하여 노동자 직접정치의 토대 마련
- (3) 지부 정치위원회 활성화로 일상적인 현장 정치활동을 통한 노동정치 기반 확대
- (4) 조합원 정치의식을 높이기 위한 현장 정치교육 강화
- (5) 2022년 대통령선거와 지방선거 대응 토대 마련

2. 주요사업 계획

(1) 2021년 남구청장 재선거 승리를 통한 2022년 지방선거 승리의 발판 마련

- 남구청장 재선거 승리를 위한 시민공동행동 사업에 적극 동참
- 시민공동행동 후보 및 진보정당 지지후보에 대한 조합원 정치 후원금 운동 추진
- 노동정치 복원을 위한 남구청장 재선거를 통한 현장 직접정치활동 토대 마련

(2) 현장정치활동의 주체를 마련하여 노동자 직접정치의 토대 마련

- 현장 정치활동 주체 형성을 위한 정치간부 학교 진행
- 현장 정치활동 사례를 통해 본 노동자 직접 정치
- 월 1회 지역과 현장에서 일상적이고 정기적인 정치 실천활동

(3) 지부 정치위원회 활성화로 일상적인 현장 정치활동을 통한 노동정치 기반 확대

- 지부 정치위원회 정례화
- 현장 직접정치 역량 강화를 위한 토론회 및 담당자 수련회 개최
- 현장 직접정치 모법단위 선정 및 지원
- 현장정치활동을 위한 울산지부 정치위원회 정치아카데미 진행
- 일상적인 현장정치활동이 가능한 지회별 현장 직접정치 활동 정형 개발 보급

(4) 조합원 정치의식을 높이기 위한 현장 정치교육 강화

- 현장에서 교육시간 확보하여 정치교육 강화
- 진보정당과의 협력을 통한 현장직접정치활동을 지원
- 현장직접정치 모델 마련
- 현장 정치활동 주체를 발굴, 육성을 위한 진보정당과의 협력
- 울산지부 조합원 정치학교
- 조합원들과 일상적 정치활동 소통을 위한 SNS온라인 활동

(5) 2022년 대통령선거와 지방선거 대응 토대 마련

- 4.7 남구청장 재선거를 통한 현장 정치활동 기반 축성
- 현장과 지역 거점 정치활동
- 진보정당 후보 및 진보정당 지지후보 2022년 정치후원금 모집 사업
- 일상적 지지자, 연고자 조사

【 통일위원회 】

1. 사업 방향 및 목표

- 1) 위원회의 회의 안정화 및 주체역량 강화
- 2) 자주통일대회 및 시기별 주요사업에 대한 집중
- 3) 남북관계 개선을 위한 투쟁 진행
- 4) 반미반일 투쟁을 통한 자주통일 실천력 강화
- 5) 상급단체 수임 사업 및 지역 통일단체 협력사업 진행

2. 주요사업 계획

1) 위원회의 회의 안정화 및 주체역량 강화사업

- 통일위원회 회의 정례화 및 안정화, 각 지회 위원회 담당자 선임 사업
- 위원회 주체역량 강화를 위한 정기적 통일위원회 교육사업 진행

2) 자주통일대회 및 시기별 주요사업에 대한 집중 투쟁

- 시기별 노동자 자주통일대회 참가 조직
- 시기별, 계기별 주요사업에 대한 집중을 통한 현장 내 통일사업 진행
- 재일동포(조선학교)와의 교류사업 및 지원 사업을 통한 민족자주교류사업 진행

3) 남북관계 개선을 위한 투쟁 전개

- 6.15선언, 10.4선언, 4.27선언 등 남북공동선언 이행 촉구를 위한 실천투쟁 진행
- 남북공동선언 의미와 노동자와 통일에 대한 교육 및 선전사업 진행
- 반통일 제도 국가보안법 철폐, 대북제재 철폐 투쟁 진행

4) 반미반일 투쟁을 통한 자주통일 실천력 강화

- 중앙·지역 통일선봉대, 지부통일선봉대 조직과 일상적인 실천투쟁사업 연구 및 집행
- 사드철거 및 세균실험부대 등 주한미군 철거 투쟁, 한미 합동군사훈련 중단 및 전작권 회수 투쟁을 중심으로 하는 불평등한 한미동맹 해체 투쟁 등 반미민족자주

성 회복 투쟁 진행

- 친일 적폐청산, 일제강제징용에 대한 사죄배상운동 등, 반일 투쟁 진행

5) 상급단체 통일위원회 수임 사업 및 통일단체 협력사업 전개

- 민주노총 및 금속노조 통일위원회 수임 사업 집행
- 통일 유관단체와의 협력 및 연대 사업 진행

【 노동안전보건위원회 】

1. 사업 목표

- (1) 조합원의 치료받을 권리 쟁취를 위한 산재보험제도 개선
- (2) 전 조직적 중대재해 대응활동 및 근본적인 재해예방체계 구축을 위한 제도개선 투쟁
- (3) 지회 노동안전보건활동 참여확대 및 노동안전 현장활동 강화
- (4) 사업장 일상적인 안전보건 점검 및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사항 척결
- (5) 노동안전보건활동가 역량강화 및 지회 노동안전보건활동 집행력 강화
- (6) 전 사회적 노동안전보건 제도개선과 노동자 건강권 쟁취를 위한 투쟁 전개

2. 사업내용

- (1) 조합원의 치료받을 권리 쟁취를 위한 산재보험제도 개선
 - 1) 산재처리지연 대책 마련 및 산재보험제도 개혁 투쟁
 - 2) 산재불승인 및 부당한 강제치료종결 등 치료받을 권리 침해 대응
 - 3) 조합원 직업병(관련성질병) 증빙자료 등 관련 서류 지부검토 후 산재신청
 - 4) 퇴직자 근골격계 집단투쟁 조직화 및 요양 투쟁
- (2) 전 조직적 중대재해 대응활동 및 근본적인 재해예방체계 구축을 위한 제도개선 투쟁
 - 1) 사업장 중대재해 발생시 전 조직적 대응과 근본적 예방대책 마련
 - 2) 중대재해 대응 제도개선과 노동자 건강권 쟁취를 위한 대정부 투쟁 전개
 - 3) 산업안전보건법 전면 개정 투쟁
- (3) 지회 노동안전보건활동 참여확대 및 현장활동 강화
 - 1) 2021 위험성평가 노조의 주도적 참여권 확보 및 작업환경 개선 투쟁으로 조직력 강화
 - 2) 지회 노동안전보건활동체계 구성 및 주요 현안활동 지원
 - 3) 노동안전보건교육 지회주관 교육시간 확보 및 문제점 개선

(4) 지부 산하 사업장 일상적인 안전보건 점검 및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사항 척결

- 1) 일상적인 안전보건점검으로 안전하게 일할 작업환경개선 전개
- 2)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법적 대응 및 조합원과 함께하는 대응활동 활성화
- 3) 신규지회 안전보건 점검 및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법적대응 등 활동지원
- 4) 금속가공유 가이드라인 협약 후속사업 및 유해화학물질 취급사업장 노동자 보호대책 추진

(5) 노동안전보건활동가 역량강화 및 지회 노동안전보건활동 집행력 강화

- 1) 지회별 노동안전보건사업 담당자 선임 독려 및 실천활동 지원
- 2) 지부 노동안전보건위원회 및 노안담당자회의 (매월)
- 3) 지회 노동안전보건교육 지원
- 4) 노동안전보건활동 관련 자료 데이터 구축
- 5) 지부 노동안전보건담당자 역량강화교육 진행

(6) 전 사회적 노동안전보건 제도개선과 노동자 건강권 쟁취를 위한 투쟁 전개

- 1) 주요 재해, 직업병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제도 정책 개선
- 2) 발암물질 없는 사회만들기 국민행동 참여로 전 사회적 유해물질 저감 투쟁 활성화
- 3) 직업병 대책활동의 사회적 확산을 위한 공동투쟁 연대 및 대책 모색

[여성위원회]

1. 사업방향 및 목표

- 1) 여성위원회 및 간부 역량 강화 사업
- 2) 성폭력 예방 및 사건대응 활동
- 3) 민주노총, 금속노조 수임사업
- 4) 지역여성단체 연대 및 공동투쟁

2. 주요사업 계획

1) 여성위원회 강화, 여성간부 역량강화

- 지회 여성조합원 간담회 등 진행
- 여성위원회 위원 및 여성간부 역량강화 사업

2) 사회불평등 철폐 투쟁 및 조직내 성평등 정착화 사업

- 사회불평등 철폐 투쟁 연대
- 성평등 교육 및 성폭력 예방교육/ 매뉴얼 제작에 따른 노조 내 교육 실시

3) 민주노총, 금속노조 수임사업

- 3.8 세계여성의날 기념사업
- 제도 개선 투쟁 전개

4) 여성단체와의 연대, 공동행동 추진

【 총무부 】

1. 방향과 목표

- 1) 지회 회계 담당자 역량 강화 교육
- 2) 지부. 지회 각종 사안에 대한 법률역량강화 및 대응체계 지원 사업
- 3) 지부감사위원회 사업지원

2. 세부사업 계획

- 1) 지회 회계 담당자 역량 강화 교육
- 2) 지부. 지회 각종 사안에 대한 법률역량강화 및 대응체계 지원 사업
- 3) 지부감사위원회 사업지원

V. 2021년 임단협 투쟁 방침

1. 단체교섭 투쟁 기초

첫째, 구조조정 분쇄, 임금동결 복지축소와 임금체계 개악을 저지하고 생활임금 쟁취 투쟁으로 울산지부 조직력을 강화한다.

둘째, 중앙교섭 집단교섭 미 참여 사업장에 대한 적극 대응으로 중앙교섭, 집단교섭 참가와 공동투쟁의 토대를 마련한다.

셋째, 현대자동차 재벌을 압박하는 공동투쟁으로 가이드라인을 분쇄한다.

2. 2021년 요구방침 및 요구안

1) 금속노조 요구방침

- (1) 통일요구는 중앙교섭, 지부집단교섭, 사업장교섭 등 모든 교섭단위 요구안에 포함한다.
- (2) 중앙교섭 요구 중 ‘기후위기 대응 금속산업 노사공동선언’ 요구는 중앙교섭에서 다루며, ‘금속산업 최저임금’ 요구는 중앙교섭 불참 사업장에서도 반드시 요구한다.
- (3) 교섭단위별 요구안은 조합 승인 절차를 거쳐 노조 지침에 따라 전조직적으로 일괄 발송한다.
 - ✓ 중앙교섭 요구는 조합 대의원대회, 지부 요구는 조합 중앙집행위원회에서 승인. 사업장 요구는 지부에서 심의해 조합에 보고.
 - ✓ 요구 지침에 따라 중앙교섭·지부교섭·사업장보충교섭 요구를 하나의 묶음으로 일괄 발송함. 사업장보충교섭 요구안 확정이 늦어지는 경우 이후 추가 발송.
 - ✓ 조기교섭 돌입에 따라 사업장 요구안을 선 발송한 단위는 조합 요구안 확정 즉시 추가 발송.

- (4) 단협 교섭이 있는 사업장은 사업장 공동요구 중 필수요구를 반드시 포함한다.
- (5) 임금인상 요구 시 조합이 정한 요구액을 하향할 수 없다.

2) 금속노조 요구안

(1) 통일요구

산업전환협약

- ①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금속노동조합(이하 조합)과 회사는 디지털화·자동화·전동화 및 기후위기에 따른 산업전환 시기 회사의 지속 가능한 미래 발전과 노동자 고용안정, 양질의 일자리 확보를 위해 투명한 경영전략을 기반으로 책임성 있는 노사 공동결정을 통해 산업전환 대응 계획을 함께 설계한다.
- ② 산업전환 시기 조합과 회사가 공동결정할 미래 계획의 의제와 방향은 아래와 같다.
 - 1. 고용안정 및 양질의 일자리 확보 : 산업전환과 산업융합·복합에 따른 사업 재편 및 투자가 고용불안을 야기하거나 저임금의 불안정한 일자리를 늘리는 방향이 되지 않도록 한다.
 - 2. 교육·훈련 : 신기술 도입에 따른 직무변화에 노동자가 적응할 수 있도록 교육·훈련 시스템을 구축함으로써 고용안정과 경쟁력을 확보한다.
 - 3. 노동안전 및 인권보호 : 신기술 적용으로 인한 노동 시간·강도·방식 및 성과 측정 방식의 변화가 노동자의 안전을 위협하거나 인권을 침해하지 않도록 하며, 이를 위한 위험성 평가를 공동으로 진행한다.
 - 4. 기후위기 대응 : 기후위기 대응에 노사가 함께 노력하며, 탄소배출 저감을 위한 대책을 공동으로 마련한다.
 - 5. 공정거래 : 산업전환에 따른 가치사슬 재편 과정에서 원하청이 동반 성장할 수 있는 상생구조를 마련한다.

- ③ 조합과 회사는 구체적인 산업전환 대응 계획을 공동으로 결정·집행·점검할 체계와 운영방안을 2021년말까지 결정해 2022년 상반기부터 가동한다.
- ④ 조합과 (사용자협의회 및) 회사는 산업전환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사업장 노사를 넘어 정부가 함께하는 산업·업종·지역별 협의체 구성에 적극 나서며, 산업전환에 따른 위기로부터 기업과 노동자를 지원·보호할 대책 마련을 정부에 요구한다.

- 산업전환협약은 산업전환 시기 미래 계획을 노사가 공동으로 결정하는 원칙을 분명히 함으로써, 산업전환이 노동을 배제한 채 자본이 일방적으로 추진하지 못하도록 하자는 게 핵심 취지. 따라서 기존에 소위 ‘미래협약’을 맺은 단위들도 미래 계획의 ‘공동결정’ 원칙을 분명히 하고 있는 산업전환협약을 반드시 요구.
- 산업전환 시기 노사가 공동결정할 미래 계획의 의제와 방향은 사업장 조건에 따라 보다 구체화하거나 내용을 추가할 수 있음.
- 미래 계획을 공동으로 결정·집행·점검할 체계는 기존 사업장 단협에 명시된 각종 노사공동위원회를 활용하거나 없는 경우 새로 구성할 수 있음. 이는 사업장 조건에 맞게 판단하되 다만 체계 결정시기를 2021년 말까지로 못 박아 내년부터 실제 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확보해야 함.
- 아울러 사업장 단위에서의 공동결정만으로는 산업전환 대응의 한계가 분명한 바, 사업장을 뛰어넘는 산업·업종·지역별 협의체 구성에 적극 나서도록 강제하는 내용을 포함함. 특히 중앙교섭 요구에는 ‘회사’를 넘어 ‘사용자협의회’ 차원에서 협의체 구성에 나설 것을 강제하기 위해 ④항 주체에 “사용자협의회” 문구를 추가. 지역지부 집단교섭에서는 “OO지역 관계사용자협의회” 문구를 추가할 수 있을 것.

(2) 중앙교섭 요구

① 기후위기 대응 금속산업 노사공동선언

기후위기대응 금속산업 노·사 공동선언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금속노동조합과 금속산업사용자협의회는 기후위기 문제가 돌이킬 수 없는 재앙을 가져온다는 심각성에 공감하며 인류의 생존과 생명 안전을 우선으로 책임 있게 대응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선언한다.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배출 저감 정책은 국제적, 국가적 차원뿐 아니라 노사 모두가 힘을 모으는 가운데 신속하고 일관되게 추진할 과제임을 분명히 인식한다.

회사는 자체 운영·공정뿐 아니라 회사를 넘어서는 전·후방 공정 전반에 걸쳐 탄소배출을 줄이기 위한 사업환경 구축 및 재원 마련에 나서며, 노사는 이를 공동으로 논의·집행·점검한다.

회사는 사업 확장 및 전환 등을 위한 투자가 기후위기를 심화시키는 방향이 되지 않도록 하며, 이를 위해 노조와 함께 탄소배출 증감효과를 사전 검토한다.

노사는 탄소배출 저감을 위한 사업환경 구축 시 △사내하청·비정규직을 포함한 전체 노동자의 고용보장 △공정·기술 개편 대응 교육훈련과정 마련 △안전하고 쾌적한 노동 환경 구축 △기후변화에 따른 고위험 작업군 우선 보호 등의 대응책을 함께 수립한다.

노사는 탄소중립환경 구축을 위한 산업재편이 일방적 희생으로 이루어져서는 안 된다는 원칙에 공감하며 정부와 지자체에 기후위기 취약계층 보호방안, 산업전환 과정에서 쇠락하는 지역·업종의 노동자·사업주 지원 및 보상책 수립을 함께 요구한다.

- 산업혁명 이후 지구의 평균온도가 1°C 올라간 현재 세계는 극단적인 가뭄과 홍수, 모래 폭풍, 등 초유의 이변을 겪고 있음. 가을태풍, 폭염으로 인한 취약계층 사망, 10배 증가한 산불 발생 피해 등 기후 위기 위험은 한국도 예외가 아님.

- 지난 2015년 채택된 「파리 기후변화협약」은 기후변화 대응 목표를 2100년까지 산업혁명

이전 대비 2°C 상승 제한을 전제로 채택된 것. 그러나 2018년 제48차 정부간 기후변화 협의회(IPCC) 총회에서 채택된 「지구온난화 1.5°C에 대한 특별보고서」는 과거 기후변화 전망의 오류(임계치 접근 시 기온 상승은 돌이킬 수 없고 각종 연쇄효과와 맞물리는 파국적 결과를 예측하지 못함)를 지적하며 2°C 목표치를 1.5°C로 수정하고 2050년까지 전 지구적으로 온실가스 순배출량을 0으로 만들어야 한다고 권고.

- 이에 따라 각국 정부들은 환경 규제를 강화하고 있으며 유럽연합은 탄소국경세 도입을 추진하는 등 국가 간 무역 과정에서 탄소배출 저감을 강제하는 장치도 예고하고 있음. 문재인 정부도 이에 대응하기 위해 지난해 말 「2050 탄소중립 추진전략」 발표를 시작으로 후속조치들을 쏟아내는 중. 이 정책의 핵심 기조는 각국의 환경 규제에 대응하고 신성장 산업동력 확보를 위해 경제구조를 개편한다는 것임. 그러나 정부 정책 속에서 사라질 산업과 업종에 대한 대응책은 부족함. 일례로 내연기관차 등 축소되는 산업의 보호방안에 대해 M&A 등을 통한 사업전환 적극 지원을 명시하되 축소되는 영역에서는 '지원계획 수립' 수준에 머물고 있는 상황.
- 금속노조는 “우리는 환경이 소수의 전유물이 아닌 전 계급계층이 향유하고 보호해야 할 가치를 지닌 것으로 인정하며, 자본에 의한 환경파괴를 방지하고 더 나아가 환경 친화적 사회발전을 위해 투쟁한다.”고 강령에 명시함. 이는 노동자들이 기후위기의 희생양이 되지 않아야 한다는 권리와 함께 기후위기 문제를 해결하는 주체로서 의무도 가진다는 것. 그간 노동조합은 기후위기 문제를 주요한 의제로 다루지 못했음. 이는 기후위기 대응이 근본적으로 우리의 생산품·생산방식·에너지사용 절감과 노동시간, 임금과 고용의 문제까지 영향을 미치기 때문. 하지만 최근 전세계적 환경규제 강화와 정부 정책변화를 감안했을 때 노조가 기후위기 대응 책임을 방기한다면 재벌과 정부 주도 정책 추진과정에서 일방적으로 희생당할 수 밖에 없음.
- 이에 노조는 ①기후위기 대응에 노조도 책임있게 나서겠다는 것을 사회적으로 천명함과 동시에 ②회사의 탄소배출 저감 노력을 강제하되 ③이 과정이 노동자의 희생을 담보로 진행되지 않도록 하고 ④사회 전반적으로도 정의로운 전환이 되도록 정부가 책임을 다해야 한다는 것을 핵심 내용으로 담아 중앙교섭에서 노사공동선언을 쟁취하고자 함.

② 금속산업 최저임금 요구

현행	개정안
<p>【금속산업 최저임금】</p> <p>① 회사는 금속산업 최저임금을 <u>통상시급 8,800원과 월 통상임금 1,988,800원</u> 중 높은 금액으로 적용한다.</p> <p>② 회사는 제1항의 최저임금 적용 시 기존 노동조건이 저하되지 않도록 한다.</p> <p>③ 적용대상은 금속산업에 종사하는 노동자로 금속사업장에 고용된 비정규직·이주노동자를 포함하며, 사내하청 노동자의 경우도 <u>적용될 수 있도록 권고</u> 한다.</p> <p>④ 적용기간은 <u>2021년 1월 1일부터 2021년 12월 31일까지</u> 한다.</p>	<p>【금속산업 최저임금】</p> <p>① 회사는 금속산업 최저임금을 <u>통상시급 10,000원과 월 통상임금 2,260,000원</u> 중 높은 금액으로 적용한다.</p> <p>② 회사는 제1항의 최저임금 적용 시 기존 노동조건이 저하되지 않도록 한다.</p> <p>③ 적용대상은 금속산업에 종사하는 노동자로 금속 사업장에 고용된 비정규직·이주노동자를 포함하며, 사내하청 노동자 와 외주 협력사 노동자의 경우도 적용 한다.</p> <p>④ 적용기간은 <u>2022년 1월 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u> 한다.</p>

○ 목표와 방향

- 저임금 비정규직 금속노동자의 생활임금 보장 및 임금 격차 해소
- 미조직 금속산업 노동자 조직화 및 금속노조 영향력 확대
- 금속노조 산별임금체계 진전

○ 요구안 취지

- 금속산업 최저임금은 금속산업 노동자 임금 총액의 1/2~2/3 사이에서 결정하되, 금속노조 사업장 초입실태, 공단 미조직 노동자 요구 수렴 등의 과정을 거쳐 설정하는 것이 바람직. 하지만 현재 금속노조 사업장 초입 실태가 제대로 파악되지 않는 상황이며 공단 미조직 노동자 요구 수렴도 2014년 실시한 이후 진행되지 않고 있음. 고용노동부 통계에 따르면 2020년 1~9월 제조업 상용 노동자 임금 총액은 4,038,147원. 따라서 1/2 값인 2,019,073원과 2/3값인 2,692,098원 사이에서 요구안 마련될 필요가 있음.

	1/2	2/3
월통상급	2,019,073	2,692,098
통상시급	8,934	11,912
인상액(월)	30,273	703,298
인상액(시)	134	3,112
인상률(%)	1.5	35.4

- 금속노조 사업장의 임금인상 대비 금속산업 최저임금 인상 폭이 커지면서 금속산업 최저임금이 금속노조 소속 사업장의 초임 및 저근속 조합원의 임금과 연동되는 상황이 늘고 있음. 즉, 금속산업 최저임금의 위상이 미조직·비정규 노동자를 위한 최소한의 보호장치 뿐 아니라 금속노동자의 초임을 상향시켜 임금격차를 축소하는 역할자로 서서히 발전하고 있는 것. 이는 임금 격차 해소라는 목표에 있어 바람직한 현상. 아울러 금속산업 최저임금이 현재 금속노조 조합원의 임금 ‘바탕’이 되고 있다는 얘기이므로, 금속산업 최저임금 인상 요구액은 노조 임금인상 요구 수준(고정급 기준 150,000원 인상)보다 낮아서는 안 되고 반드시 그 이상으로 마련돼야 함.
- 2005년 월급 기준 금속산업 최저임금은 법정최저임금(시급 × 209시간으로 가정)의 118.3% 수준으로 출발했지만 이 격차가 최근까지 경향적으로 축소돼 2021년 기준으로는 109.1%로 줄어듦. 즉, 법정최저임금 인상 속도를 금속산업 최저임금이 따라가지 못한 것이며 연평균 0.55%p만큼 덜 인상된 것으로 확인. 축소된 격차를 회복시켜야 금속산업 최저임금의 위상을 높일 수 있음. 문재인정부 기간 법정최저임금 인상률은 연 평균 7.92%. 여기에 축소된 격차를 회복하기 위한 0.55%p를 더하면 8.47% 인상률이 계산됨. 즉 금속산업 최저임금 인상 요구는 8.47% 이상의 인상률이 되도록 하는 게 바람직.
- 금속노조는 2015년 중앙교섭 때부터 민주노총의 최저임금 1만원 운동에 발맞춰 금속산업 최저임금도 시급기준 1만원으로 인상하자고 요구를 해왔음. 최근 최저임금 산입범위 계약 등 객관적 조건의 변화로 민주노총이 더 이상 최저임금 1만원을 요구하지는 않지만, 대중적으로 시급 1만원 요구가 여전히 각인돼 있는 상황. 금속산업 최저‘시급’을 1만원으로 인상할 경우 인상률은 13.6%로 위에서 언급한 법정최저임금과의 격차 회복 조건(8.47% 이상)을 만족. 또한 기준시간(월급 ÷ 시급)을 현재 합의 수준인 226시간으로 가정했을 때, 월급은 2,260,000원으로 제조업 상용직 임금 총액의 1/2~2/3 사이가 돼야 한다는 조건과 노조 임금인상 요구 수준 이상이 돼야 한다는 조건(2,260,000 > 1,988,800 + 150,000)을 모두 충족.
- 한편 자본이 산업전환 추진 과정에서 보이고 있는 노조 배제 전략에 대응하기 위해 현재 사업장 내로 적용 범위가 한정돼 있는 금속산업 최저임금을 외주 협력사 노동자에게까지 확대하며 현행 ‘권고’ 수준으로 돼 있는 ‘적용한다’고 바꿔 강제력을 확보하고자 함.

(3) 지부집단교섭 요구

① 산업전환협약

② 기존 합의서 정비 및 전체 참가 사업장 적용요구

③ 금속산업 최저임금 요구 (중앙교섭 불참 사업장)

④ 임금인상 요구

생활임금 보장과 노동소득 분배구조 개선을 위해 월 기본급 99,000원을 정액으로 인상한다. (정기·호봉승급분 제외)

- 회사는 기본급 인상을 포함한 각종 임금항목 조정에 따른 조합원 월 평균 고정급 조정 효과를 합의서에 병기한다.
- 고정급은 연장노동시간이나 업무·경영 성과와 무관하게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모든 임금항목의 합을 의미한다.

○ 목표와 방향

- 생활임금 보장 및 임금 안정성의 강화
- 임금·소득 불평등 해소 및 임금 공정성 강화
- 노동소득 분배구조 개선
- 산별임금체계 진전

○ 요구안 취지

- 금속노조 2021년 임금인상 요구는 △2020년 실시한 금속노조 임금수준 실태조사 결과와 △전체 임금인상 결과를 기반으로 △임금인상 요구에 대한 대의원 설문조사 결과 및 △2021년 예상 경제성장률 및 물가상승률, 소득분배개선 목표치 등을 감안해 제시함.
- 2020년 실시한 금속노조 임금수준 실태조사(128개 사업장 120,906명) 결과 2019년 기준 사업장 평균 월 고정급(= 기본급 + 제수당 + 고정상여금)은 3,622,639원. 2020년 단체교섭 결과(164개 교섭단위 122,553명)에 따른 월 기본급 인상액은 사업장 평균 29,645원. 2019년 실시한 임금체계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기본급 인상은 고정급에 사업장 평균 1.51배 수준으로 반영.

이에 2020년 사업장 평균 고정급은 3,667,403원(= 3,622,639원 + 29,645원 × 1.51)으로 추산.

- 2020년 12월 8일 현재 한국은행과 OECD가 발표한 2021년 한국의 경제성장률 전망치는 각각 3.0%, 2.8%. 두 기관이 전망한 2021년 한국의 물가인상률은 1.0%, 0.6%. 두 기관 전망치의 평균값을 구하면 경제성장률은 2.9%, 물가인상률은 0.8%. 따라서 2.9 + 0.8 = 3.7% 보다 임금인상률이 커야 노동소득분배가 개선됨.
- 한편 2021년 요구안 마련을 위한 금속노조 대의원 설문조사에서 고정급 기준 임금인상 요구 수준을 묻는 질문에 가장 많은 대의원이 150,000원 인상을 요구해야한다고 답함. 이 인상 요구액은 월 평균 고정급 3,667,403원 대비 4.1% 수준으로 경제성장률과 물가인상률 전망치를 합한 3.7%보다 0.4%p 커 노동소득분배를 개선시켜야 한다는 조건에 부합. 이에 고정급 기준 150,000원 인상요구와 함께 이를 다시 기본급으로 환산한 99,000원(= 99,338원 = 150,000원 ÷ 1.51) 기본급 정액 인상을 요구를 제시함. (※ 이 4.1% 인상률은 금속노조 사업장 평균 임금 데이터를 기초로 하는 것이므로 만약 임금협상에서 임금인상액이 아닌 인상률을 따질 필요가 있는 사업장의 경우 사업장 임금체계와 수준에 따라 인상률을 달리 적용해야함. 예를 들어 상여금 자체가 없는 저임금 사업장에게는 고정급 기준 월 150,000원 인상 요구는 인상률로 6~7% 수준이 될 것)
- 고정급 인상효과를 합의서에 병기하도록 하는 이유는 기본급 기준 임금인상 정책의 한계를 극복해 중장기적으로 임금인상 요구와 합의의 기준을 아예 고정급으로 바꾸기 위함임. 기존의 기본급 기준 임금인상 요구 정책은 기본급을 기준으로 계산되는 상여금이나 정률수당의 유무 및 지급률 차이로 인해 임금격차 해소라는 목표에 부합하지 못했음. 이를 고정급 기준으로 바꿀 경우 예상되는 효과는 크게 세가지. 첫째, 기본급과 달리 고정급에는 상여금 지급률이나 각종 정률 수당 등의 차이로 발생하는 임금 수준 격차가 이미 반영돼 있기 때문에 이를 기준으로 정액 임금인상이 이뤄질 경우 사업장 간 임금격차 해소에 보다 직접적으로 기여할 수 있음. 둘째, 기본급에 비해 임금인상 효과에 대한 이해가 쉬어 임금수준 비교가 보다 용이해지는 효과를 얻을 수 있으며, 이는 임금격차 해소를 위한 현장의 근거와 동력을 제공해 줄 것임. 셋째, 고정급을 중심으로 임금격차가 축소될 경우 이 통일성을 바탕으로 산별임금교섭과 산별임금체계를 진전시킬 수 있는 여지가 커짐. 참고로 지난해 말 온라인으로 실시한 <2021년 요구안 마련을 위한 금속노조 대의원 설문조사>에서 임금인상 요구 기준항목 변경에 대한 의견을 묻는 질문에 기본급 기준을 유지해야 한다는 의견은 34.6%, 고정급 기준으로 바뀌어야 한다는 의견이 50.9%로 나타나 대의원 다수도 지금까지의 기본급 기준 임금인상 요구 방식의 한계를 인식하고

있음이 확인됨. 다만 기본급을 출발로 다른 임금항목이 계산되고 있는 대다수 사업장의 임금체계를 고려할 때 당장 기준을 변경하면 현장의 혼란이 우려되는 상황. 이에 당장은 기존 방식을 유지하되, 고정급 인상 효과를 병기하는 것부터 출발하고자 함. 합의 방식 예시는 아래와 같음.

임금인상 합의 방식 예시 :

- ① 월 기본급 기준 70,000원 인상.
 - ② **수당 20,000원 인상.
 - ③ 정기상여금 지급률 650% → 700%로 50% 상향.
 - ④ 특별성과급 3,000,000원 지급
- (※ 고정급 영역인 ①, ②, ③의 조합원 월 평균 고정급 인상효과는 130,000원)

- 노조의 임금인상 요구는 하향할 수는 없지만 상향해 요구하는 것은 가능함. 특히 전체 평균에 비해 저임금이면서 고정급이 임금 총액과 거의 차이가 없는 사업장의 경우 더 높은 수준의 임금인상 요구와 쟁취를 하는 것이 사업장 간 임금격차 해소뿐 아니라 금속노조 산별임금체계 진전을 위해서도 바람직. 참고로 2020년 실시한 임금 실태조사에 따르면 금속노조 사업장의 고정급 대비 총액임금은 평균 130.3%이며, 이를 적용시 2020년 월 평균 총액임금은 4,778,626원으로 추산.

(4) 사업장 요구

① 임금인상 요구 (집단교섭 참가 사업장은 집단교섭에서 다룬다)

② 통일요구(산업전환협약)

③ 필수요구(*단협 갱신 교섭이 있는 사업장은 반드시 요구)

- 교섭주기·교섭시기 통일 :
올해 교섭으로 체결하는 단체협약의 유효기간을 2022년 3월 31일까지로 요구.
- 조합간부 유급 교육시간 확보
- 일터괴롭힘 금지
- 산재사망자 유가족 우선·특별채용(11기 15차 중집 결정)
- 노조파괴 대응 노동3권 보장(2020년 통일요구 요구안)
- 감염병으로부터의 보호(2020년 통일요구 요구안)

【단체협약의 유효기간】

본 협약의 유효기간은 ()년 ()월 ()일부터 2022년 3월 31일까지로 한다.

【조합간부 유급 교육시간 확보】

회사는 조합간부(조합·지부·지회단위 간부 및 대의원)에게 년 1회 2박3일 교육 시간을 유급으로 보장한다.

【일터괴롭힘 금지】

- ① 누구든지 일터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노동자(파견·용역·사내하청·특수고용)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일터괴롭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용역·사내하청·특수고용직 노동자에 대해서는 소속기업이 본 조의 내용을 이행하도록 지도·감독한다.
- ② 제1항의 일터괴롭힘에는 정당한 사유 없이 1개월 이상 업무에서 배제하는 행위, 저성과를 유도하는 행위, 경영상의 이유로 노동자의 의사와 상관없이 퇴직을 강요하는 행위 및 조합탄압을 목적으로 하는 행위를 포함하며, 지속적·반복적으로 할 경우 가중 책임을 진다.
- ③ 노동자 내지 조합이 제1항의 일터괴롭힘이라 신고하거나 주장하면, 회사는 즉

시 피해 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며, 피해 노동자의 의사에 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피해 노동자의 신원보호 및 근무장소의 변경, 유급휴가 명령 등의 조치를 취하고, 즉시 노사동수의 조사위원회를 사업장 특성에 맞추어 구성하여 진상조사를 진행, 일터괴롭힘 여부의 인정, 시정조치 권고 등을 15일 이내에 완료하는 것으로 하되 필요시 15일을 연장할 수 있다.

- ④ 일터괴롭힘 행위 발생시 회사는 일터괴롭힘 예방을 위한 교육이나 재발방지를 위한 조치를 조합과 공동으로 수립하여야 한다.
- ⑤ 회사는 위 제3항에 따라 구성된 조사위원회가 일터괴롭힘으로 인정한 경우, 조사위원회의 시정권고를 따라야 하며, 행위자에 대한 징계 및 배치전환 등을 통하여 일터괴롭힘이 재발되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이때 회사는 징계 등의 조치를 하기 전에 그 조치에 대하여 피해 노동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 ⑥ 회사는 피해 노동자가 요청하면 근무장소의 변경, 전환배치, 유급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⑦ 회사는 제1항에 따른 일터괴롭힘 발생사실을 신고한 노동자 및 피해를 입은 노동자 등에게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산재사망자 유가족 우선·특별채용

【재해자 및 질병자의 보상 등】

회사는 직원이 업무상 사망하였거나 장애가 심하여 퇴직하게 되었을 경우 그 유가족 또는 당사자의 요청으로 부양가족 중 1인을 우선 채용한다.

○ 노조파괴 대응 노동3권 보장

【노동쟁의 원칙】

- ① 노사 쌍방은 노동쟁의의 자율적 타결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며, 쟁의 중 조합이 단체교섭을 요구하였을 때 회사는 이를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② 노동쟁의 중재는 반드시 노사 쌍방의 명의로 신청해야 하며, 어느 일방의 신청은 무효로 간주한다.

【쟁의 중 시설이용】

회사는 노동조합의 쟁의행위 중 조합원의 쟁의행위를 위한 회사 내의 일상적인 각종 시설을 이용하도록 하며 정상적인 일상생활을 유지하기 위한 식사를 평상시와 같이 제공한다

【조합원 사내활동 보장】

회사는 종사자가 아닌 조합원 및 금속노조 간부의 사업 또는 사업장 내의 출입과 노동조합 활동을 보장한다.

【노동쟁의와 신분보장】

- ① 회사는 노동쟁의나 쟁의행위에 대한 간섭, 방해 및 조합원과 조합간부를 이간시키는 어떠한 행위도 할 수 없다.
- ② 회사는 쟁의 기간 중 어떠한 징계 발의나 전출 등의 인사조치를 취할 수 없다.
- ③ 회사는 손배·가압류를 포함하여 쟁의에 참가한 것을 이유로 사후에 불이익을 줄 수 없다.
- ④ 회사는 쟁의행위 기간 사무직 조합원들의 조합지침 수행에 대해 업무상 성과나 효율성을 이유로 일터괴롭힘 행위 또는 직장 내 괴롭힘 행위를 할 수 없다.

【신규채용 및 대체근무 금지】

- ① 회사는 쟁의기간 중 어떠한 명목으로도 신규 채용을 하지 않으며 비조합원으로 대체하여 근무시키지 못한다.
- ② 회사는 쟁의기간 중 중단된 작업과 물량을 반출하여 외주로 돌릴 수 없다.

【불이행 책임】

- ① 회사와 노동조합은 본 협약과 본 협약에 의하여 발생하는 모든 사항에 관하여 정확한 기록을 작성하고 이를 성실히 준수, 이행할 의무를 진다.
- ② 본 협약 불이행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불이행 당사자가 진다.
- ③ 회사는 단체협약 위반으로 판정될 경우 이미 발생한 단체행동 등 노사분쟁에 대해서는 민·형사상 책임을 묻지 아니하고 이를 이유로 불이익 처분을 하지 않는다.

【감염병으로부터의 보호】

- ① 노동조합과 회사는 감염병으로부터 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노사 동수의 대응체계와 매뉴얼을 마련한다. 격리가 필요한 감염병 발생 시 노사는 지체 없이 대응체계를 소집하며 매뉴얼에 따라 질병에 대한 홍보, 교육, 취합, 유관 기관 통보, 후속 처리 등을 실시한다.

- ② 대응체계와 매뉴얼의 구체적인 사안은 노사 합의하여 실시하되 사내하청, 비정규직, 특수고용노동자, 이주노동자들에게 동일 적용한다.
- ③ 노동조합과 회사는 다음과 같은 내용을 포함한 사전 예방 방안을 마련한다.
 1. 주기적 방역체계, 개인 보호구 지급 방식, 식당 및 회의실 등 공공시설은 영에 대한 기준 마련
 2. 노동자들의 면역력 강화와 감염 예방을 위한 휴식, 휴게시간 준수, 연장·야간노동 축소 실시 및 이를 위한 인력 충원 방안
 3. 임신부나 장애인, 기저 질환자 등 고위험군 노동자에 대한 우선 보호 조치 실시
 4. 판매·서비스 등 고객 대면 노동자 보호를 위한 보호구 지급, 투명칸막이 등 보호시설 설치 및 방문 고객 위생지침 마련
- ④ 노동조합과 회사는 다음과 같은 내용을 포함한 사업장 감염병 확산 방지 및 확진 노동자에 대한 생활 안정 방안을 마련한다.
 1. 밀접 접촉자 포함 감염병 유증상자 격리 기간 정상근무 인정
 2. 감염병 확진자 검사, 치료, 회복 기간 정상근무 인정
 3. 확진자 발생 시 사업장(해당구역) 작업중단·소독, 전 직원 공지 및 유관 기관 통보
 4. 피부양자 등 돌봄을 위한 유급 가족돌봄휴가 부여
 5. 업무 연관 확진자에 대한 산재 인정

단, 격리가 필요한 감염병으로 인한 휴업·휴직 기간은 단체협약 휴업지불 조항 이하로 후퇴할 수 없다.
- ⑤ 회사는 본조항에 따른 휴직자들이 복귀 시 인사고과 등 불이익처우를 할 수 없다.

④ 금속산업 최저임금 요구 (중앙교섭 불참 사업장)

⑤ 지부공동요구

- 2021년 내에 금속산업사용자협의회에 가입하고, 2022년부터 중앙교섭 및 지부 집단교섭에 참가한다.

⑥ 권고 요구

- 불법파견 및 용역 사용금지
- 정년퇴직(국민연금 수급 직전 연도의 연말까지 정년 보장)
- 노동시간(주 40시간 노동 - 연장노동 12시간 제한)
- 노동안전 (위험성평가, 위험의 외주화 금지)
- 시설편의 또는 운영비 원상회복 (현재 결정에 따라 노조법 개정되었음. 구체적인 요구안 내용은 사업장마다 다르며 적시된 내용은 참고용임)

【불법 파견 및 용역 사용 금지】

- ① 회사는 불법파견 인력을 사용하지 않는다.
- ② 회사는 관계기관에 의해 불법파견 확인시, 소정의 절차에 따라 정규직 채용을 원칙으로 한다.
- ③ 회사는 경영상 부득이한 사유로 일부 부서나 생산 물량을 외주 또는 하도급으로 전환하고자 하는 경우 조합원의 고용안정, 노동조건에 관한 사항은 90일전에 조합에 통보하고 합의하여 추진한다.

【정년퇴직】

정년퇴직은 조합원이 국민연금을 수급하게 되는 직전 연도의 연말까지로 한다.

【노동시간】

- ① 노동시간은 1일 8시간, 1주 40시간을 기준 노동시간으로 하며 주5일 근무를 기본으로 한다.
- ② 노동시간은 실제 작업시간, 작업준비 시간, 대기시간, 교대시간, 조회시간, 청소시간, 교육시간, 체조시간 등 회사의 지휘·감독 아래 있는 시간과 회사가 주관하는 각종 행사시간을 말한다.
- ③ 기준 노동시간의 변경, 연장 및 이에 따른 가산수당 할증지급은 노사가 단체협약으로 정한다.
- ④ 1주의 총 노동시간은 연장, 야간, 휴일 노동을 포함하여 52시간을 초과할 수 없으며 1일 노동시간은 12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회사는 노동자의 1일 노동시간 종료 후 다음 노동 개시까지 11시간의 연속휴직을 보장해야 한다.

○ 노동안전

【위험성 평가】

- ① 회사는 노동재해의 근본적 예방을 위해 노동조합과 공동으로 년 1회 위험성 평가를 실시한다.
- ② 회사는 잠재적으로 예측가능한 유해위험의 근원적 예방을 위해 노사가 동등하게 참여하는 ‘위험성평가 노사공동 실행위원회(아래 노사 실행위원회)’를 구성·운영한다. 노사 실행위원회는 위험성평가와 관련한 사항을 심의·의결하며, 합의된 사항은 단체협약과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
- ③ ‘위험성평가 노사공동 실행위원회’는 노사 동수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노사 양측이 공동으로 맡는다.
- ④ 회사는 위험성평가의 지속적이고 원활한 진행을 위해 조합측 위원의 활동을 보장하고, 위험성평가와 관련한 활동시간을 근무한 것으로 간주한다.

【위험의 외주화 금지】

- ① 위험의 외주화란 회사가 사업을 영위하면서 산업재해 발생 위험이 있어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안전조치)·제39조(보건조치)를 취해야 할 법적 의무가 있는 작업이나 공정을 사내·외 도급화하거나 시간제, 단기, 임시, 일용, 용역, 이주노동자를 사용하여 수행케 하는 것을 말한다.
- ② 회사는 산업재해의 위험으로부터 노동자를 보호할 조치 의무와 책임을 사내·외 도급업체에 전가하거나 소홀히 해서는 안 되며, 산업재해 발생위험이 있어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안전조치)·제39조(보건조치)를 취해야 할 법적 의무가 있는 작업을 외주화하거나 시간제, 단기, 임시, 일용, 용역, 이주노동자에게 수행케 해서는 안 된다.

○ 시설편의 또는 운영비 원상회복 (예시)

【시설편의 제공】

- ① 회사는 조합의 의견을 들어 조합 사무실로 적합한 건물 또는 그 일부를 조합 전용 사무실로 대여, 조합이 관리케 하며, 조합활동에 필요한 시설, 집기, 비품, 전화, 팩스, 컴퓨터, 정보통신망, 업무용 프로그램 등을 제공하고, 회사 방송망과 통신망의 이용을 허용하며 조합 사무실의 관리유지비를 부담한다.
- ② 회사는 조합활동으로 인한 ○○공장 등 이동시 업무차량을 제공한다.
- ③ 회사는 조합의 각종 회의, 교육, 행사에 필요한 장소와 시설을 제공하며,

조합과 관련된 상급단체나 다른 노조 및 외부인의 자유로운 조합 사무실 출입을 보장한다.

- ④ 회사는 조합 및 조합원의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조합활동을 감시 또는 방해해서는 안 된다.

【조합의 복지사업 지원】

- ① 회사는 조합이 조합원을 위하여 소비조합, 신용협동조합, 주택조합 등을 운영함에 있어 필요로 하는 장소와 시설, 수송수단 등을 사용대차 내지 위탁 사용하게 한다.
- ② 조합원들이 이용하는 사내외 구판(사업자판기, 매점 등)은 조합이 인수, 운영하며, 사업의 이익금은 조합이 조합원들을 위하여 관리·사용한다.
- ③ 회사는 회사가 보유한 비업무용 부동산 또는 시설의 운영 및 사용을 조합에 사용대차 내지 위탁한다.

【출장유급】

- ① 회사는 조합전임자와 운영위원 2인에 대해 정기 분회 순방(상·하반기 연2회)시 관련 규정에 의한 출장비를 지급한다.
- ② 조합전임자는 교통비·숙박비에 한해 ‘출장비 지급 매뉴얼’상의 임원, 팀장 기준에 준해 지원한다.

3. 울산지부 교섭 및 투쟁방침

1) 울산지부 2021년 교섭방침

- (1) 지부집단교섭 ⇨ 사업장 보충교섭 순으로 진행한다
※사업장 보충교섭 돌입 시기는 지부 쟁대위 결정에 따라 돌입한다.
- (2) 임금교섭 ⇨ 지부 쟁대위 결정에 따라 돌입한다.
- (3) 집단교섭 미참여 대각선 교섭 사업장은 집단교섭 시작 이후 돌입한다.
- (4) 모든 교섭단위는 통일요구부터 순차적으로 진행한다.

2) 울산지부 집단교섭 형식

① 임금

- 임금(기본급)은 금속노조 임금인상 내용을 기본 원칙으로 한다.

② 교섭군

- 단일 교섭군으로 한다.

③ 교섭 일정

- 중앙교섭: 주 1회 진행 / - 울산지부 집단교섭: 주 1회 진행

④ 교섭위원

- 지부집단교섭위원은 지부 교섭대표(지부임원+지회교섭위원)으로 구성한다.

3) 집단교섭 미참여 사업장, 대각선 교섭

- 조합의 일치성을 높이기 위해 미참여 사업장은 울산지부 관장 아래 대각선 교섭을 진행한다.
- 지부 집단교섭 불참 사업장은 지부 교섭단(지부임원+지회교섭위원)을 구성하여 지회별 대각선 교섭을 진행한다.

4) 울산지부 투쟁방침

(1) 2021년 단체교섭 기본 개요

구 분	주요요구	비 고
중앙교섭	△기후위기대응 △산별전환협약 △금속산업 최저임금	
지부 집단교섭	△임금인상 요구 △산업전환협약 △기존 합의서 정비 및 전체 참가 사업장 적용요구 △금속산업 최저임금 요구 (중앙교섭 불참 사업장 필수요구)	
사업장 보충교섭 및 대각선교섭	△임금인상요구 △통일요구: 산업전환협약 △필수요구(*단협 갱신 교섭이 있는 사업장은 반드시 요구) - 교섭주기·교섭시기 통일 :올해 교섭으로 체결하는 단체협약의 유효기간을 2022년 3월 31일까지로 요구. - 조합간부 유급 교육시간 확보 - 일터괴롭힘 금지 - 산재사망자 유가족 우선·특별채용(11기 15차 중집 결정) - 노조파괴 대응 노동3권 보장(2020년 통일요구 요구안) - 감염병으로부터의 보호(2020년 통일요구 요구안) △ 금속산업 최저임금 요구 (중앙교섭 불참 사업장) △지부공동요구: 중앙교섭 및 집단교섭 참가 △사업장별 요구	

(2) 단체교섭 투쟁 방침

- 금속노조 대정부 요구 및 통일요구 투쟁에 적극 복무한다.
- 집단교섭은 통일요구 중심으로 교섭하되 통일요구 합의 없이 임금에 대한 사업장 보충교섭을 진행하지 않는다.
- 통일요구, 지부공동 요구를 기본 전선으로 교섭과 투쟁을 진행한다.
- 지부 집단교섭을 중심으로 사업장 보충교섭, 대각선 교섭, 공동교섭 등 다양한 교섭 전술을 구사하되 집단교섭 사업장 임금을 제외한 사업장 보충교섭 돌입시기는

집단교섭 돌입 직후 교섭에 돌입한다.

단, 임금은 통일요구 합의 후 지부 쟁대위의 결정에 따라 돌입한다.

- 집단교섭 미참여 사업장은 공동의 교섭 전술을 배치한다.
- 미타결 사업장은 지부 집중 투쟁으로 돌파하며, 구조조정 사업장에 대해 전조직적으로 대응한다.
- 공동투쟁과 공세적 교섭을 위해 최대한 시기를 집중한다.

(3) 시기별 투쟁 계획

- 구체적인 시기별 투쟁계획 및 수정계획은 차후 지부운영위를 통해 논의한다.

구 분	시 기	투쟁전술	비 고
준비기	3월~4월	△ 투쟁방침 결의(3.8 정기대의원대회) ▷ 지회별 투쟁방침 공유 (4월~ 순회간담회) ▷ 전 조합 임단투 교육(4월~5월) ▷ 집단교섭 돌입(4월 중순~)	▲ 3.24 금속노조투쟁선포식 ▲ 금속노조확대간부 1차 상경
교섭기	5월~6월	▷ 전 조합원 임단투 교육(4월말~5월) ▷ 확대간부 임단투 승리 결의대회(5월) ▷ 사업장 보충교섭 교섭 등 돌입(5월) ▷ 지회별 임단투 순회 출정식(5월~6월) ▷ 조정신청 및 쟁의행위 찬반투표(6월말)	5.1절 노동자대회
총력투쟁	7월~8월	▷ 지부 전 조합원 총력투쟁 결의 ▷ 총파업을 포함한 총력투쟁 ▷ 추석전 타결 목표	8.15 자주통일노동자대회
마무리	9월	▷ 미타결 사업장 지부 집중투쟁	
하반기 투쟁	10월~11월	▷ 노동법 전면개정! 비정규직철폐! 민주노총 100만 총파업 총력 투쟁 ▷ 전국노동자대회 및 민중총궐기투쟁 ▷ 금속노조 12기선거 돌입(11월말)	전국노동자대회 민주노총 총력투쟁 12기 금속노조 선거

4. 타결 방침

1) 통일요구 합의 없이 지부·지회 타결 없다.

- 통일요구 합의 없이 중앙교섭 합의 전 타결 불가. 통일요구를 합의한 경우 전국 파업 등 조합 투쟁지침 복무 결의를 전제로 중집 승인 하에 의견접근 가능.

2) 모든 단체교섭을 체결할 때는 합의절차를 준수하고 조합 승인을 얻는다.

- 모든 임금·단체협약은 위원장 명의로 체결한다.
- 교섭단위별 합의는 아래 절차를 따른다.

▶ 중앙교섭 :

의견접근 ⇨ 중앙위원회에서 의견접근안 승인 ⇨ 잠정합의안 조합원 찬반투표
⇨ 조인식(위원장 체결)

▶ 지부교섭 :

의견접근 ⇨ 지부교섭단 및 지부운영위 심의 ⇨ 중앙집행위원회 승인
⇨ (조합원 찬반투표) ⇨ 조인식(위원장 체결)

▶ 사업장보충교섭 :

의견접근 ⇨ 지부운영위 심의 ⇨ 조합에 승인요청서 제출(△교섭 및 합의 경과 △
의견접근안 △지부운영위 심의 일시와 결과 △찬반투표 예정일 적시) ⇨ 위원장
승인 ⇨ 조합원 찬반투표 ⇨ 조합에 직인신청서 제출 ⇨ 조인식(위원장 체결) ⇨
임단협 합의서 전문 조합에 제출 및 DB System 등록

△임금·단체협약에 관한 사항 △단협에 의해 규정되는 사항(고용, 임금체계 변화
등) △노조와 합의한 사항 △단체교섭에서 이월된 사항들은 노사협의회를 통해 결
정할 수 없음(규약 제73조, 지회모범규칙 제37조). 따라서 사전에 지부에 보고하고
단체교섭을 통해 결정해야 하며, 협상의 명칭과 무관하게 단체교섭으로 간주해 위
합의 절차를 준수.

3) 임·단협 승인은 아래 기준을 따른다.

- 불승인 : △기준 단체협약의 현저한 후퇴 △고정급 저하 △무분규 합의 문구 포함 △통일요구 쟁취 없이 중앙·지부집단교섭 타결 전 의견접근한 경우 △중앙·지부집단교섭 타결 후 의견접근 했지만 통일요구를 아예 발송하지 않거나 교섭에서 실질적으로 다루지 않아 통일요구를 쟁취하지 못한 경우 불승인 심의하고 조합에 즉각 보고. 중앙집행위원회에서 사업장별 검토 후 후속 처리 방안 결정. 불승인 사업장은 찬반투표와 조인식 등 이후 절차를 중지.
- 미승인 : △산별중앙협약 중 [제1조 협약의 우선적용], [제2조 사용자단체 가입], [조합비 등 일괄공제]를 쟁취하지 못한 경우 △사업장 단체협약에서 [전문(금속노조)] [유효기간(매년 또는 짝수년 3월 말까지)]이 미흡한 경우 △중앙·지부집단교섭 타결 후 노력했음에도 불가피하게 통일요구를 쟁취하지 못한 채 의견접근한 경우 지부운영위는 미승인 심의하고 조합에 보고. 찬반투표·조인식은 진행 가능.
- 구조조정 사업장 및 노조파괴공작·부당노동행위로 조직력이 현저히 훼손된 경우 구조조정사업장 타결방침 (2018. 10. 02. 제34차 중앙집행위원회 결정)에 따라 중앙집행위원회에서 별도 판단.
- 미승인, 불승인 사업장 처리방안은 중앙위원회에서 최종 결정.
- 신규사업장 첫 체결 단협과 복수노조 사업장은 해당 지부에서 판단하여 승인절차 진행.

의결주문

제출된 '11기 2년차 사업예산(안)'을
심의하여 승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지부 교부금 산정방식

- 1) 2021년 1월부터 2021년 07월까지 지역지부 1인당 조합비 평균액은 22,500원으로 산정합니다. 지역지부의 전체 조합원은 89,000명입니다.
- 2) 1개월 전체 지부 몫은 89,000명 X 22,500원 X 0.17 = 340,425,000원입니다.
(지부교부금은 18%이나, 지역공동사업비 1%를 제외한 비율로 계산합니다)
- 3) 전체 지부 몫에서 최저교부금이 지원됩니다. 5개지부에 월 8,000,000원이 지원이 됩니다. 전체 지부 몫에서 8,000,000원이 지급되면 332,425,000원이 남게 됩니다.
- 4) 남은 금액을 전체 납부 조합원 수로 나눠 1인당 평균 지부교부금을 구하면 3,735원이 나옵니다.
- 5) 같은 방식으로 2021년 8월부터 2021년 12월까지 임금인상률 3%를 적용하여 산정하면 1인당 평균 지부교부금은 3,849원입니다.
- 6) 최저교부금을 받는 지부의 월 수입은 최저교부금 + (1인당 평균지부교부금 X 지부(납부)조합원수)이 됩니다.
- 7) 최저교부금을 받지않는 지부의 월(한달)수입은 1인당 평균지부교부금 X 지부(납부)조합원수입니다.
- 8) 지부(납부)조합원수 산정시 최저조합비 납부인원은 제외됩니다.
- 9) 최저교부금 대상 지부와 지급금액입니다.

인원	금액	대상지부
2,000명 이하	2,500,000원	구미
2,500명 이하	1,500,000원	부산양산, 전북, 포항
3,000명 이하	1,000,000원	대구

[지부교부금 계산 방법정리]

구분	2021년 1월~2021년 07월	2021년 08월~2021년 12월
최저교부금 0	최저교부금+(3,735원×지부(납부)조합원수)	최저교부금+(3,849원×지부(납부)조합원수)
최저교부금 x	3,735원 × 지부(납부) 조합비	3,849원 × 지부(납부) 조합비
※ 지부(납부) 조합원수는 최저조합비 납부인원을 제외하고 편성하셔야 합니다.		

지역공동사업비 편성 및 산정방식

1. 지역지부에 속한 조합원(조합비)의 경우

- 1) 2021년 1월부터 2021년 7월까지 지역지부 1인당 조합비 평균액은 22,500원으로 산정합니다. 지역지부의 전체 조합원은 89,000명입니다.
- 2) 1개월 전체 지역공동사업비는 89,000명 X 22,500원 X 0.01 = 20,025,000원입니다. 전체 지부 뒤편에서 최저공동 교부금이 지원됩니다. 최저공동교부금은 전체 지역공동사업비의 6.5%정도 입니다. 6.5%를 제외한 금액인 18,723,375원을 전체 납부 조합원 수로 나눠 1인당 평균 지역공동사업비를 구하면 210원이 나옵니다.
- 3) 지역지부의 지역공동사업비 월 수입은 (1인당 평균 지역공동사업비 X 지부(조합비 납부) 조합원수)이 됩니다. (납부 조합원 수 중 최저조합비 납부인원은 제외됩니다)
- 4) 같은 방식으로 2021년 8월부터 2021년 12월까지 임금인상률 3%를 적용하여 산정하면 1인당 평균 지역공동사업비는 216원입니다.
- 5) 최저공동사업비 대상 지부와 지급금액입니다.

금액	최저공동사업비	대상 지부
50만원 미만	100만원 지급	구미
100만원 미만	50만원 지급	경주, 대구, 부산양산, 포항

[지역지부 지역공동사업비 산정방식]

구분	2021년 1월~2021년 07월 (월 수입)	2021년 08월~2021년 12월 (월 수입)
최저공동사업비 0	최저공동사업비+(210원×지부(납부)조합원수)	최저공동사업비+(216원×지부(납부)조합원수)
최저공동사업비 x	210원 × 지부(납부) 조합비	216원 × 지부(납부) 조합비
※ 지부(납부) 조합원수는 최저조합비 납부인원을 제외하고 편성하여야 합니다.		

[기업지부 지역공동사업비 산정방식]

2021년 1월~2021년 07월 (월 수입)	2021년 08월~2021년 12월 (월 수입)
265원 × 지부(납부) 조합비	270원 × 지부(납부) 조합비
※ 지부(납부) 조합원수는 최저조합비 납부인원을 제외하고 편성하여야 합니다.	

11기 2년차 예산(안)

【일반회계 수입 예산(안)】

기간 : 2021년 1월 1일~ 12월 31일

과 목			세 부 내 역	금 액
관	항	목		
이월금	이월금	이월금		
교부금	교부금	교부금	3,735원 × 5,900명 × 7개월 = 154,255,500원 3,849원 × 5,900명 × 5개월 = 113,545,500원	267,801,000원
부과금	부과금	부과금		0원
기타수입	기타수입	기타수입		0원
	잡수입	잡수입		0원
총계				267,801,000원

【특별회계 수입 예산(안)】

기간 : 2021년 1월 1일~ 12월 31일

과 목			예산액
관	항	목	
투쟁기금	이월금	일반 이월금	105,358,782원
	이월금	투쟁기금이월금	28,706,908원
	본조지원금	투쟁사업비	
	잡수입	이자수입, 해지환급금	
	소 계		
미조직기금	이월금	이월금	7,587,598
	미조직기금	본조지원금	
	잡수입	이자수입	
	소 계		
합계			141,653,288

【일반회계 지출부 예산】

기간 : 2021년 1월 1일~ 12월 31일

과 목			목 번	11기 2년차 예산 내역 (2021년 1월 1일~ 12월 31일)	11기 2년차 (12개월)	총액대비 예산율(%)	11기 1년차 (12개월)	집행율 (%)
관	항	목						
운 영 비	유지비	관리비	1	사무실관리비 등 월700,000원×12개월	8,400,000	3.14%	7,080,000	60%
		차량유지비	2	주유, 보험, 수리 등	12,000,000	4.48%	13,200,000	57%
		신문도서비	3	신문, 자료구입등	500,000	0.19%	840,000	0%
		소모품비	4	복사기 임대비, 소모품, 사무용품, 토너 등	10,000,000	3.73%	4,000,000	111%
		통신비	5	통신비, 전화비, 우편비용 등	4,000,000	1.49%	3,000,000	54%
		비품비	6	비품구입비(컴퓨터, 모니터, 의자등)	10,000,000	3.73%	5,000,000	63%
		인쇄비	7	각종 자료 인쇄	1,000,000	0.37%	500,000	4%
		기타유지비	8	커피, 외부인사 방문, 관공서비 등	1,500,000	0.56%	1,000,000	28%

전국금속노동조합 울산지부 11기 2년차 정기대의원대회

	복리 후생비	복리후생비	9	사무국 식비 월 154,000원× 8인 ×12개월= 14,784,000원 철농, 당직, 식비 등 700,000원 ×12개월= 8,400,000원 사무국 건강검진 200,000원× 4인= 800,000원 사무국 근무복 75,000원× 8인= 600,000원 사무국 직무활동비 월150,000원×3명×12개월=5,400,000원	29,984,000	11.20%	23,026,000	92%
	업무 추진비	직무활동비	10	지부장 450,000원 × 12개월 = 5,400,000원 수석부지부장 400,000원 × 12개월 = 4,800,000원 사무국장, 부지부장2명 350,000원 ×12개월= 12,600,000원	22,800,000	8.51%	18,000,000	100%
관의소개					100,184,000	37.41%	75,646,000	80%
사 업 비	여비	출장비	11	출장비	10,000,000	3.73%	10,000,000	27%
	회의비	총회	12	공고, 투표용지, 포스터, 선거관리비 등	6,000,000	2.24%	3,000,000	138%
		대의원대회	13	정기대의원대회 및 임시대대 등	23,000,000	8.59%	14,000,000	41%
		운영위원회	14	회의비 등	6,000,000	2.24%	5,000,000	62%
		집행위원회	15	회의비 등	3,000,000	1.12%	1,500,000	0%

전국금속노동조합 울산지부 11기 2년차 정기대의원대회

	기타회의비	16	기타회의 등	2,000,000	0.75%	2,000,000	27%
수련회비	교섭위원 수련회	17	교섭위원 회의 및 수련회등	5,000,000	1.87%	4,000,000	0%
부서사업비	총무사업비	18	부서사업비	4,000,000	1.49%	4,000,000	22%
	조직사업비	19	조직사업비, 부서사업비, 투쟁사업비 등 = 13,000,000 문화사업비 등 = 10,000,000	23,000,000	8.59%	15,000,000	86%
	노안사업비	20	부서사업비	7,000,000	2.61%	5,000,000	68%
	교육사업비	21	부서사업비	9,000,000	3.36%	7,500,000	80%
	선전사업비	22	부서사업비, 소식지, 대자보, 현수막 등	16,000,000	5.97%	10,000,000	56%
	문화체육사업비	24	간부 단합대회 및 조합원 문화사업비 등	4,000,000	1.49%	6,000,000	0%
연대사업비	대외협력비	25	타조직 연대 등	7,000,000	2.61%	5,200,000	100%
위원회	통일위원회	26	통일위 사업비	6,000,000	2.24%	5,000,000	72%

전국금속노동조합 울산지부 11기 2년차 정기대의원대회

		정치위원회	27	정치위 사업비	6,000,000	2.24%	5,500,000	43%
		여성위원회	28	여성위 사업비	2,000,000	0.75%	1,500,000	9%
		미/비위원회	29	미/비위 사업비	15,000,000	5.60%	12,000,000	61%
		단협위원회	30	단협위 사업비	3,000,000	1.12%	2,000,000	86%
		감사위원회	32	감사위 사업비 (감사위 직무활동비 포함)	2,500,000	0.93%	1,500,000	54%
	집회 행사비	집회행사비	33	집회, 투쟁 행사비	3,000,000	1.12%	7,000,000	41%
	관의소계				162,500,000	60.68%	126,700,000	54%
예 비 비	예비비	공동사업비	34			0.00%		
		예비비	35	예비비	5,117,000	1.91%	25,600	0%
합계					267,801,000원	100.00%	205,371,600	63%

안건 4 투쟁금 사용 승인건

의결주문

제출된 투쟁기금 사용에 대해 승인해 주십시오

[2020년 9월 25일 민주노총울산지역본부 13차 운영위원회 결의]

열사추모관 건립 기금 마련(안)

1. 경과

- 현대자동차지부 열사추모관 건립을 위해 23억 결의함
- 부산, 경남, 울산본부 각 1억원의 건립기금을 마련하기로 함
- 부산, 경남본부는 가맹조직 사업분담금으로 1억을 마련하기로 함

2. 민주노총울산지역본부 1억 마련안

1) 민주노총울산지역본부 예산 절약을 통해 2020년 이월금 및 선거기금으로 5,000만원 마련하여 열사추모관 건립기금 마련

- (1) 코로나로 인해 사업이 축소되어 민주노총울산지역본부 2019년 사업비를 최대한 절약하고, 가맹조직의 사업분담금 납부를 독려하여 2020년 이월금에서 4,000만원을 마련하여 2021년 대의원대회를 통해 열사추모관 건립기금으로 사용하도록 결의
- (2) 총연맹 지역본부 동시선거에서 공보물을 총연맹에서 제작하여 민주노총울산지역본부 선거기금에서 1,000만원을 절약할 수 있음. 이를 열사추모관 건립기금으로 사용하도록 2021년 대의원대회에서 결의.

2) 5,000만원은 지역본부 산하조직의 실정에 맞게 조합비, 모금, 추모위원 모집 등을 통해 열사추모관 건립기금을 마련

3) 열사추모관 건립기금 취합 시기

- 1차 : 2020년 12월 정기운영위까지
- 2차 : 2021년 가맹조직 정기대의원대회, 민주노총울산본부 정기대의원대회 까지

4) 민주노총울산본부 가맹조직 열사추모관 건립기금 모금 목표(5,000만원)

- 조합원 수 비례하여 상정
- 울산지부 7,272,480원 목표액

3. 울산지부 건립기금(안)

대의원대회 결의로 투쟁기금에서 전용 납부

- 지부 투쟁기금으로 대의원대회 결의를 통해 울산지부 기금 분담목표액(7,272,480원)을 납부하는 것으로 한다.
- 근거: 코로나19 상황이 2021년에도 지속적인 상황에 따라 대규모 상경투쟁, 집회 투쟁 등의 축소가 예상됨으로 투쟁기금 예산 운용에 여유가 있을 것으로 봄

안건 5

금속노조 11기 2년차 중앙위원 선출 승인 건

의결주문

제출된 금속노조 중앙위원을 승인해 주십시오

11기 2년차 중앙위원 배정

1. 11기 2년차 중앙위원 배정기준

지부	선거인단	중앙위원수	여성 할당	비정규 할당	일반
경기	8,058	4	0	0	4
경남	18,391	9	1	0	8
경주	3,993	1	0	0	1
광주전남	10,068	5	1	0	4
구미	883	1	0	0	1
대구	3,076	1	0	0	1
대전충북	4,607	2	0	0	2
부산양산	2,430	1	0	0	1
서울	4,524	2	0	0	2
울산	5,888	2	0	0	2
인천	5,149	2	0	0	2
전북	2,267	1	0	0	1
충남	15,117	7	1	0	6
포항	2,460	1	0	0	1
기아차	29,184	14	1	1	12
한국지엠	7,752	3	0	0	3
현대차	49,277	24	2	1	21
현대중공업	9,483	4	0	0	4
쌍용차	31	1	0	0	1
만도	30	1	0	0	1
지부합계	182,668	86	6	2	78

2. 11기 2년차 중앙위원

- 울산지부 수석부지부장 오훈도
- 울산지부 사무국장 고은아

의결주문

제출된 민주노총 파견 중앙위원 및 대의원을
승인해 주십시오

1. 민주노총 파견 중앙위원 선출 기준

단위	인원	비고
조합 임원	10	
지부별 배정	41	조합원수 비례 배정
여성 할당	6	
비정규 할당	3	해당 위원회위임
합 계	60	

1) 민주노총 중앙위원은 조합원 3,000명당 1명이며 민주노총 의무금납부 조합원 (2020년 8월 ~ 2021년 1월 평균) 179,256명(미전환사업장 포함)을 기준으로 할 때 금속노조에 60명이 배정됨.

2) 이중 민주노총 의무금 납부 기준으로 미전환사업장 조합원 수는 257명(풍기산업 70 / 수산중공업 80 / 삼미금속 107)이므로 중앙위원은 배정하지 않음.

3) 60명은 아래와 같은 원칙에 따라 배정함.

① 여성할당 6명 (전체 9.1%)은 여성조합원 2천명 이상인 현대차 지부에 여성조합원 수 기준 9% 배정(2명)하고 1천명 미만인 그 외 지부는 여성 조합원수가 큰 순서대로 총 5명을 1명씩 배정한다.

② 비정규할당 3명(전체 5%이상)은 비정규위원회에 위임한다.

③ 여성, 비정규할당 중앙위원을 제외한 51명은 조합 임원 10명을 우선 배정한다.

④ 나머지 41명은 지부 및 직할지회별 조합원 수에 비례하여 배정한다.(단위별로 조합원 수를 특정값으로 나눈 뒤 반올림. 특정값은 결과값의 총합이 41명이 되도록 맞추는 방식.특정값=4,446명)

⑤ 후보중앙위원은 조합 부서장 및 여성사업 담당자로 배정하되 순번대로 배정한다.

민주노총 파견중앙위원 지부별 배정 기준

- 지부별 조합원 수는 2020년 12월 금속노조 대의원배정 기준 조합원 수

지부명	조합원수	지부 전체배정	대의원 구분		
			일반	여성 조합원수	여성 할당
경기	7,938	3	2	815	1
경남	18,391	4	4	534	0
경주	3,993	1	1	613	0
광주전남	10,068	3	2	636	1
구미	883	0	0	290	0
대구	3,076	1	1	300	0
대전충북	4,607	1	1	332	0
부산양산	2,430	1	1	255	0
서울	4,524	2	1	650	1
울산	5,659	1	1	624	0
인천	5,149	1	1	216	0
전북	2,267	0	0	144	0
충남	13,778	3	3	340	0
포항	2,460	1	1	14	0
기아차	29,184	8	7	650	1
한국지엠	7,752	2	2	332	0
현대차	49,277	13	11	2,222	2
현대중공업	9,483	2	2	359	0
만도	30	0	0	0	0
쌍용차	17	0	0	0	0
미편 제	현대차 울산비정규직	394	0	40	0
	기아차 화성비정규직	732	0	329	0
	현대차 비정규보안	126	0	0	0
	신일정밀	121	0	0	0
합계	182,092	47	41	9,695	6

2. 민주노총 파견대의원 선출 기준

단위	인원	비고
중집	38명	조합임원, 지부장, 조합실장
지부 배정(일반)	232명	조합원수 비례 배정
여성할당	73명	민주노총 여성 30% 할당 중 일부
비정규할당	18명	해당위원회 위임
미전환사업장	0명	
합계	361명	

- 1) 민주노총 파견 대의원은 선출 기준은 500명당 1명이며 민주노총 의무금납부 조합원(2019년 1월 19일 ~ 2020년 1월 18일 평균) 180,424명(미전환사업장 포함)을 기준으로 할 때 금속노조의 민주노총 파견 대의원은 총 361명임. 통상 민주노총이 금속노조에 설정하는 여성할당 비율(20%)을 기준으로 여성할당 대의원은 73명. 후보 대의원은 20%인 73명임.
- 2) 이중 민주노총 의무금 납부 기준으로 미전환사업장 조합원 수는 257명(풍기산업 70 / 수산중공업 80 / 삼미금속 107)이므로 대의원은 배정하지 않음.
- 3) 361명은 지부(직할지회 포함) 조합원 수에 따라 아래와 같이 배정.
 - ① 여성할당 73명은 지부별 여성 조합원수에 비례하여 배정한다. (지부별로 여성조합원 수를 특정값으로 나눈 뒤 반올림. 특정값은 결과 값의 총합이 73명이 되도록 맞추는 방식. 특정값=147)
 - ② 비정규할당 18명(전체 5%이상)은 비정규위원회로 위임한다.
 - ③ 중앙집행위원 38명을 배정한다.(조합 임원 10명 + 지부장 20명 + 부서장 8명)
 - ④ 나머지 232명은 지부 조합원 수에 비례하여 배정한다.(지부별로 조합원 수를 특정 값으로 나눈 뒤 반올림. 특정 값은 결과 값의 총합이 232명이 되도록 맞추는 방식. 특정값=788)

4) 후보대의원 73명은 지부별 1인씩 총 20명을 지부 이름 가나다순으로 배정한다.
나머지 51명은 지부 인원수에 비례해 배정하되 지부 이름 가나다 순서로 돌아가며
순번을 매긴다.

※ 민주노총 파견대의원 지부별 배정 기준

- 지부별 조합원 수는 2020년 12월 금속노조 대의원배정 기준 조합원 수

지부명	조합원수	전체 배정	대의원 구분		
			일반	여성 조합원수	여성 할당
경기	7,938	16	10	815	6
경남	18,391	27	23	534	4
경주	3,993	10	5	613	5
광주전남	10,068	18	13	636	5
구미	883	3	1	290	2
대구	3,076	6	4	300	2
대전충북	4,607	8	6	332	2
부산양산	2,430	5	3	255	2
서울	4,524	11	6	650	5
울산	5,659	12	7	624	5
인천	5,149	9	7	216	2
전북	2,267	4	3	144	1
충남	13,778	21	18	340	3
포항	2,460	3	3	14	0
기아차	29,184	41	36	650	5
한국지엠	7,752	12	10	332	2
현대차	49,277	80	63	2,222	17
현대중공업	9,483	16	13	359	3
만도		0	0	0	0
쌍용차	17	0	0	0	0
미 편 제	현대차 울산비정규직	394	0	40	0
	기아차 화성비정규직	732	3	329	2
	현대차 비정규보안	126	0	0	0
	신일정밀	121	0	0	0
합계	182,062	305	232	9,695	73

○ 중앙위원 명단

구분	번호	이름	소속 및 직책
정위원	1	윤장혁	울산지부 지부장

○ 대의원 명단

구분	번호	이름	소속 및 직책
정대의원	1	윤장혁	울산지부 지부장
정대의원	2	오흔도	울산지부 수석부지부장
정대의원	3	고은아	울산지부 사무국장
정대의원	4	김성중	울산지부 부지부장
정대의원	5	황승연	울산지부 부지부장
정대의원	6	강수열	울산지부 서연이화지회 지회장
정대의원	7	김민기	울산지부 말레동현필터시스템지회 지회장
정대의원	8	김병훈	울산지부 덕양산업지회 지회장
정대의원	9	윤성만	울산지부 서연씨엔에프지회 지회장
정대의원	10	배운자	울산지부 현대그린푸드울산지회 사무장
정대의원	11	김현경	울산지부 서연이화지회 복지부장
정대의원	12	박소영	울산지부 현대글로벌비스울산지회 부지회장
정대의원	13	김경남	울산지부 말레동현필터시스템지회 여성부장
후보대의원	14	이상길	울산지부 에스아이씨지회 지회장
후보대의원	15	황덕기	울산지부 신한중공업지회 지회장

의결주문

별지로 제출된 결의문을 채택해 주십시오

의결주문

기타안건

참고자료

울산지부 규정

울산지부 규정

제정:2001년 3월 6일

개정:2001년 11월 30일

개정:2008년 3월 3일

개정:2016년 12월 5일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전국금속노동조합(이하 조합) 규약 제31조와 제47조에 의거하여 조합의 합리적 운영과 조직강화를 도모하며, 조합의 제반 문제를 보다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해 지부의 기능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명칭) 전국금속노동조합 울산지부라 한다.

제3조(사무소) 울산지부의 사무소는 전국민주노동조합 총연맹 울산지역본부 사무실내에 두도록 한다.

제4조(설치) 울산지부는 지역지부로서 울산광역시내 노동자를 대상으로 한다.

제5조(활동) 지부는 조합의 사업과 목적을 위해 활동한다.

- 규약에 명시된 목적과 사업을 수행하기 위한 활동
- 전국대의원대회, 중앙위원회, 중앙집행위원회 또는 지부 총회, 대의원대회의 의결사항 집행
- 조합, 산하 지회와 유기적인 관계를 통한 조합활동의 활성화, 조직강화, 투쟁력 강화 활동
- 지부 단위의 특수한 사정을 반영해 수행해야 할 활동

제2장 조직

제6조(구성)

- 지부는 울산지역내의 금속노동자로서 금속노조에 가입한자로 구성한다.
- 사업장단위 지회는 사업장이 위치하고 있는 지역지부 소속으로 한다. 단, 사업장 단위 이하의 단위(영업소, 사업소 등) 혹은 독자지회로서의 기능을 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지회 이하의 단위는 조직형태변경 결의 이전의 본조 소속으로 할 수 있다.

3장 권리와 의무

제7조(권리) 지부 조합원은 조합 규약 제11조에서 정한 권리를 지부에서도 행사할 수 있으며, 규약과 지부 규정에 의하지 않고는 그 권리를 제한받지 않는다.

제8조(의무) 지부 조합원의 의무는 다음과 같다.

1. 지부의 각종회의 및 활동에 참가할 의무
2. 지부의 총회(대의원대회)에서 의결된 특별부과금을 납부할 의무

제4장 기구 및 회의

제9조(기구) 지부에는 다음의 기구를 둘 수 있다.

1. 총회
2. 대의원대회
3. 운영위원회
4. 집행위원회
5. 선거관리위원회
6. 감사위원회
7. 기타 규약에 규정된 위원회를 둘 수 있다.

제1절 총회

제10조(구성 및 소집)

1. 총회는 지부 조합원 전원으로 구성한다.
2. 총회소집은 지부장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또는 지부 대의원대회의 의결 혹은 조합원 5분의 1이상이 회의에 부의할 사항을 명기한 요청서를 제출하였을 시 3일 이내에 소집공고를 하여야 한다.
3.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위원장이 소집한다. 단, 이때 회의의 의장은 위원장 또는 위원장이 지명한 자가 된다.
4. 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기간내 지부장이 총회를 소집하지 않을 때에는 위원장이 소집권자를 지명할 수 있다.

제11조(소집공고) 총회 소집공고는 대회일로부터 10일전에 회의 장소와 회의에 부의할 사항을 제시하여 공고하여야 하며, 공고사항은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3일간의 공고기간을 두어야 한다. 단. 긴급

을 요할 경우에는 7일 이내에 소집할 수 있다.

제12조(의결사항) 의결사항은 다음과 같다.

1. 지부임원 선출 및 탄핵에 관한 사항
2. 지부 대의원대회에서 상정한 사항 또는 제10조 2항에 의해 상정된 사항
3. 지부 쟁의행위 결의에 관한 사항
4. 잠정합의안 가결

제2절 대의원대회

제13조(구성 및 소집) 대의원대회는 다음과 같다.

1. 대의원대회는 지부 조합원의 직접, 비밀, 무기명투표에 의해 선출된 대의원으로 구성한다. 단, 지회단위 조합원의 직선에 의해 선출된 지회장은 당연직 대의원이 된다.
2. 정기대의원대회는 조합 정기 대의원 대회 후 30일 이내에 지부장이 소집한다.
3. 임시대의원대회는 지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또는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소집요청이 있을 경우, 지부장은 소집요청서를 받은 날로부터 3일 이내에 소집공고를 해야 한다.
 - 1) 운영위원회의 의결이 있을 때
 - 2) 대의원의 3분의1 이상이 회의에 부의할 사항을 명기한 소집요청서를 제출받았을 때
 - 3) 전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기간내 지부장이 대의원대회를 소집하지 않을 때에는 위원장이 소집권자를 지명할 수 있다.
4.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위원장이 소집한다.

제14조(소집공고) 대의원대회 소집공고는 총회소집공고에 준한다.

제15조(임기)

1. 대의원의 임기는 1년을 원칙으로 한다. 단, 차기 대의원 선출일 전일까지로 한다.
2. 보궐선거로 당선된 대의원의 임기는 전임자 잔여임기로 한다.

제16조(대의원 배정기준) 대의원 배정기준은 다음과 같다.

1. 대의원 배정은 지회별로 조합원 20명당 1명을 선출하고 단수 11명을 적용한다.
2. 지회 임원과 지회 집행위원을 제외하고 지부대의원은 당연히 지회대의원이 된다.

제17조(대의원 소환) 지부 대의원의 소환은 해당 선출단위 조합원 3분의 1이상의 요청으로 발의되고, 지부장은 발의 접수 후 10일 이내에 해당 선출단위에서 투표를 실시하여, 조합원 과반수의 참석과 참석조합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해임된다.

제18조(대의원대회 기능) 대의원대회 기능은 다음과 같다.

1. 조합 중앙위원 선출에 관한 사항
2. 사업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3. 지부 예산 승인 및 결산 보고에 관한 사항
4. 분할 및 합병 건의에 관한 사항
5. 특별부과금 결정에 관한 사항
6. 기금 및 자산의 관리 또는 처분에 관한 사항
7. 조합에서 위임한 단체협약 체결 및 개정에 관한 사항
8. 지부 쟁의대책에 관한 사항
9. 조합 의결기관에 상정할 의안채택에 관한 사항
10. 조합 대의원대회나 중앙위원회 및 중앙집행위원회에서 위임한 사항
11. 기타 중요한 사항

제3절 운영위원회

제19조(구성)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호로 구성한다.

1. 지부임원
2. 지회장
3. 1항, 2항을 최소범위로 하고 지부 대의원대회 의결에 따라 인원을 추가 선출할 수 있다.

제20조(소집)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하되 지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운영위원 3분의 1이상이 요구할 때 소집한다.

제21조(기능) 운영위원회의 기능은 다음과 같다.

1. 조합 중앙집행위원회 포상 및 징계결의 요청에 관한 사항
 2. 조합 대의원, 지부대의원 선출을 위한 선거구 확정에 관한 사항
 3. 지부 규칙해석에 관한 사항의 1차 기관이 된다.)
 4. 지부의 특별기금 부과에 관한 사항을 다룬다.
 5. 신분보장 심의와 건의에 관한 사항
 6. 조합 쟁의기금 요청에 관한 사항
 7. 지부 대의원대회 안건 상정에 관한 사항
 8. 지부 교섭과 쟁의에 관한 사항
 9. 지회의 설치, 분할, 합병에 관한 사항
 10. 기타 중요한 사항
-

제4절 집행위원회

제22조(구성) 집행위원회는 임원, 각종위원회 대표자, 부서장으로 구성하고, 그 임무는 별도로 정하는 처무규칙에 의한다.

제23조(소집)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하되, 지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집행위원 3분의 1이상이 요구할 때 소집한다.

제24조(기능) 집행위원회의 기능은 다음과 같다.

1. 조합의 의결 및 지시 집행에 관한 사항
2. 대의원대회와 운영위원회 수임사항 집행
3. 각종회의 상정할 안건 및 회의준비
4. 신규조합원 지도에 관한 사항
5. 지부 및 지회의 쟁의에 관한 사항
6. 제반 지부 업무집행에 관한 사항
7. 기타 지부 업무집행에 필요한 사항
8. 상벌건의에 관한 사항

제5절 감사위원회

제25조(감사위원회)

1. 지부 감사위원회는 지부대의원대회에서 대의원의 직접, 비밀, 무기명투표로 선출된 5인 이내의 감사위원으로 구성한다.
2. 지부 감사위원회는 분기별로 감사를 실시하며, 지부 및 지회 감사를 총괄하고 별도로 규정한 바에 따른다.
3. 감사위원회는 대의원 5분의 1 이상의 감사요청이 있을 때는 지체 없이 감사를 실시해야 한다.
4. 분기별 감사결과를 지부운영위원회에 보고하며 최종승인은 지부 대의원대회에서 한다.
5. 지회에 5인 이내의 감사를 둘 수 있으나, 지회감사는 지부감사와 타 지회 선임감사, 해당 지회의 감사가 공동으로 감사를 실시한다.

제6절 선거관리위원회

제26조(선거관리위원회)

1. 지부선거관리위원회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지도감독을 받아 지부의 선거를 관리한다.
-

2. 지부선거관리위원회는 운영위원회에서 선출한 7인 이내로 구성하고, 지부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은 선관위원 중 호선한다.
3. 지부 선거관리위원회의 운영 및 각종 선거에 관한 사항은 선거관리규정과 선거관리규칙에 따른다.

제5장 임원

제27조(임원) 지부에는 다음 임원을 둔다.

1. 지부장
2. 수석 부지부장
3. 부지부장 2명
4. 사무국장

제28조(임무) 지부 임원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1. 지부장
 - 1) 지부를 대표하고 제반업무를 총괄한다.
 - 2) 공문서 및 제 증명서의 서명인이 된다.
 - 3) 각종회의를 소집하고 의장이 된다.
 - 4) 지부 조정신청 발생 및 쟁의행위에 관한 심의요청
 - 5) 지부 재정의 집행권자가 된다.
 - 6) 지부 사무국 각부.차장의 임면 제청권을 갖는다.
 - 7) 각종 출판물의 발행인이 된다.
2. 수석부지부장
지부장을 보좌하며, 지부장 유고시 지부장의 임무를 대행한다.
3. 부지부장
지부장을 보좌하며, 지부장과 수석부지부장 유고시 지부장의 임무를 대행한다.
4. 사무국장
 - 1) 지부장의 지시를 받아 지부의 제반업무를 관장한다.
 - 2) 예산을 집행하고 기금, 자산 및 현금을 관장한다.
 - 3) 각종회의의 자료를 작성할 책임과 질의에 응하며 업무에 대하여 보고한다.
 - 4) 감사에 응한다.

제29조(선출) 지부 임원 중 지부장-수석부지부장-사무국장, 부지부장 선출은 지부 조합원의 직접, 비밀, 무기명투표에 의하여 재적조합원 과반수 투표와 참석한 조합원의 과반수 득표에 의한다.

제30조(임원의 보궐선거)

1. 지부임원 전원 유고 시에 그 잔여임기가 1년 이상일 경우 가능한 신속히 임원을 보선해야 하며, 그 기간까지의 직무대행 선임은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한다.
-

2. 보선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3. 유고된 임원의 잔여임기가 1년 미만일 때는 보선을 하지 않고 직무대행을 선임한다.

제31조(임기)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단, 10기 임원 임기는 2017년 10월 1일 부터 2019년 12월 31일로 한다.

제32조(임원의 탄핵)

- ① 임원은 그 직무수행에 있어서 조합의 강령, 규약, 지부의 운영규정을 위반하였을 때는 각 선출기간 의 의결을 거쳐 탄핵할 수 있다.
- ② 탄핵소추는 선출기관 성원 조합원 3분의 1이상의 요청으로 발의되고 선출기관 성원 과반수 참석과 참석자 3분의 2이상 찬성으로 탄핵된다.

제6장 단체교섭과 쟁의

제33조(단체교섭) 지부의 단체교섭은 전국대의원대회의 의결을 거친 사항에 합치하는 범위 내에서 할 수 있으며 지부장은 위원장의 위임을 받아 지부단위 교섭의 교섭권과 협약 체결권을 갖는다.

제34조(단체협약의 체결) 지부의 단체협약은 위원장의 승인을 받은 뒤 지부 총회를 거쳐 위원장이 체결한다.

제35조(쟁의) 지부에서 쟁의가 발생한 경우 지부 운영위원회의 의결에 의해 쟁의대책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

제7장 재정 및 기타

제36조(재정) 지부의 재정은 조합의 교부금과 지부 기부금, 특별부과금, 기타 사업수익 및 잡수익으로 충당한다.

제37조(징계) 조합원이 각종 의결사항 및 규정을 위반하였을 때는 지부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중앙집행위원회에 보고하고 조합 규약 제75조에 의거 처리한다.

제38 조(회계연도) 조합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부칙

제1조(통상관례) 본 규정에 미비된 사항은 조합 규약 및 통상관례에 따른다.

제2조(지부운영규칙) 지부는 조합의 규약과 이 규정의 범위 내에서 지부운영에 관한 지부운영규칙을 제정할 수 있다. 단, 중앙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3조(시행) 본 규정은 통과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4조(경과조치)

1. 이 규정은 신설되는 지역지부에 우선 적용된다. 기존의 기업단위 노조가 지부로 전환하는 경우는 규약을 우선 적용하고, 1년간의 유예기간을 두고 조합 규약과 지부 모범규정에 반하는 내용을 개정하도록 한다.
2. 지회장의 중앙위원 배정
 - 조합원수가 10,000명 이상인 지회의 경우 지회장을 중앙위원으로 우선 배정한다.
3. 지회운영규칙
지회운영규칙은 규약과 지부규정, 지부운영규칙의 범위 내에서 지회 자율적으로 제정한다.
단, 규약과 지부규정, 지부운영규칙에 위배되는 지회운영규칙사항은 무효로 하고 규약과 지부규정, 지부운영규칙, 지회운영규칙 순으로 적용한다.
4. 지부 대의원 배정기준
 - 규정 제16조는 지회 규칙 제정 시부터 적용하는 것으로 한다.
 - 지부 대의원의 배정은 '지부 대의원 수 확정을 위한 배정기준'에 따른 대의원 총수의 범위 내에서 지부 운영규칙으로 세부 배분 기준을 정할 수 있다.